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18.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8.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추정 전망보다 각각 11.0조원, 10.4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 재정건전성 등 14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7건의 주요 재정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집행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서를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I. 결산 개요 / 1

1. 현 황 1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8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9

II. 주요 현안 분석 / 11

1. 국세수입의 보수적 전망에 따른 연례적 초과세입 발생 11
2. 정부출자기관 배당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5
3. 재정조기집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1
 - 3-1. 조기집행 계획 설정 및 실적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 22
 - 3-2. 2017년 조기집행 실적 분석 27
4.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필요 32
5.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문제점 분석 38
 - 5-1. 건물매각대 계획액의 합리적 편성 필요 39
 - 5-2.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41

III. 개별 사업 분석 / 45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45



2.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52
3.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성과 점검	55
4.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개선 필요	61
5.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편성의 적절성 제고 필요	66
6.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9
7. 재정사업 평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71
8.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시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77
9.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79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82
11.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의 연례적 과다편성 개선 필요	84
12.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87
13. 한국수출입은행 펀드투자의 효과성 제고 필요	89
14. 한국투자공사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한 고유계정 금융자산 활용방안 마련 필요 ..	95
15.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 GKD에 대한 과다 지원 지양 필요	100

[국세청]

I. 결산 개요 / 107

1. 현 황	107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1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2

II. 주요 현안 분석 / 113

1. 세입 편성의 정확성 및 수납률 제고 필요	113
---------------------------------	-----



2.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홍보 강화 필요	117
3.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121

III. 개별 사업 분석 / 125

1. 고지서 발송 사업의 연계적 이용 발생 및 사업 통합 필요	125
2.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이용률을 고려한 제작 수량 관리 필요	128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사업 통합 등	131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 개선 필요	134
5.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36

[관세청]

I. 결산 개요 / 141

1. 현 황	141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5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6

II. 개별 사업 분석 / 147

1. 세입 수납 관리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147
2. 원산지관리시스템 관련 교육 및 홍보 연계 등 개선 필요	150
3. AEO 공인심사 활성화 노력 및 위탁계약 방식 개선 필요	153
4. 국외위탁교육의 예산 대비 초과집행 주의필요	157
5. 감시정 매각대금 적정한 회계처리 및 수입 증대 노력 필요	160
6.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등	163
7. 적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한 미수채권의 실질가치 반영 필요	167



[조달청]

I. 결산 개요 / 173

- 1. 현 황 173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8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9

II. 주요 현안 분석 / 180

- 1.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의 추진 시정 필요 180
 - 1-1.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의 연례적 추진 문제 180
 - 1-2.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문제 184

II. 개별 사업 분석 / 187

- 1. 국유지 환수 위탁 영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187
- 2. 조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191

[통계청]

I. 결산 개요 197

- 1. 현 황 197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1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2

II. 개별 사업 분석 203

- 1.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편성 시정 필요 203



2.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제회의 개최 부적정	206
3.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의 문제	209
4. 가계금융복지조사 공동조사기관 분담비율 조정 필요	214



기획재정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조 8,997억 3,100만원(5.4%)이 증가한 271조 1,752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하여 23조 4,608억 3,700만원(9.5%)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41,660,914	241,675,264	250,425,753	264,786,784	14,361,031	23,125,870
기금	6,053,452	6,058,697	6,849,719	6,388,419	△461,300	334,967
합계	247,714,366	247,733,961	257,275,472	271,175,203	13,899,731	23,460,837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 3,669억 400만원(16.5%)이 감소한 17조 38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938억 2,400만원(10.9%)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06,827	3,438,706	3,438,706	961,159	△2,477,547	△1,145,668
기금	17,025,522	16,871,775	16,966,723	16,077,366	△889,357	△948,156
합계	19,132,349	10,155,240.50	20,405,429	17,038,525	△3,366,904	△2,093,824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6조 6,674억 4,0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34조 2,250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94조 7,948억 8,100만원 (88.2%)을 수납하였고, 36조 341억 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조 3,960억 2,8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67,591,495	277,524,926	277,524,926	324,378,074	284,947,988	36,034,058	3,396,028	87.8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0	0	0	45	0	45	0	0.0
지역발전특별회계	9,132,714	9,142,514	9,142,514	9,846,893	9,846,893	0	0	107.7
합계	276,724,209	286,667,440	286,667,440	334,225,012	294,794,881	36,034,103	3,396,028	88.2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7조 7,574억 5,4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현액의 88.1%인 15조 6,455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92억 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조 927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942,295	18,603,557	17,756,464	15,644,600	19,230	2,092,634	88.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990	990	990	904	0	86	91.3
합계	15,943,285	18,604,547	17,757,454	15,645,504	19,230	2,092,720	88.1

자료: 기획재정부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87조 5,122억 2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88조 5,753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99.9%인 288조 5,696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57억 7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187,138,249	189,776,876	183,224,543	183,224,543	0	0	100.0
대외경제협력기금	1,019,436	1,019,436	862,166	858,358	3,808	0	99.6
복권기금	4,874,063	5,064,884	5,073,337	5,071,439	1,898	0	99.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76,629	376,629	604,835	604,835	0	0	100.0
외국환평형기금	90,046,415	90,046,415	97,541,619	97,541,619	0	0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1,227,962	1,227,962	1,268,887	1,268,887	0	0	100.0
합계	284,682,754	287,512,202	288,575,387	288,569,681	5,707	0	99.9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287조 7,640억 3,0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100.3%인 288조 5,696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2,599억 7,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조 3,959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187,138,249	189,776,876	189,776,876	183,224,543	0	7,271,019	96.5
대외경제협력기금	1,019,436	1,019,436	1,023,061	858,358	9,234	207,147	83.9
복권기금	4,874,063	5,064,884	5,064,884	5,071,439	0	18,962	100.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76,629	376,629	376,629	604,835	0	18,336	160.6
외국환평형기금	90,046,415	90,046,415	90,046,415	97,541,619	0	1,753,954	108.3
국유재산관리기금	1,227,962	1,227,962	1,476,165	1,268,887	250,737	126,552	86.0
합계	284,682,754	287,512,202	287,764,030	288,569,681	259,971	9,395,970	100.3

자료: 기획재정부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기획재정부 자산은 359조 5,043억원, 부채는 589조 8,679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0조 3,637억원이다.

당기 자산은 유동자산 79조 6,604억원, 투자자산 256조 4,229억원, 일반유형자산 22조 7,276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1,162억원(0.6%)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 23조 6,242억원 증가, 소프트웨어의 증가 등에 따른 무형자산 153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당기 부채는 유동부채 70조 4,938억원, 장기차입부채 518조 6,658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2조 7,380억원(5.9%) 증가하였다. 이는 국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29조 1,517억원 증가,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3조 4,038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59,504,252	357,388,013	2,116,239	0.6
Ⅰ. 유동자산	79,660,418	99,231,027	△19,570,609	△19.7
Ⅱ. 투자자산	256,422,932	232,798,763	23,624,169	10.1
Ⅲ. 일반유형자산	22,727,629	24,572,888	△1,845,259	△7.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
Ⅴ. 무형자산	31,997	16,739	15,258	91.2
Ⅵ. 기타비유동자산	661,274	768,595	△107,321	△14.0
부 채	589,867,948	557,129,940	32,738,008	5.9
Ⅰ. 유동부채	70,493,847	67,090,076	3,403,771	5.1
Ⅱ. 장기차입부채	518,665,787	489,514,060	29,151,727	6.0
Ⅲ. 장기충당부채	36,154	23,610	12,544	53.1
Ⅳ. 기타비유동부채	672,160	502,192	169,968	33.8
순 자 산	△230,363,696	△199,741,926	△30,621,770	△15.3
Ⅰ. 기본순자산	△962,532	△962,532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46,824,331	△218,154,038	△28,670,293	△13.1
Ⅲ. 순자산 조정	17,423,167	19,374,643	△1,951,476	△10.1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21조 4,091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32조 127억원, 관리운영비 1,342억원, 비배분비용 2조 2,476억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0조 6,580억원, 비배분수익 4조 1,693억원, 비교환수익 등 △1조 8,418억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10조 1,470억원(107.7%)이 증가한 19조 5,672억원이며, 이는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원가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총원가 증가 및 국제금융 프로그램수익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수익 감소에 기인한다.

총 3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16조 586억원)과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3조 69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90억원과 경비 45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4,519억원과 기타비용 1조 1,40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1,354,688	11,375,319	9,979,369	87.7
가. 프로그램 총원가	32,012,673	23,655,894	8,356,779	35.3
나. 프로그램 수익	△10,657,985	△12,280,575	1,622,590	13.2
II. 관리운영비	134,204	195,450	△61,246	△31.3
III. 비배분비용	2,247,636	1,847,581	400,055	21.6
IV. 비배분수익	4,169,286	3,998,094	171,192	4.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9,567,243	9,420,257	10,146,986	107.7
VI. 비교환수익 등	△1,841,810	△1,729,863	△111,947	△6.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1,409,054	11,150,121	10,258,933	92.0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기말순자산은 △230조 3,636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0조 6,217억원(15.3%)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 운영결과가 21조 4,090억원, 순자산 증가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이 각각 △7조 4,925억원과 △1조 7,201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7조 7,140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5조 2,065억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 평가손익 765억원, 자산재평가이익 △5,573억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1조 2,39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997,419	△1,855,615	△141,804	△7.6
II. 재정운영결과	214,090	111,501	102,589	92.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4,925	△123,672	48,747	39.4
IV. 조정항목	△17,201	93,369	△110,570	△118.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303,636	△1,997,419	△306,217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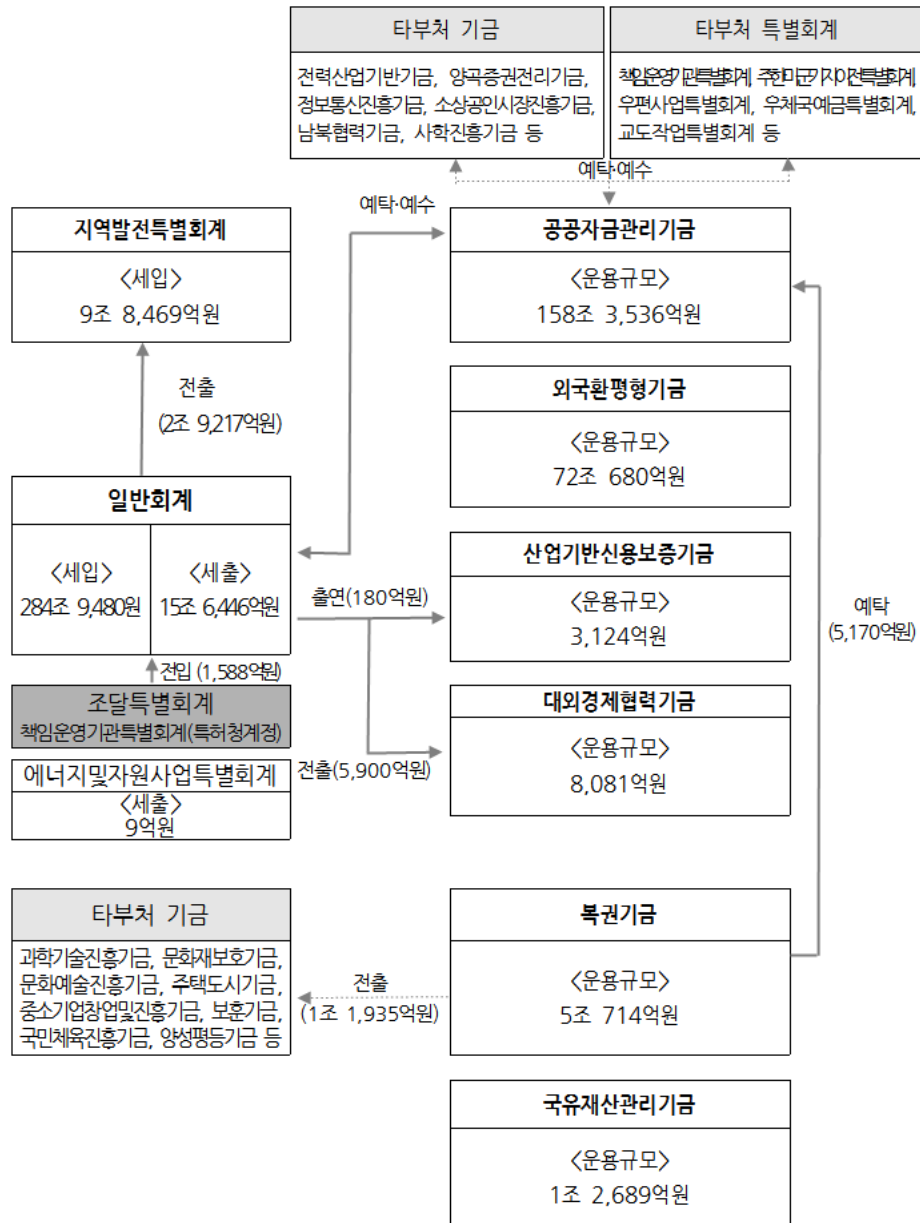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마. 재정구조

기획재정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지역 발전특별회계에 2조 9,217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에 5,900억원을 전출하였고, 산업 기반신용보증기금에 180억원을 출연하였다.

계정성 기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예탁·예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권기금 또한 계정성 기금으로서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 사업 지출을 위하여 다른 기금에 전출하고 있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① 예비비, ② 일시차입금이자상환, ③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이자상환 ④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점검 및 관리 사업, 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등이 있다.

예비비와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이자상환은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5,000억원, 200억원, 2,627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점검 및 관리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여 종합성과보고회 예산 5,000만원이 감액(2억원→1.5억원)되었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은 연구모임 활동비 과다편성 등을 이유로 복리후생비 및 기타운영비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감액(19.5억원→19.4억원)되었다.¹⁾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은 재정개혁 평가포상 및 평가지표 개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 평가포상 및 평가지표 개발’ 사업에 편성된 포상금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 집행한다”는 내용이 채택되었다²⁾.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①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이 2,340억 7,200만원 감액(1조 9,930억 7,600만원→1조 7,590억 400만원)되고, ②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원금상환이 7,000억원 증액(국회 신규 증액)되었다.³⁾

1) 기획재정부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7.

기획재정부는 ① 적극적인 정책대응, 저출산·고령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혁신성장 전략 마련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②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 적극적·선제적 국고관리,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효율성·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③ 역내 금융협력 강화,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정착·발전, 국내 기업·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2017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14~2017년까지 추진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대한 성과 점검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 중 상당 수의 과제가 향후 지속 추진될 예정이므로, 기획재정부는 보다 심도 있는 성과 점검을 통하여 앞으로의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수적인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3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초과세수가 14.3조원 발생하는 등 매년 초과세수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세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매년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기집행 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의 집행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집행이 수반되어야 경기 활성화 효과 달성이 가능한 간접사업의 비중이 2015년 69.7%에서 2017년 74.8%로 크게 확대되어 지금의 조기집행 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이전 사업을 2017년도 조기집행 대상 사업에 포함하였는데, 이와 같이 국내 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을 조기집행 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조기집행 대상 사업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정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가 미흡하여 성과중심 재정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부터 각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메타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2018년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을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변경은 성과평가의 객관성 저하 우려, 성과 개선 유인체계 약화, 성과관리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성과중심 재정운용 원칙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섯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 이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이월액 과다 발생 등으로 집행률이 매년 50%대에 정체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효율적 재정운용과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실현을 위해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세수입의 보수적 전망에 따른 연례적 초과세입 발생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22.8조원(9.4%)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14.3조원(5.7%) 초과징수 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도 초과세수 발생은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및 근로자 수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소득세 5.5조원(7.9%) 증가, 수입·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4.5조원(7.2%) 증가, 법인실적의 개선에 따른 법인세 1.9조원 증가(3.3%) 등에 기인한다.

[2017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16 실적 (A)	2017년					
		추경예산 (B)	실적 (C)	전년 대비(C-A)		추경예산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42.6	251.1	265.4	22.8	9.4	14.3	5.7
일반회계	235.7	244.0	258.5	22.8	9.7	14.6	6.0
내국세	206.2	213.1	227.8	21.6	10.5	14.7	6.9
1. 소득세	68.5	69.6	75.1	6.6	9.6	5.5	7.9
2. 법인세	52.1	57.3	59.2	7.1	13.5	1.9	3.3
3. 상속증여세	5.4	6.0	6.8	1.4	26.8	0.8	12.6
4. 부가가치세	61.8	62.6	67.1	5.3	8.5	4.5	7.2
5. 개별소비세	8.9	9.0	9.9	1.0	11.0	0.9	9.4
6. 증권거래세	4.5	4.0	4.5	0.0	0.9	0.5	12.2
7. 인지세	0.9	0.9	0.9	△0.0	△1.1	0.0	1.3
8. 과년도수입	4.1	3.8	4.4	0.2	5.9	0.6	16.9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6	0.2	1.6	0.2	1.1
관세	8.0	9.0	8.5	0.5	6.0	△0.5	△5.1
교육세	4.9	5.1	5.0	0.1	2.6	△0.1	△1.3
종합부동산세	1.3	1.4	1.7	0.4	27.7	0.2	16.8
특별회계	6.8	7.1	6.9	0.0	0.4	△0.2	△3.4
주 세	3.2	3.3	3.0	△0.2	△5.4	△0.3	△9.0
농어촌특별세	3.6	3.8	3.8	0.2	5.5	0.1	1.5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나. 분석의견

2015년도 이후 3년 연속 국세수입이 초과징수 되고 있으며, 초과징수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17년 초과세수는 14.3조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국세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2014년에는 추경예산 대비 세입결손이 발생한 반면, 2015~2017년의 기간 동안에는 3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다.¹⁾

초과세수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국세수입 초과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에 2.2조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이후, 2016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에 각각 9.8조원과 14.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다. 즉, 최근 3년 동안 국세수입 전망 오차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이 매년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3~2017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국세수입 예산		실적(B)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A)		증감액(C=B-A)	증감률(C/A)
2013	216.4	210.4	201.9	△8.5	△4.0
2014	216.5	216.5	205.5	△10.9	△5.1
2015	221.1	215.7	217.9	2.2	1.0
2016	222.9	232.7	242.6	9.8	4.2
2017	242.3	251.1	265.4	14.3	5.7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2015년의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세입예산을 감액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추경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초과세수 발생 원인으로 예측을 넘은 경기 회복세, 부동산 거래 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기적인 요인 외에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 역시 초과세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세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2017년도 초과세수 발생이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 및 부동산 시장 호조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수입과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세수입 241.8조원은 2016년의 국세수입 실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② 정부가 2017년 추경안에 편성한 국세수입 251.1조원은 2016년 실적 대비 3.5%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 간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7.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③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안 편성 시 국세수입에 대한 정부 전망이 NABO 전망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의 보수적 편성 역시 초과세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구분	정부전망	NABO전망	확정예산	실적
본예산	241.8	244.2	242.3	265.4
추경예산	251.1	254.0	251.1	26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년 국세수입전망」(2016.10.)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17.6.)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과 “세수추계 TF”를 운영하고, 2018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주요세목의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는 등 국세수입 전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8년 국세수입 징수실적 역시 5월 기준으로 예산액 268.1조원 대비 52.5% 수준인 140.7조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전년 동기 49.3% 대비 3.2%p 상승²⁾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3년(2015~2017년)과 마찬가지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초과세수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7월호」, 2018. 7.

낙관적인 국세수입 전망은 세수결손을 초래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 재정지출의 자율성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보수적인 국세수입 전망 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³⁾ 기획재정부는 국세전망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세수오차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밖에, 보수적인 국세수입 전망이 지출규모의 추세적 증가 및 재정수지 악화, 재정의 경기대응력 악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2017, pp.47~49). 구체적으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한국채권연구원, 2004)」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전년도 초과세수와 체계적인(systematic)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sabelle Jourard & Christophe Andre (2008)는 OECD 국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일시적인 세수급등 이후에 취해진 재정정책, 즉 재정지출의 증가 및 감세 등이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유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가 활성화되어 예상외로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다음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향은 재정지출이 오히려 경기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가. 현 황

정부출자수입¹⁾은 36개 출자기관 중 일반회계 기관(28개)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수입의 2017년 예산액 7,228억 4,800만원 중 7,950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정부출자수입	722,848	722,848	0	722,848	795,030	795,030	0	0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과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 정부출자수입(36개 정부 출자기관 전체에 대한 배당수입)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1조 5,562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배당수입의 증가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증가²⁾ 및 일부 개별기업의 당기순이익 개선³⁾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도별 정부배당수입 실적]

(단위: 억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	2017년	
					실적 (B)	'13~'17년 증감
일반회계	4,930	3,291	5,065	7,323	7,888	2,958 (60.0)
특별회계·기금	2,491	2,888	3,704	4,890	7,674	5,183 (208.1)
합 계	7,421	6,179	8,769	12,213	15,562	8,141 (109.7)

주: 1. 2017년 일반회계 배당실시기관은 17개 기관(공동 출자기관 7개 포함)

2. 2017년 특별회계·기금 배당실시기관은 13개 기관(공동 출자기관 7개 포함)

3. 괄호는 증감률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52-521

2) 평균 배당성향: ('16) 30.25% → ('17) 31.89%

3) 배당기관 총 당기순이익: ('15) 14.3조원 (한전 부지매각이익 제외시 7.7조원) → ('16) 10.2조원

나. 분석의견

첫째,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부터 배당성향 산출기준을 가중평균에서 산술평균으로 변경하여 배당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산술평균 기준으로 배당 목표 및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4년에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배당수준을 고려하여 배당성향⁴⁾을 2015년 25%에서 매년 3%p씩 조정하여 2020년 4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중기목표를 제시하였다.⁵⁾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결산 결과 36개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이 30.25%로 정책목표인 28.00%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017년 평균 배당성향 역시 전년 대비 1.64%p 증가한 31.89%로, 목표치인 31.00%를 초과달성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⁶⁾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5년까지 가중평균⁷⁾을 기준으로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산출한 반면, 2016년부터는 산술평균⁸⁾을 기준으로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산출하도록 산출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가중평균으로 배당성향을 산정할 경우 전체 평균 배당성향이 당기순이익이 큰 기관의 배당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일부 기관의 특이요인을 제외한 합리적인 배당성향을 산출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이익 실현이 전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⁹⁾

4)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정부가 수령한 배당금을 정부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5)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 2014.12.19.

6) 참고로 2015년에는 일반회계 28개 기관 배당성향 25.45%, 특별회계 8개 기관 배당성향 22.69%로 평균 24.38%를 기록하여 목표치 25.0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7) 배당총액/출자기관 당기순이익 총액

8) 출자기관별 배당성향의 단순평균

9) 이와 같이 기준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이익 실현이 있다. 한전의 부지 매각에 따라 대규모 비경상적 이익이 발생하면서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고, (2015년 1조 399억원 → 2016년 10조 1,657억원) 이에 따라 한전의 배당성향이 전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한전에 가중치를 두면 전체 평균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2017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 현황]

(단위: 억원, %)

연번	기관명	당기순이익	지분율		배당금		배당성향
			일반	특별(기금)	일반	특별(기금)	
1	중소기업은행	10,267	50.9	0.0	1,608	0	30.76
2	한국수자원공사	(1,456)	92.5	0.0	0	0	-
3	한국전력공사	42,620	18.2	0.0	2,313	0	29.82
4	한국산업은행	(32,359)	91.6	8.4	0	0	-
5	한국토지주택공사	22,390	41.7	43.1	1,952	1,812	20.00
6	부산항만공사	1,068	100.0	0.0	339	-	31.75
7	한국공항공사	1,902	51.7	48.3	341	319	34.71
8	한국주택금융공사	2,794	59.0	5.8	531	52	32.25
9	한국자산관리공사	1,095	56.8	0.0	205	0	32.97
10	한국수출입은행	(9,901)	65.2	1.1	0	0	-
11	울산항만공사	272	99.9	0.1	94	0.1	34.50
12	한국농어촌공사	1,700	100.0	0.0	386	0	22.71
13	한국가스공사	(8,539)	22.5	3.7	0	0	-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9	100.0	0.0	10	0	35.50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2	100.0	0.0	13	0	31.50
16	인천항만공사	115	65.9	27.5	22	10	28.25
17	한국감정원	140	49.4	0.0	27	0	39.24
18	한국조폐공사	62	100.0	0.0	23	0	37.75
19	한국방송공사	248	100.0	0.0	20	0	8.10
20	한국도로공사	1,347	0.4	85.4	2	314	27.56
21	한국교육방송공사	8	44.2	55.8	0.3	0.3	8.10
22	한국관광공사	(196)	55.2	0.0	0	0	-
23	한국석유공사	(6,808)	0.2	99.8	0	0	-
24	서울신문사	10	30.5	0.0	0	0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5,300)	7.1	92.7	0	0	-
26	한국철도공사	(2,044)	90.1	9.9	0	0	-
27	여수광양항만공사	22	44.9	39.0	0	0	-
2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7)	100.0	0.0	0	0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9,650	0.0	100.0	0	3,473	35.99
30	주택도시보증공사	4,736	0.0	55.0	0	1,352	34.19
31	한국투자공사	220	0.0	100.0	0	176	80.00
32	한국지역난방공사	1,267	0.0	34.5	0	152	34.73
33	대한송유관공사	411	0.0	9.8	0	13	32.83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0.4	0.0	100.0	0	0.1	30.37
35	공항철도주식회사	919	0.0	36.7	0	0	-
36	대한석탄공사	(853)	0.0	100.0	0	0	-
평균 배당성향							31.89 (28.77)

주: 1. 평균배당성향은 산술평균 기준으로 작성, 괄호는 가중평균 기준 평균 배당성향

2. 배당성향 = 배당액/당기순이익

3. 산술평균 기준 평균 배당성향 = 출자기관별 배당성향의 단순평균

4. 가중평균 기준 평균 배당성향 = 배당총액/출자기관 당기순이익 총액

5. “일반”은 일반회계, “특별”은 특별회계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배당성향 실적 평가 기준변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확대 정책 추진배경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배당성향 실적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4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출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정 배당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당 확대 정책의 추진배경으로 밝혔으며, 합리적인 정부배당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더 큰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정부의 정부출자수입 규모 결정과 민간의 배당 인상 견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기관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의 산출방식 보다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가중평균 기준의 산출방식이 더 적합하다.

② 매년 더 낮은 수준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배당성향의 목표를 산정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배당성향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의 배당인상 정책 추진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2014년도에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의 중기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도 역시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였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배당성향 실적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연도별 배당성향 목표 및 실적]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배당성향 목표		21.50	25.00	28.00	31.00	34.00	37.00	40.00
배당성향 실적	가중평균	21.54	26.13	21.72	28.77	29.48	-	-
	산술평균	24.41	28.48	30.25	31.89	34.98	-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4년 배당성향 중기목표 설정은 배당성향이 낮았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 후, 목표달성 평가는 배당성향이 높았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배당인상 정책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산술평균 기준 실적은 2015~2017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중평균 기준 실적은 2016년부터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16년 한국전력공사의 부지매각에 따른 대규모 당기순이익 실현으로 전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으나, 배당성향 산출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의지를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부지매각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분을 감안한 평균 배당성향 산출, 산술평균 기준 배당 실적과 가중평균 배당실적의 병기 등과 같은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향후 배당정책 변경 시 출자기관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출자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 배당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2월 출자기관의 배당금 규모 산출기준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 5월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2017년 출자기관의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수납하였다. 2018년 배당정책의 방향은 ① 배당조정이익 도입, ② 개량지표의 개선 등을 반영한 것인데, 이 가운데 배당조정이익의 도입은 종전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출자기관의 배당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출자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경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 배당조정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투자 계획에서 미이행분, 복리후생비가 출자기관 평균 대비 과다한 금액, 유보금 과다 증가분 등은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도록 하여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반면, 혁신성장 투자금, 사회적 책임 이행분 등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배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2018년 변경된 배당조정이익 산정방식]

조 정 금 액	당기순이익	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
	<가산(+) <u>요소</u> >	<가산(+) <u>소요</u> >
	전년도 투자 미이행액	전년도 배당성향 산정시 제출한 투자계획 대비 미집행된 투자금액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출자기관 평균 1인당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금액× 상시근로자수
	유보금 과다증가액	최근 3개년 평균 임의적립금 증가액을 초과하는 당기 임의적립금 적립액
	<감액(-) <u>소요</u> >	<감액(-) <u>소요</u> >
	국가정책상 당초 계획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투자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계획 대비 추가로 투자한 경우
	=	=
	배당조정이익	배당성향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배당금 산정방식의 변경은 정부출자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및 공공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이미 종결된 경제적 행위에 대해 2018년에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배당금을 산출하는 것은 출자기관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 배당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전년도 투자 계획에서 미이행분 등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출자기관에게 예측하지 못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자기관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배당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출자기관에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출자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 배당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정집행관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97조¹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¹¹⁾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2017년 기준 44개 중앙부처의 예산 및 기금과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의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¹²⁾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5~2017년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계획액 183.6조원 대비 집행액 188.0조원, 2016년 계획액 166.2조원 대비 집행액 169.7조원, 2017년 계획액 163.5조원 대비 집행액 166.3조원 등 매년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2015~2017년 조기집행 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상반기 실적	
		금액(B)	집행률(B/A)	금액(C)	집행률(C/A)
2015	313.3	183.6	58.6	188.0	60.0
2016	279.2	166.2	59.5	169.7	60.8
2017	281.7	163.5	58.0	166.3	59.0

주: 반올림에 따라 일부 합계 불일치

자료: 기획재정부

10)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 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12)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1. 조기집행 계획 설정 및 실적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

가. 현 황

정부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예산 조기집행은 중앙부처의 경우 44개 기관 소관 예산(총 53개 기관 중 9개 기관¹⁾ 제외)과 43개 기금(총 67개 중 24개²⁾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유형(2015년 기준)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기준으로 25개 공기업³⁾, 8개 준정부기관⁴⁾ 등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조기집행 대상사업 선정방식]

구 분		대상사업	제외대상
중앙부처	예산	○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정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 사업분류가 주요 사업비인 세부사업 중 200~490목	○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지급 사업, 해외지출 사업(국내 경기 활성화와 무관), 재해가 발생해야 지급하는 사업, 예비비 등 제외 - 공공요금, 급식비, 숙직비 등 조기집행이 곤란한 세목 일괄 제외
	기금	○ 기금관리비, 정부 내부지출, 이자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 사업 분류가 기금사업비인 세부사업 중 200~490목	○ 인건비,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등 예산과목 제외
공공기관		○ 주요 투자 사업비	○ 인건비, 기관운영 경비, 예치·예탁금, 유가증권 매입, 상환지출 등의 사업 및 예산과목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現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 2) 사회보험성기금 5개(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재정성기금 5개(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 금융성기금 8개(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업성기금 6개(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3) 시장형공기업 14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공기업 11개(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개(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국민체육진흥공단)

한편, 정부의 2015~2017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 및 집행실적을 지출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조기집행 계획액 135.7조원 가운데 자치단체이전(330목)이 71.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융자금(13.1조원), 연구개발출연금(9.7조원), 민간이전(8.6조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2017년 지출목별 예산 조기집행 실적(중앙부처)]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코드	지출목	계획액 (A)	집행액 (B)	달성률 (B/A)	계획액 (A)	집행액 (B)	달성률 (B/A)	계획액 (A)	집행액 (B)	달성률 (B/A)
210	운영비	7,895	7,358	93.2	6,865	6,888	100.3	5,839	5,586	95.7
220	여비	198	192	97.2	176	190	108.4	-	-	-
230	특수활동비	101	130	129.6	108	134	123.8	84	109	130.7
240	업무추진비	34	32	94.5	32	30	95.1	-	-	-
250	직무수행경비	354	373	105.4	363	407	112.3	366	377	103.1
260	연구개발비	920	759	82.6	-	-	-	-	-	-
	연구용역비	-	-	-	880	713	81.1	1,097	946	86.2
310	보전금	8,151	8,772	107.6	5,458	6,236	114.2	-	-	-
320	민간이전	9,868	9,842	99.7	8,594	8,837	102.8	8,593	8,969	104.4
330	자치단체이전	72,668	77,604	106.8	63,577	65,736	103.4	71,249	73,212	102.8
340	해외이전	441	466	105.7	494	423	85.7	287	364	127.1
350	일반출연금	-	-	-	9,011	9,252	102.7	8,414	9,472	112.6
	출연금	20,772	21,769	104.8	-	-	-	-	-	-
360	연구개발출연금	-	-	-	11,460	12,163	106.1	9,696	11,607	119.7
410	건설보상비	-	-	-	-	-	-	1,203	1,213	100.8
	토지매입비	1,969	2,125	107.9	1,302	1,568	120.4	-	-	-
420	건설비	7,497	6,260	83.5	7,345	6,586	89.7	7,423	5,875	79.2
430	유형자산	4,498	4,470	99.4	4,143	4,385	105.8	5,094	4,743	93.1
440	무형자산	19	17	92.0	16	15	95.9	24	14	58.9
450	융자금	14,666	13,874	94.6	14,596	13,977	95.8	13,118	14,070	107.3
460	출자금	2,430	2,432	100.1	2,659	2,933	110.3	3,174	2,655	83.7
490	지분취득비	-	-	-	-	-	-	43	27	62.8
합 계		152,479	156,475	102.6	137,077	140,474	102.5	135,703	139,240	102.6

주: 1. 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집행액임

2. 260목, 350목, 410목에서 과목체계 개편이 있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최근 중앙부처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 중 실집행이 수반되어야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의 조기집행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간접사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집행액만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현행 조기집행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예산액 대비 중앙부처의 상반기 집행액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기집행 대상 사업 중 간접사업⁵⁾의 비중이 계획액 기준 2015년 69.6%에서 2017년 74.7%로 5.1%p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접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실적을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의 집행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2017년 조기집행 대상 사업 중 간접사업 비중(중앙부처)]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직접 사업	간접 사업	합계	직접 사업	간접 사업	합계	직접 사업	간접 사업	합계
상반기	금액	46,300	106,179	152,479	41,284	95,795	137,077	34,291	101,413	135,703
	비중	30.4	69.6	100.0	30.1	69.9	100.0	25.3	74.7	100.0

주: 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집행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직접사업에서의 중앙부처의 집행은 정부의 실질적인 지출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집행실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반면, 간접사업에서의 중앙부처의 집행은 중앙부처로부터 보조사업자로의 단순한 채원 이전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경기 활성화 등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중앙부처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의 실적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은 조기집행의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⁶⁾

5) 중앙부처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해외이전(340목), 일반출연금(350목),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출자금(460목) 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중앙정부의 집행액과 보조사업자 실집행액이 상이한 지출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 집행액만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을 반영하는 등의 조기집행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둘째, 2017년 조기집행 대상 사업에 국내 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해외이전(340목) 관련 사업을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조기집행 대상 사업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방부 소관 과학화훈련 사업, 평택기지이전 사업, 인건비, 군사시설개선 사업, 주요기관기본경비, 정책활동지원 사업, 기타이전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의 해외이전(340목) 예산을 2017년도 조기집행 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다.

[2017년도 조기집행 대상 해외이전(340목) 사업]

(단위: 천원)

소관	세부사업명	상반기 계획액	상반기 집행액
국방부	과학화훈련	2,139,997	2,102,759
	평택기지이전사업	38,041,277	60,742,760
	인건비	216,875,000	250,540,000
	군사시설개선	27,536,760	50,994,000
	주요기관기본경비	1,707	2,534
	정책활동지원	13,916	21,118
	기타이전지원	2,164,484	0
합 계		286,773,141	364,403,171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6) 중앙정부 집행액이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간접사업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서의 조기집행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앙정부 집행액이 매년 동일하고 직접사업과 간접사업 구성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조기집행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조기집행 실적 산정방식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간접사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현행 조기집행 실적 산정방식이 조기집행 효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 크다.
- 7) 중앙부처의 집행액이 증가할수록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 규모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국내 경기 활성화 등 조기집행의 효과 역시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집행액은 여전히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의 활용 가치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기집행 대상 사업 가운데 간접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추세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집행액과 조기집행 효과 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이전(340목)은 ① 보조금 중 해외교포나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를 내역으로 하는 해외경상이전(340-01목), ②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제부담금과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을 내역으로 하는 국제부담금(340-02목), ③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과 해외 출자금 등을 내역으로 하는 해외자본이전(340-03목) 등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해외이전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무관하므로 조기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획재정부 역시 해외지출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조기집행 대상 사업 선정 시 이와 같이 부적절한 사업을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2. 2017년 조기집행 실적 분석

가. 현 황

2015~2017년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계획액 183.6조원 대비 집행액 188.0조원, 2016년 계획액 166.2조원 대비 집행액 169.7조원, 2017년 계획액 163.5조원 대비 집행액 166.3조원 등 매년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사업자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조기집행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겠으나, 이하에서는 현행 조기집행 실적 평가방식에 따라 집행주체별, 사업 성질별 실적을 분석하였다.

[2015~2017년 조기집행 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계획		상반기	실적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금액(B)	집행률(B/A)
2015	중앙부처	260.2	152.5	156.5	60.1
	공공기관	53.1	31.1	31.5	59.4
	합 계	313.3	183.6	188.0	60.0
2016	중앙부처	229.6	137.1	140.5	61.2
	공공기관	49.6	29.1	29.2	58.9
	합 계	279.2	166.2	169.7	60.8
2017	중앙부처	233.8	135.7	139.2	59.6
	공공기관	47.9	27.8	27.1	56.5
	합 계	281.7	163.5	166.3	59.0

주: 반올림에 따라 일부 합계 불일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이 매년 감소하여 2017년도에는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5~2017년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계획 대비 상반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59.4%, 2016년 58.9%, 2017년 56.5%로 매년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상반기 집행계획액 27.8조원 중 27.1조원을 집행하여 조기집행 계획을 약 0.7조원 달성하지 못하였다.

최근 3년 동안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한 주요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2015년도의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1,092억원) 등 7개 기관, 2016년도의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3,106억원) 등 6개 기관, 2017년도의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1.2조원) 등 5개 기관에서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기집행 계획에 미달하는 집행액 규모는 최근 2년 동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 한국농어촌공사도 최근 2년 연속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5~2017년 조기집행 실적 부진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기관	미달액	공공기관	미달액	공공기관	미달액
1	에너지관리공단	1,092	한국철도시설공단	3,106	한국철도시설공단	11,972
2	한국도로공사	858	한국가스공사	2,399	한국철도공사	1,033
3	한국남동발전(주)	401	한국도로공사	1,801	한국지역난방공사	672
4	부산항만공사	237	부산항만공사	516	한국농어촌공사	253
5	한국공항공사	223	한국농어촌공사	17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4
6	한국산업인력공단	178	한국공항공사	81	-	-
7	한국가스공사	20	-	-	-	-

주: 순위는 상반기 집행계획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 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한 중앙부처가 2016년 11개에서 2017년 20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연례적으로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처별 조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조기집행 계획 미달성 부처 수가 2015년 13개에서 2016년 11개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2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기집행 실적 부진은 일반철도 사업의 집행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일반철도 사업의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 미달액의 규모는 각각 1,515억원, 1조 751억원이다.

[2015~2017년 조기집행 실적 부진 중앙부처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부처	미달액 / 미달률	중앙부처	미달액 / 미달률	중앙부처	미달액 / 미달률
미달액 기준	1	국토교통부	550	해양수산부	235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393
	2	국민안전처	464	법무부	48	방위사업청	109
	3	문화체육관광부	416	기획재정부	27	경찰청	98
	4	해양수산부	379	국토교통부	25	해양수산부	95
	5	미래창조과학부	160	통일부	18	국방부	91
	6	고용노동부	88	국가보훈처	17	기획재정부	79
	7	금융위원회	44	관세청	15	법무부	69
	8	여성가족부	20	금융위원회	9	행복청	54
	9	통일부	14	공정거래위원회	3	외교부	18
	10	새만금개발청	8	문화재청	3	국가보훈처	9
	11	행복청	6	식품의약품안전처	1	통계청	7
	12	국가인권위원회	1			통일부	7
	13	법제처	1			금융위원회	2
	14					공정거래위원회	2
	15					국가인권위원회	1
	16					조달청	1
	17					법제처	0
	18					국민권익위원회	0
	19					병무청	0
	20					새만금개발청	0
미달률 기준	1	금융위원회	49.0	기획재정부	27.6	금융위원회	34.3
	2	새만금개발청	38.8	통일부	18.3	행복청	28.4
	3	국가인권위원회	32.1	금융위원회	15.5	기획재정부	27.0
	4	국민안전처	30.2	관세청	12.6	법무부	18.6
	5	통일부	15.4	해양수산부	8.4	통계청	16.2
	6	문화체육관광부	14.4	법무부	7.9	통일부	14.1
	7	해양수산부	12.2	공정거래위원회	7.7	국가인권위원회	13.4
	8	여성가족부	4.8	국가보훈처	3.6	경찰청	10.0
	9	법제처	3.5	식품의약품안전처	0.7	조달청	8.3
	10	고용노동부	3.1	문화재청	0.6	병무청	6.9
	11	행복청	2.6	국토교통부	0.1	공정거래위원회	6.2
	12	미래창조과학부	2.4			국가보훈처	6.1
	13	국토교통부	2.4			국민권익위원회	5.4
	14					해양수산부	3.6
	15					외교부	3.5
	16					법제처	2.9
	17					방위사업청	2.0
	18					국방부	1.6
	19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1.6
	20					새만금개발청	0.4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조기집행 실적을 상반기 계획액 대비 집행 미달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계획액 대비 3,930억원 미달하였으며, 그 다음 방위사업청(1,090억원), 경찰청(980억원), 해양수산부(950억원), 국방부(910억원) 순으로 실적이 부진하였다. 계획액 대비 집행 미달률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3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8.4%), 기획재정부(27.0%), 법무부(18.6%), 통계청(16.2%) 순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한편,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연례적으로 조기집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일부, 금융위원회는 2015~2017년 3년 연속으로 조기집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는 최근 2년 동안 조기집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5년에 조기집행 실적이 계획에 미달하였다가 2016년 계획을 달성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셋째, 최근 3년 동안 간접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직접사업의 경우 매년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조기집행 달성의 보조사업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조기집행 실적을 사업 성격별로 살펴보면, 간접사업은 조기집행 계획을 2015년 5.6%, 2016년 3.7%, 2017년 4.8% 초과달성한 반면, 직접사업은 조기집행 계획을 2015년 4.2%, 2016년 0.4%, 2017년 3.9%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2017년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의 조기집행 실적]

(단위: 십억원, %)

구분		상반기 계획(A)	상반기 집행(B)	미달	
				미달액(C=B-A)	미달률(C/A)
2015	직접사업	46,302	44,362	1,940	4.2
	간접사업	106,179	112,113	△5,934	△5.6
	합 계	152,481	156,475	△3,994	△2.6
2016	직접사업	41,284	41,129	155	0.4
	간접사업	95,795	99,344	△3,549	△3.7
	합 계	137,077	140,474	△3,397	△2.5
2017	직접사업	34,291	32,960	1,331	3.9
	간접사업	101,413	106,279	△4,866	△4.8
	합 계	135,703	139,240	△3,537	△2.6

주: 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집행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후 자금을 교부하는 간접사업의 집행이 지출원인행위 및 사업 이행 완료 확인 후 지출하는 직접사업의 집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간접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통하여 조기집행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예산 집행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간접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만으로는 조기집행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조기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직접사업의 조기집행 실적 개선을 위한 재정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¹⁾ 2017년 말 기준 국유재산은 총 1,075.8조원으로, 국유재산 구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799.9조원, 일반재산은 275.9조원이며,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530.7조원, 유가증권은 245.7조원, 기타 299.4조원이다. 회계별 국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61.0조원, 특별회계는 379.7조원, 기금은 135.1조원이다.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행정재산 (A)	부동산	4,174,435	811,397	39,907	5,025,740
	유가증권	0	0	-	0
	기타	478,858	2,492,150	1,841	2,972,849
	소계	4,653,293	3,303,547	41,749	7,998,589
일반재산 (B)	부동산	246,863	19,404	15,278	281,546
	유가증권	689,292	473,586	1,293,677	2,456,556
	기타	20,154	450	257	20,861
	소계	956,310	493,440	1,309,212	2,758,962
국유재산 (A+B)	부동산	4,421,299	830,801	55,185	5,307,286
	유가증권	689,292	473,586	1,293,677	2,456,556
	기타	499,012	2,492,600	2,098	2,993,709
	합계	5,609,603	3,796,988	1,350,960	10,757,551

주: 기타는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무체재산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18. 5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유재산 관리는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²⁾ 현행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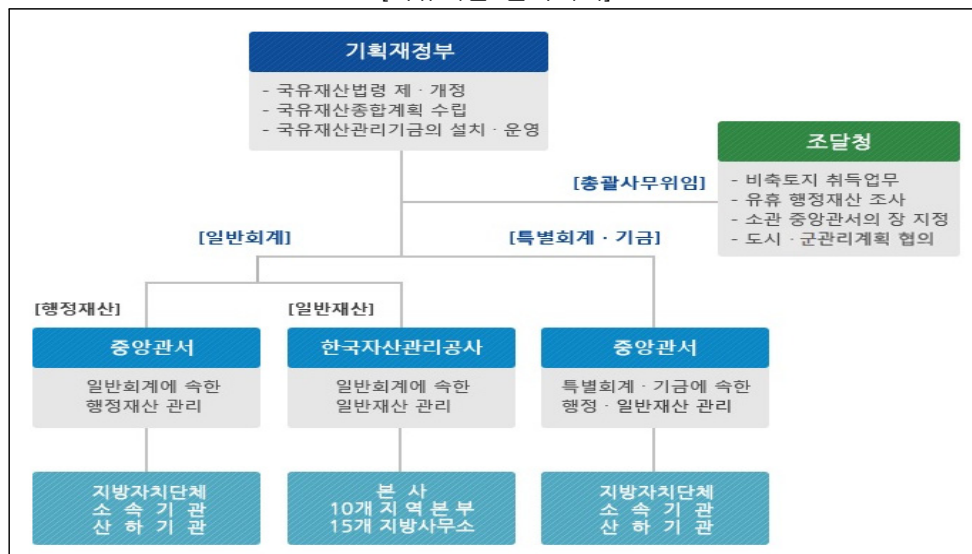
1)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총괄하고, 일반회계 소속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 국유재산은 각 부처에서 직접 관리·처분하는 구조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각 부처에 사용승인 및 관리위임하고, 일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관리하고 있다.³⁾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료: e나라재산 홈페이지(<http://k-pis.go.kr>)

2)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사업⁴⁾이 있다. 국유재산관리 사업은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적 운영경비 등이 반영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2017년 예산액 11억 7,900만원 중 4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유재산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유재산 관리	1,179	1,179	0	0	1,179	446	0	733
국유재산관리지원 ¹⁾	134	134	0	0	134	129	0	5
국유재산관리 ²⁾	1,045	1,045	0	0	1,045	317	0	728

주: 1) 국유재산심의회 운영, 소송대리인 선임, 국유재산 워크숍 교육, 위탁재산 감사수수료, 국내외 여비, 사업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구성

2) 소송패소 배상금, 신고포상금 및 업무유공포상금 등으로 구성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2012~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규모가 65.1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많은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의 국유재산 정보 관리 부실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가결산체제를 정비하여 「국가회계법」을 마련(2009.1.1. 시행)하였으며, 이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도에 최초로 국가재무제표⁵⁾가 포함되어 있는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7년도 말 기준 국가 재무제표 상의 총자산은 2,063조원이며, 부채총계 1,556조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507조원이다.

4) 코드명: 일반회계 2234-302

5)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

한편, 정부는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 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정부는 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연도인 2012회계연도부터 전기오류수정 손익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2012~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규모가 65조 1,358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국가재무결산이 7년차에 접어들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야 하는 2017회계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표 개시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5.3조원 발생하였다.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기오류수정손실	67,053	16,297	46,310	43,945	35,818	89,560	298,982
전기오류수정이익	59,116	27,648	89,986	75,385	36,857	63,386	352,376
합 계	126,168	43,945	136,295	119,330	72,674	152,946	651,358

자료: 각 부처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2~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큰 상위 6개 부처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등으로, 전기오류수정 손익 발생 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액인 65.1조원의 86.9%인 56.6조원이다.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토교통부	34,786	15,326	59,949	67,566	20,219	48,543	246,389
국방부	58,019	694	43,019	18,796	20,634	75,736	216,897
해양수산부	0	14,663	7,282	6,861	4,588	3,758	37,152
농림축산식품부	759	39	11,019	1,023	3,018	18,439	34,297
농촌진흥청	238	163	89	16,763	95	23	17,370
방위사업청	3,433	1,131	463	487	8,057	207	13,778
합 계	97,234	32,017	121,822	111,494	56,611	146,706	565,883

자료: 각 부처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에서도 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의 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7.6조원) 발생은 주로 건물(4.6조원), 구축물(2조원) 등에서 발생했다. 시설물/구축물 관리시스템인 시설정보체계시스템에 해당 자산의 금액 및 면적 등 기초데이터 입력오류분 수정, 장부에 미삭제된 용도 폐기 시설 차감, 감가상각 누락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소급 반영 등에 기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자산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건물 등의 일반유형자산과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회기반시설 부존재 및 평당 장부가액 입력 오류 등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반영하였기 때문에 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누락된 자산을 등재하거나 가격변동 미인식분 반영 등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이익을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5.0조원, 4.6조원 인식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1.8조원 중 1조 5,089억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분인데, 이 중 1조 4,918억원은 기획재정부의 국유대장 정비사업(조달청 위탁사업)을 통하여 국유재산대장 상에 등재되었지만 말소되거나 이종으로 등재된 토지 정리에 따른 수정 반영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은 대부분 자산 미등재, 말소, 이중 등재, 기초적인 데이터 입력 오류 등 국유재산 관련 장부가 부실하게 관리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유재산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향상 및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처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과 체계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 정보의 관리 부실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하여 유희 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⁶⁾⁷⁾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점검 계획]

- 점검기간: 2018년 5월 2일 ~ 7월 중순
- 점검단 구성: 점검단장(국고국장/국유재산심의관)외 6명,
(기재부 2명, 조달청 1명, 캠프 2~3명 합동점검)
- 점검내용: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 전반(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점검근거: 「국유재산법」 제21조제3항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2018.4.24.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점검은 일반회계 소관 국유재산과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점검지침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 국유재산 담당자들의 전문성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국유재산관리 사업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워크숍 교육 등을 내실화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2018.4.24.

7) 「국유재산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다.⁸⁾ 정부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수입금,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 관련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비용, 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⁹⁾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액은 총계 기준 1조 2,279억 6,200만원이었으며, 총수입은 1조 1,602억 800만원, 총지출은 8,815억 8,800만원이었다.

8)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9) 「국유재산법」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5-1. 건물매각대 계획액의 합리적 편성 필요

가. 현 황

건물매각대¹⁾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 중 건물 매각처분에 따른 수입이다. 기획재정부는 건물매각대의 2017년도 계획액 780억 4,000만원 중 398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다.

[건물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계획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건물매각대	78,040	78,040	0	78,040	39,863	39,863	0	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최근 건물매각대의 수입계획액의 과다계상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매각실적의 지속적 감소, 정부의 국유재산 패러다임 전환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계획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의 국유재산관리기금 건물매각대의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27.1%였던 수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51.1%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5년 건물매각대 수입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A)	수납액(B)	수납률(B/A)
2013	64,595	82,080	127.1
2014	84,790	75,278	88.8
2015	82,573	64,014	77.5
2016	82,085	43,844	53.4
2017	78,040	39,863	51.1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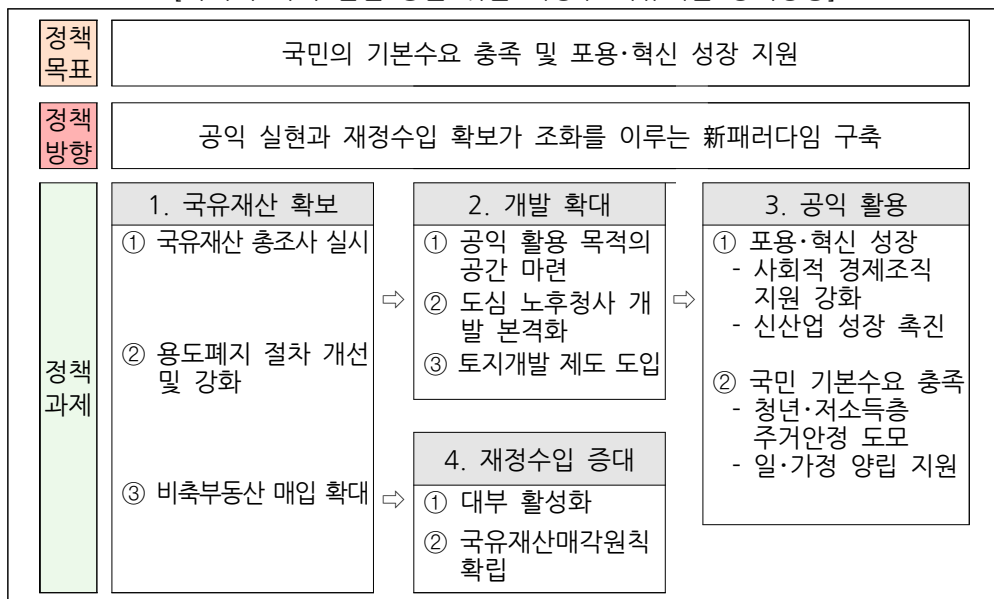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국유재산관리기금 71-711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13. 6.)」에 따라 2013년까지 시장성 있는 우량자산 위주로 매각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건물 노후화 등으로 매각실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수납률이 하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3년의 결산 평균액 등을 바탕으로 하는 건물매각대 계획액 산출 방식²⁾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매각실적의 지속적인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여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의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2017.8.)하여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재정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수입 실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금의 건물매각대 계획액 산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매각실적의 지속적 감소, 정부의 국유재산 패러다임 전환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건물매각대 계획액 편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과거 3개년 결산평균액 × 과거 3개년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상승률 × 전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

5-2.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가. 현 황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지출은 계획액 1조 93억 3,900만원 대비 87.3%인 8,815억 8,8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2016결산	2017년			2018 계획
		계획(A)	결산(B)	집행률(B/A)	
공용재산취득(24개)	783,527	914,253	808,281	88.4	860,962
- 국회	19,810	18,117	7,083	39.1	18,117
- 대법원	127,640	121,250	107,892	89.0	83,040
- 헌법재판소	515	1,092	1,023	93.7	8,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059	11,938	12,216	102.3	17,877
- 대통령경호처	3,048	6,683	6,301	78.6	0
- 외교부	45,459	37,801	32,807	86.8	50,580
- 통일부	762	706	34	4.8	5,889
- 법무부	89,670	122,211	132,044	108.0	134,377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958	32,623	32,775	100.5	46,773
- 농림축산식품부	25,026	28,882	31,431	108.8	33,791
- 보건복지부	9	5,176	761	14.7	4,755
- 식품의약품안전처	11,932	0	3,330	-	0
- 고용노동부	3,063	3,915	3,541	90.5	7,177
- 해양수산부	7,968	3,166	6,463	204.2	1,537
- 국가보훈처	96	2,552	2,536	99.4	41
- 국세청	75,423	75,023	67,352	89.8	39,153
- 관세청	21,516	15,043	14,598	97.0	10,032
- 통계청	4,322	2,676	2,479	92.6	2,154
- 병무청	6,296	351	70	20.0	1,000
- 경찰청	236,342	328,988	266,249	80.9	281,846
- 산림청	5,036	4,956	4,773	96.3	2,358
- 중소벤처기업부	0	180	161	89.5	0
- 기상청	5,644	8,573	5,609	65.4	2,898
- 해양경찰청	28,832	25,206	18,957	75.2	21,771
- 행정안전부, 소방청	42,101	57,145	47,793	83.6	87,796
국유토지비축(기획재정부)	39,991	40,000	39,999	100.0	45,000
기금운영비	1,750	2,127	1,893	89.0	2,371
통합 청관사	23,561	52,959	31,415	59.3	39,084
총 계	848,829	1,009,339	881,588	87.3	947,417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프로그램 수는 총지출 기준으로 24개 기관 각각의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 국유토지비축 프로그램, 기금운영비 프로그램, 통합 청관사 프로그램 등 27개이며, 이들 프로그램은 총 1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프로그램	세부사업	계획(A)	결산(B)	집행률(B/A)
공용재산취득	24	115	914,253	808,281	88.4
국유토지비축(기획재정부)	1	1	40,000	39,999	100.0
기금운영비	1	2	2,127	1,893	89.0
통합 청관사	1	7	52,959	31,415	59.3
합 계	27	125	1,009,339	881,588	87.3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과 통합 청관사 프로그램 가운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세부 사업의 수가 과다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111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51개의 세부사업에서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70.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집행률이 50.0% 미만인 사업은 39개, 20.0% 미만인 사업은 27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13개 세부사업에서 2017회계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합 청관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7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70.0%를 넘지 못하는 세부사업도 5건에 이르고 있으며, 3건은 집행률이 2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집행률 구간별 세부사업 수]

(단위: 개)

프로그램	집행률	계획액 기준	계획현액 기준
공용재산취득	70.0% 이상	60	55
	50.0% 이상 70.0 미만	12	17
	20.0% 이상 50.0 미만	12	12
	0.0% 이상 20.0% 미만	27	31
	(0.0%인 사업)	(13)	(13)
	소 계 ¹⁾	111	115
통합 청관사	70.0% 이상	2	2
	50.0% 이상 70.0 미만	1	0
	20.0% 이상 50.0 미만	1	2
	0.0% 이상 20.0% 미만	3	3
	(0.0%인 사업)	(0)	(0)
	소 계	7	7

주: 1) 2017년 계획액 0인 4건의 사업으로 인하여 계획액 기준과 계획현액 기준 사업 수가 상이
 1. 국유토지비축 프로그램, 기금운영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3개의 세부사업의 집행률은 모두 집행률이 70.0% 이상이므로 표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이 과다한 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공사비의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소요¹⁾, 사업부지의 확정 지연²⁾ 등 행정적인 사유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다수 존재한다.

무엇보다,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계획액 대비 집행률(총지출 기준)이 48개의 사업성기금 가운데 7번째로 저조³⁾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1) 서울남부지검 별관 증축,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순천경찰서 신축 등
 2) 전주지검 남원지청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이전부지 미확정으로 건설보상비 등이 불용
 3) 48개의 사업성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보다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기금으로 남북협력기금(7.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65.2%), 대외경제협력기금(78.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79.0%), 국제교류기금(85.3%), 사학진흥기금(85.7%) 등이 있다.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집행률 20.0% 이하 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세부사업	계획액 (A)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공용재산 취득	경찰청 경주경찰서 신축	473	473	0	0.0	0.0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	440	440	0	0.0	0.0
	경찰청 김천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4,684	4,684	0	0.0	0.0
	경찰청 남양주서 신축	8,256	8,253	0	0.0	0.0
	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2,767	2,767	0	0.0	0.0
	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3,000	3,000	0	0.0	0.0
	경찰청 순천경찰서 신축	1,312	1,312	0	0.0	0.0
	경찰청 해화경찰서 신축	469	469	0	0.0	0.0
	대법원 전주지법남원지원 신축	1,145	1,145	0	0.0	0.0
	법무부 검찰청 관사시설 취득	100	100	0	0.0	0.0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1,627	1,627	0	0.0	0.0
	법무부 전주지검남원지청 신축	1,510	1,510	0	0.0	0.0
	행정자치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852	852	0	0.0	0.0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 신축	100	100	1	0.7	0.7
	통일부 하나원시설 취득	256	256	10	4.0	4.0
	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별관동 증축	374	374	18	4.8	4.8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7,768	8,193	399	5.1	4.9
	통일부 전방사무소 청사신축	450	450	23	5.2	5.2
	행정자치부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	351	351	22	6.3	6.3
	대법원 수원가정법원 신축	17,062	18,236	1,174	6.9	6.4
	행정자치부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	382	382	29	7.5	7.5
	보건복지부 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신축	1,638	1,702	130	7.9	7.6
	경찰청 방배경찰서 신축	2,509	2,458	210	8.4	8.5
	경찰청 서울청 광역수사대 신축	2,191	2,191	186	8.5	8.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증축	3,170	3,493	290	9.2	8.3
	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신축	2,984	2,984	518	17.4	17.4
	기상청 관사시설 취득	650	650	115	17.7	17.7
	병무청 인천지방병무청 모병센터 신축	351	351	70	20.0	20.0
	법무부 전주교도소 신축	0	55	5	-	8.9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신축	615	1,727	167	27.2	9.7
	경찰청 남양주북부서 신축	1,459	1,906	347	23.8	18.2
	국세청 안산세무서 청사 신축	2,064	6,537	1,269	61.5	19.4
통합 청관사	대구 통합청사 신축	1,407	1,407	2	0.1	0.1
	무안 공무원 통합관사 개발	7,500	7,500	61	0.8	0.8
	수원 통합청사 신축	1,625	1,625	32	2.0	2.0

주: 계획액 대비 집행률 또는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20.0%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III

개별 사업 분석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8억 9,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200만원 등 예산현액 10억 6,800만원 중 9억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896	896	172	0	1,068	900	67	101
중장기 전략수립	300	300	113	0	413	353	0	60
미래한국아이디어 공모	100	100	0	0	100	89	0	11
중장기위원회 운영	243	243	0	0	243	230	0	13
정책연구개발	253	253	59	0	312	227	67	18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은 ①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마련을 위하여 작업반을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 ②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미래한국아이디어 공모 사업, ③ 「중장기 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운영과 간담회 등 정책업무 협의 등을 위한 중장기위원회 운영 사업, ④ 국가 중장기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1132-401

나. 분석의견

첫째,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4월 제정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및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²⁾,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당연직 정부위원(장관급)과 임기 1년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한다³⁾.

위원회는 2012~2017년까지 2차례의 종합전략과 1차례의 분야별 전략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기(2012.4.~2013.4.)와 제2기(2014.10.~2015.10.) 위원회는 각각 종합전략인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2012.12.)⁴⁾과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2015.12.)⁵⁾을 발표하였으며, 제3기(2016.8.~2017.8.)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3개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인 「중장기전략 주요과제」(2017.3.)⁶⁾를 발표하였다.⁷⁾

2)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3)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경제·사회·재정 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인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4) ① 창 의 와 개 방 에 기 초 한 ‘스 마 트 지 식 경 제’, ② 갈 등 완 화 와 공 생 발 전 으 로 ‘함 께 하 는 사 회’, ③ 미 래 위 험 을 이 겨 내 는 ‘지 속 가 능 한 체 제’
- 5) ①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기술·인재 육성, ② 대외 여건 변화의 적극적 활용, ③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유연한 고용·복지 정책, ④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자본 형성

그런데, 제3기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실적은 제3기 위원회 구성(2016.8.) 후 위원회 운영계획안 및 중장기전략 수립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2016.11.)와 중장기전략을 발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2017.3.) 등 단 2차례에 불과하였다. 이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5조제3항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⁹⁾

[2012~2017년 중장기전략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실적]

구분	차수	주요안건	개최시기
제1기	1차 회의	-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 -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 장기재정전망 강화 방안	2012. 05.
	2차 회의	- ‘미래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를 토대로 한 부문별 대응방안	2012. 06.
	3차 회의	-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돌파의 의미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 사회자본 확충 방안 - IT융합 2단계 확산전략	2012. 07.
	4차 회의	- 한국 기업생태계의 미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외국인력 운용과 사회통합 방안	2012. 07.
	5차 회의	-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과 정책방향 - 인구구조 변화 관리전략 - IT 융합 확산전략 2013~17	2012. 09.
	6차 회의	-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 장기재정전망(시산) 결과와 시사점	2012. 10.
	7차 회의	-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 장기재정전망(시산) 결과와 시사점 -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2012. 10.

6) ① 산업생태계 재편(규제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 혁신 유도), ② 인적자원 강화(창의적 인재양성,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령사회 대응), ③ 사회자본 확충(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통합 강화)

7) 현재 제4기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2018.1.~2019.1.).

8)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참고로, 제1기 위원회와 제2기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각각 7차례, 5차례 개최하였다.

구분	차수	주요안건	개최시기
제2기	1차 회의	- 미래 사회 변화와 중장기 대응전략 -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안)	2015. 01.
	2차 회의	-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 중국경제 리스크와 전망	2015. 04.
	3차 회의	- 글로벌 미래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 방향 -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외통상 전략 - 에너지 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2015. 06.
	4차 회의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초안 검토 - 부처간 이견 재검토	2015. 10.
	5차 회의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2015. 12.
제3기	1차 회의	-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안)	2016. 11.
	2차 회의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 -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2017. 03.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2인의 장관급 정부위원과 20인 이내의 경제·사회·재정 정책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동 위원회의 위상,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안전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근거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정기회의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제4기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정기회의가 원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중장기전략의 정책방향이 부처별 세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기 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장기전략 주요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 및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 ① 산업생태계 재편(규제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 혁신 유도), ② 인적자원 강화(창의적 인재양성,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령사회 대응), ③ 사회자본 확충(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통합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사회자본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방향	세부과제	주요내용
산업생태계 재편	규제패러다임 전환	○ (규제혁신) ‘사후규제·철폐’체계로 전환하여 법질서 확립 ○ (신산업 규제 제거) 신제품·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 기반 마련, 조기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규제 정비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	○ (데이터 축적) 데이터의 확충, 품질 제고 및 데이터 간 연계 촉진 ○ (데이터 활용 제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촉진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 정비
	혁신 유도	○ (R&D) 융합·도전 연구 중심으로 R&D 체계 개편 ○ (벤처생태계 조성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벤처기업 용자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벤처환경 개선
인적자원 강화	창의적 인재양성	○ (고등교육 혁신) 단순지식의 장기간 습득보다는 핵심 역량 습득 후 조기 취·창업과 평생교육을 통한 보완 지원 ○ (수업방식 선진화) 논리·창의성·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강화 ○ (평생교육 기반구축)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자기계발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노동시장 다양성) 다양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반 마련 ○ (일·가정 양립)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체감도·형평성 제고
	고령사회 대응	○ (노후소득 확충) 고령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되, 부족한 소득은 기초연금, 자산유동화 지원 등으로 보완 ○ (주택·공간 수요 변화 대응) 고령화에 대응한 생활공간 재편 ○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 시장 확대에 대비한 기반 정비
사회자본 확충	사회적 신뢰 제고	○ (신뢰문화 조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구현 ○ (정책 신뢰성) 국민과의 소통활성화를 통한 정책신뢰 제고 ○ (공정성 제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여건 조성 ○ (소비자 권리 강화) 신뢰위반 행위의 손해배상액 인상, 약자의 대항권 보장 등을 통해 사회질서 확립 ○ (공동체 문화) 참여·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함께하는 문화 형성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차별해소)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문화 조성 ○ (격차 완화)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적정 생활수준이 유지되도록 지원 ○ (사회이동성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보장

자료: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 「중장기전략 주요과제」(2017. 3.)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과제들은 소관 부처가 상이하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제들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전략의 정책방향이 부처별 세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⁰⁾

셋째,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5건 중 4건이 11월 이후 추진되어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2억 5,3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9.1%에 불과하였다. 특히, 2017년도 연구과제 5건 중 연내완료된 과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26조¹¹⁾에 따른 선급금만을 집행하였다.

[2017년 정책연구개발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기간	수행자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독일노동정책 보고서 번역	'17.3.~'17.5.	한국외대	18	18	0
미래세대 의견 수렴을 통한 미래트렌드 연구	'17.11.~'18.3.	한국미래전략연구소	49	34	15
한국경제의 여건변화 점검 및 정책방향 연구	'17.11.~'18.4.	KDI	45	32	13
미래준비 진단을 위한 사례 및 지표연구	'17.11.~'18.3.	한국정보화진흥원	40	28	12
사회적경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17.12.~'18.7.	KDI	91	64	27
합 계			243	175	67

자료: 기획재정부

10)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추진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의 변경과 추진과제의 보완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11)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금과 개산금)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연구과제 4건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이 발생했다는 입장¹²⁾이나, 2017년 연구과제 5건 중 4건에 대한 계약을 11월 이후 체결한 것은 회계연도를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연례적인 연구용역비의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에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동 사업은 과거 5년(2012~2016년) 중 3년의 집행실적이 부진(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80.0% 미만)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연구과제의 조기 선정과 연구과제 계약의 연도말 체결 지양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2~2016년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12	289	289	0	90	379	298	103.1	78.6
2013	370	370	0	0	370	79	21.4	21.4
2014	370	0	170	0	540	452	122.2	83.7
2015	296	296	60	0	356	301	101.7	84.6
2016	304	304	0	0	304	150	49.3	49.3

자료: 기획재정부

12)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연구,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과제 연구 수행을 위해 발주가 4/4분기에 이루어졌다.

가. 현 황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¹⁾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평가·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1억 2,7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127	127	0	0	127	121	0	6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20위권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하락·정체 상태에 있다.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09년 19위였던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2017년 26위까지 하락하였으며,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평가 결과는 2009년 27위에서 2011년 22위까지 상승한 이후 2018년 다시 27위까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부진은 기업·정부 효율성 분야에서의 상대적 부진에 기인한다. 노동·금융 등 부문이 만성적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따른 혁신 관련 경쟁력 순위 부진도 두드러지며, 환경·교육·안전 등 삶의 질 관련 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1133-301

[우리나라의 WEF 및 IMD 국가경쟁력 순위]

(단위: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WEF	19	22	24	19	25	26	26	26	26	-
IMD	27	23	22	22	22	26	25	29	29	27

주: 2018년도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반기 발표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가경쟁력 강화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부진했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내실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관계부처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협의회를 불과 3차례 개최하였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개최시기	회의차수	안건
2013.09.04.	제1차	우리나라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결과 및 향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방안
2013.12.24.	제2차	최근 국가경쟁력 현안과 분야별 경쟁력 정책 추진 현황, 노동 분야 국가경쟁력 현황 및 제도개선과제, 부패인식지수(CPI) 결과분석 및 제고 대책
2017.10.26.	제3차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및 개선과제
2018.06.05.	제4차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를 통한 국가경쟁력 관리방안, 핵심생계비 관리방안, 국가경쟁력 취약부문 분석 및 개선방안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경쟁력 제고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책임성과 관련부처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이 미흡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4년만에 개최(2017.10.)하고, 이어 2018년 6월에도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점, 협의회 구성 정비·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정비 및 신규지수 추가 등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을 보완(2018.1.)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2)에 이미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 연 2회 정례화는 개선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획재정부가 2013년 9월에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³⁾을 밝혔음에도 실제 운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모든 부처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2013. 9.

가. 현 황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¹⁾은 2014년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점검 및 관리	150	150	0	0	150	40	0	110
경제혁신포털 운영	100	100	0	0	100	0	0	100
종합성과보고회 등	50	50	0	0	50	40	0	10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4년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하였으며, 2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3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과제의 점검·관리를 위하여 2015년 신규로 편성되어 2017년 종료되었다.

나. 분석의견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종료되었으나 59개의 세부 실행과제 중 상당수의 과제가 향후 지속 추진될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보다 심도 있는 성과 점검을 통하여 앞으로의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1134-303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총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에 따른 18개 주요 경제지표의 2017년 목표를 제시하는 등 3년 후 우리경제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전략과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져 성장잠재력이 제고되고 국민의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 실행과제 개요]

추진전략	9+1 과제	세부 실행과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공공부문 개혁 (8개)	■ 공공기관 비리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 ■ 보조금 및 직역연금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6개)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가 권리금 보호, 노동시장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1개)	■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창조경제 구현 (11개)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등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 M&A 활성화 ■ 융합 신산업 육성 등
	미래대비 투자 (7개)	■ R&D 총량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해외진출 촉진 (7개)	■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
내수·수출 균형경제 (18개)	내수(소비)기반 확대(4개)	■ 가게부채 구조개선,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 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투자여건 확충 (11개)	■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3개)	■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고용 활성화 등
통일시대 준비(1개)		■ 통일시대 준비

자료: 관계부처 합동,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2014. 3. 5.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출범 시 18대 주요 거시경제 지표²⁾의 2017년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17년 이 계획 종료 이후 18대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³⁾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부분의 세부추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⁴⁾ 또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었을 때, 성과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구조개혁 성과평가 세미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나, 이와 같은 정책세미나를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로 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⁵⁾

또한,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가운데 지금의 정부가 유지·강화할 정책과 변경·폐기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각각의 세부 실행과제 소관 부처 차원에서 세부 실행과제의 추진경과를 단순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⁶⁾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3개년계획 전반에

2) 공공기관 부채비율, 국가채무비율, 근로손실일수, R&D 투자, 신규 벤처투자금액, FTA 시장규모, 온라인 수출액,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외국인투자유치금액, 외국인 관광객 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률,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고용률, 가계부채/가처분소득, 사교육비 부담, 주택 거래량, 전월세가격 상승률

3)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FTA 시장규모, 온라인 수출액,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주택 거래량, 전월세가격 상승률 등 6개 지표의 경우 2016년 말에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교육비 부담의 경우 2017년 말에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10개 지표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R&D 투자의 경우 실적을 집계 중인 관계로 성과 달성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7~89.)

4) 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7~89.

5) 세미나는 우리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구조개혁의 필요성, 공공개혁의 성과와 미래과제, 금융개혁 정책과 평가, 노동개혁 정책과 평가, 미래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등 5개의 주제에 대하여 발제자가 각각 15분씩 발제를 한 후, 8명의 전문가가 80분 종합토론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6) 59개 세부 실행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간 연계협력 과제’는 소관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진의 한계가 서술된 과제는 13건에 불과하였다.

대한 종합적·거시적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2017년으로 경제발전 3개년계획이 종료되었으나, 3개년계획의 세부 실행과제 59건 중 대부분이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⁷⁾이므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 및 한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대외적 요인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함으로써 향후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 실행과제 평가]

추진전략	순번	과제명	담당부처	평가 결과
기초가 튼튼한 경제	1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기재부	유지·강화
	2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기재부	유지·강화
	3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기재부	유지·강화
	4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기재부	유지·강화
	5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기재부	유지·강화
	6	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
	7	보조금 개혁	기재부	유지·강화
	8	직역연금 개혁	인사처	유지·강화
	9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위	유지·강화
	10	상가권리금 보호	기재부	유지·강화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부	변경 ¹⁾
	12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고용부	변경 ²⁾
	13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안부	유지·강화
	14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위	유지·강화
	14-1	소비자 역량 강화	공정위	유지·강화
	15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고용부	유지·강화

7)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부터 종합한 과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59개 세부 실행과제 가운데 과제 자체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것은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1건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는 유지·강화되거나 변경되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추진전략	순번	과제명	담당부처	평가 결과
역동적인 혁신경제	16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중기부	변경 ³⁾
	17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중기부	유보
	17-1	특화형 창조거점 -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문체부	변경 ⁴⁾
	18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중기부	유지·강화
	19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중기부	유지·강화
	20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산업부	유지·강화
	21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중기부	유지·강화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중기부	유지·강화
	23	M&A 매수기반 확대	금융위	유보
	24	M&A 인센티브 확대	금융위	유지·강화
	25	M&A 규제 완화	금융위	유지·강화
	26	융합신산업 육성	과기부	유지·강화
	27	R&D 총량 확대	과기부	변경 ⁵⁾
	27-1	국가 R&D 효율화 및 미래기반 기술 육성	과기부	유지·강화
	28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과기부	유지·강화
	29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특허청	유지·강화
	30	배출권거래제 안착	기재부	변경 ⁶⁾
	31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산업부	유지·강화
	32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산업부	유지·강화
	3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국조실	유지·강화
	34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중기부	유지·강화
	35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산업부	유지·강화
	36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산업부	유지·강화
	36-1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부	변경 ⁷⁾
	37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기재부	유지·강화
	38	국내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기재부	변경 ⁸⁾
	39	EDCF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기재부	유지·강화
	40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	문체부	유지·강화

추진전략	순번	과제명	담당부처	평가 결과
내수·수출 균형경제	41	가계부채 구조개선	금융위	변경 ⁹⁾
	42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국토부	폐지
	43	임대시장 안정	국토부	변경 ¹⁰⁾
	44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부	유지·강화
	45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국조실	유지·강화
	46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기재부	유지·강화
	47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기재부	유지·강화
	48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복지부	변경 ¹¹⁾
	49	교육서비스업 육성	교육부	유지·강화
	50	관광서비스업 육성	문체부	유지·강화
	51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위	유지·강화
	52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과기부	유지·강화
	53	콘텐츠산업 활성화	문체부	유지·강화
	54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부	변경 ¹²⁾
	54-1	규제프리존 도입	기재부	유보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발전위	미제출
	56	청년 고용 활성화	고용부	유지·강화
	57	여성 고용 활성화	고용부	유지·강화
	5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유지·강화
통일시대 준비	59	통일시대 준비	통일부	변경 ¹³⁾

- 주 : 1)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과제 폐지
2)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과건허용범위 확대 등
3) 활용성이 낮거나 자체 서비스가 비효율적인 메뉴 및 콘텐츠 통폐합
4) 일부 폐쇄적 입주기업 중심의 집중지원방식 개선 필요
5) 전반적인 저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 조정 혹은 성과지표 변경
6)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기획재정부 → 환경부)
7) 6차산업은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고령농·소농의 참여로 융복합산업으로 고도화 필요
8)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경우 한도 소진으로 사실상 제도 종료
9)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심사 없이 LTV·DIT 규제비율에 따라 대출해주는 여신 관행 개선 필요
10) 뉴스테이는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여 공공성 강화 필요
11) 의료영리화 논란이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은 현행 의료 법령 내에서 제한적 유지 또는 중단
12) 지역에 난립한 거점·특구에 대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지역의 신성장 거점 선정·육성 필요
13) 통일준비위원회 폐지

자료: 기획재정부

가. 현 황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¹⁾은 「대한민국헌법」²⁾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운영 경비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19억 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억 1,800만원 중 1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943	1,943	75	0	2,018	1,546	0	472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13년 이 사업 신설 이후 예산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회계연도 이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6%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예측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2017년 상반기에 정상적인 자문활동이 곤란하였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자문위원 신규 구성 지연으로 자문회의 개최가 축소되었다는 입장이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1431-301

2) 「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7년 주요 집행부진 비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보수	12	12	0	0	12	0	0.0	0.0
기타직보수	131	131	0	0	131	73	55.7	55.7
일반수용비	453	453	0	△165	288	276	60.9	95.8
복리후생비	8	8	0	0	8	4	50.0	50.0
일반용역비	215	215	0	△3	212	125	58.4	59.0
국내여비	20	20	0	0	20	8	40.0	40.0
일반연구비	80	80	75	0	155	90	112.5	58.1
정책연구비	240	240	0	0	240	145	60.4	60.4
고용부담금	30	30	0	0	30	17	56.7	56.7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정상적인 자문활동이 곤란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자문위원 구성 지연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업이 신설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14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집행률이 80.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차원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C/A)	집행률(C/B)
2013	0	1,002	743	199	-	74.2
2014	2,361	2,421	1,989	432	84.2	82.2
2015	2,191	2,191	1,580	610	72.1	72.1
2016	2,059	2,059	1,592	392	77.3	77.3
2017	1,943	2,018	1,546	472	79.6	76.6

주: 2013년은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자문위원 신규구성 지연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예상 집행 잔액을 국외 업무여비로 자체전용하여 국외출장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2017회계연도 집행실적은 자문위원 신규 구성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6.6%로 부진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일반수용비(210-01목)의 경우 자문회의 개최 축소로 4억 5,300만원 가운데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용역비(210-14목)의 경우 세미나 및 포럼 등의 축소 개최로 2억 1,5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일반수용비 예상 잔액 가운데 4,3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자체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전용 및 세목조정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전용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431-301)	210-01	43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431-301)	220-02	국외여비 예산부족으로 예산전용 소요 발생

주: 2013년은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조직개편(2017.9.)으로 신설된 대외경제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연구기관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2017. 10. 23. ~ 2017. 11. 1.)하였다.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 현장방문,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등으로 2017년도 국외업무여비 예산 5,000만원 중 4,98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외 업무여비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시점에서 본예산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 전용하여 조달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와 달리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해외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목적의 국외출장은 그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점, 2017년 12월 말까지 “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조사 및 협력이슈 발굴” 용역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예산으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방문 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³⁾

셋째, 2017년 이 사업의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이 56%로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이 사업 성과지표를 전체회의 안건 및 현안보고서 작성 건수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2017회계연도 이 사업 성과목표는 18건이었으나, 실적은 10건에 불과하여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이 56%로 부진하였다.

[2017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4년	'15년	'16년	'17년
자문회의 지원 실적 (건수)	전체회의 안건 및 현안보고서 작성 등 건수	목표	12	12	12	18
		실적	16	13	14	10
		달성률(%)	133.3	108.3	116.7	55.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기획재정부)」, 2018. 5.

이에 대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2017년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⁴⁾으로 자문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성과를 달성할

3)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에서는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4) 2017년 초부터 예측치 못한 상황변경 등으로 새정부 출범 전까지는 의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새정부 출범 후 자문위원 전면 교체로 인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상당기간 결위됨에 따라 분과회의 및 각종 세미나 등이 개최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회의의 분기별 1회 개최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세칙」과 달리 2017년 12월 제1차 전체회의 개최 후 2018년 6월 말 기준 전체회의 개최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¹⁾은 국고금 출납 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해 조달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및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27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7,000	27,000	0	0	27,000	0	0	27,0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이 과다계상되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이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수여건 개선에 따른 초과세입으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다.²⁾ 또한, 2018년 3월말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이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도 이 사업 예산액 270억원 역시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³⁾ 및 제34조제2항⁴⁾에 따르면, 통합계정의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272-561

2)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서 2017년에도 2016년과 동일한 사유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3)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4) 「국고금 관리법」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데, 최근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통합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수익금 잔액은 2,059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3~2017년 통합계정 운용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월액(A)	1,128	0	26	82	786
운용수익(B)	333	483	545	1,259	1,433
수익금 사용액(C)	1,461	457	489	555	160
- 차입이자 지급	433	70	82	26	1.6
- 재정증권 발행이자	1,028	387	407	529	158.5
수익금 잔액(A+B-C)	0	26	82	786	2,059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향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및 재정증권 발행이자, 통합계정 운용수익, 수익금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5년 이후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한도 대비 차입 또는 발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예산총칙 상의 한도액은 매년 동일하게 설정되고 있으므로, 한도액 설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의 연중 최고 한도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⁵⁾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총칙안에 통합계정, 양곡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5)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연중 최고 한도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3년 통합계정의 한도액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2018년까지 매년 30조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세출 간의 시기 불일치에 따라 2~3월 약 20조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12~2015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진도를 저조로 차입 최고액이 한도액의 73.3~96.2%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일반회계 세입 진도율이 54.2%로 개선되면서 2016년 한도액 대비 차입 최고액은 53.0%로 하락하였으며,⁶⁾ 2017년에는 한도액 대비 차입 최고액이 29.7%까지 하락하였다.

[2012년~2017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운용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차입한도(A)	20.0	30.0	30.0	30.0	30.0	30.0	30.0
차입최고액(B)	19.2	28.5	20.5	22.0	15.9	8.9	-
한도 대비 실적(B/A)	96.2	95.0	68.3	73.3	53.0	29.7	-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각 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도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진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⁷⁾ 실제로 2018년 3월말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이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도 차입 최고액 역시 한도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최근의 세입·세출 규모 추이, 세입 진도율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한도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그 한도 내에서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2012~2014년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등 세수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금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조기집행액 확대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세수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7. 11.

가. 현 황

재정집행관리 사업¹⁾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재정집행 효율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하며,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2억 3,500만원 중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집행관리	235	235	0	0	235	174	24	37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경비, 예산낭비 및 예산성과금 사례집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4,100만원, 예산낭비사례 현장 점검, 재정집행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단 활동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220-01목) 2,500만원, 재정집행 효율화 관련 해외 사례조사 등에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220-02목) 900만원, 각종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사업추진비(240-01목) 3,000만원, 재정집행효율화 관련 연구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일반연구비(260-01목)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643-300

나. 분석의견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 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7 회계연도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연구용역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연구용역 수행을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용역비 집행부진은 과거에도 빈번하게 발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연구용역비를 매년 3,0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14회계연도에는 ‘재정조기집행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용역 계약을 9월에 체결한 후, 계약기간을 다음연도로 연장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2015회계연도에는 연구용역 미실시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와 관련된 적절한 연구용역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연구용역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3~2017년 연구용역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13	30	30	0	0	30	30	100.0	100.0
2014	30	30	0	0	30	0	0.0	0.0
2015	30	30	30	0	60	30	100.0	50.0
2016	30	30	0	0	30	30	100.0	100.0
2017	30	30	0	0	30	0	0.0	0.0

자료: 기획재정부

가. 현 황

재정사업 평가 사업¹⁾은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 사업의 2017년 예산액 15억 1,700만원과 이월액 2억 5,600만원 등 예산현액 17억 7,300만원 중 17억원을 집행하였고,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재정사업 평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사업 평가	1,517	1,517	256	0	1,773	1,700	0	73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① 각 부처가 전략 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²⁾, ②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재정사업평가³⁾, ③ 일부 사업군을 선정한 후, 정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 및 구조조정방안을 도출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⁴⁾로 구성된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644-300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환류되지 않아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7년 실시한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① 각 부처가 객관적으로 삭감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소요예산 감소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 미흡등급을 부여하는 '전략적 왜곡'이 발생⁵⁾하였고, ②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이었음에도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과가 환류되지 못한 사례⁶⁾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각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 개선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부처 환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부터 각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이유로 메타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폐지하였고, 2018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성과중심 재정운용 원칙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5) 예를 들면, 조달청 소관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은 '미흡' 등급을 받아 2억 8,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지출구조조정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예산안에서는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감액 재원의 대부분인 은닉 재산 등 국유화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은 2017년 대부분이 마무리되어 자연 감소될 예정이었다.
- 6)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신장주차환경개선 사업은 50억원 감액 계획되었으나, 실제 2018년도 예산안에는 84억원이 증액편성되었다.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8.4억원 감액 계획되었으나, 추후 181억 4,500만원 증액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개편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舊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 개편사항]

	2015년	2017년	2018년
평가 대상	◆ 전체 재정사업의 1/3 (3년주기로 평가)	◆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자체 평가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5단계로 등급화 ◆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지표로 평가 ◆ 분야별(일반재정, R&D, 지역발전사업) 별도의 평가 지표 사용	◆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 3단계로 등급화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지표로 간소화 ◆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되, 특성화지표(R&D만 해당) 활용 ◆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처 자체평가 실시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3단계로 등급화 ◆ 평가지표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R&D, 재난, 지역발전 등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지침에 따라 평가
메타 평가	◆ 분야별로 분절적·칸막이 평가 ◆ R&D, 지역발전사업의 경우 사업별 확인·점검 실시	◆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평가	◆ 폐지
평가 결과 환류	◆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실시 - 미흡사업별 10% 예산삭감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부처단위 종합적 지출구조 조정 실시 -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부처단위 자율적 환류계획 마련 - 미흡사업에 대한 기계적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폐지 -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중심으로 평가결과 환류계획 마련

자료: 각 연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관계부처 합동)을 바탕으로 재구성

구체적으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를 폐지하였고, 미흡사업에 대한 기계적·일률적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폐지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를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환류되지 않아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메타평가 폐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폐지 등을 반영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메타평가의 폐지는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각 부처의 전략적 왜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폐지는 각 부처의 성과 개선 유인체계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성과평과 결과가 지출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부처 핵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 전략적 왜곡 가능성은 여전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가 2014~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각 연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설정비율은 2014년도 예산안 기준 59.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도 예산안 기준 62.4%까지 확대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안 기준 51.9%로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2018년도 성과관리대상사업 현황]

(단위: 억원, %, %p)

연도	총지출(A)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금액(B)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설정비율(B/A)
2014	3,572,031	2,135,586	59.8
2015	3,754,990	2,291,680	61.0
2016	3,862,196	2,379,724	61.6
2017(A)	4,002,017	2,498,229	62.4
2018(B)	4,284,780	2,224,643	51.9
증감(B-A)	171,001	△273,586	△10.3

주: 1. 정부 제출 예산안(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2. 국가정보원은 성과관리대상에서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성과계획서(총괄편)」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제외 대상을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대외공개가 곤란한 업무나 기관운영 경상경비, 정부 내부지출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경우”에서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그 기준으로 단위사업 기준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명시하였다.

[성과관리 대상사업 제외 기준]

분야	성과관리 대상사업 제외 기준
일반 재정 · 정보화	○ 관련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 대외공개가 곤란한 업무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기본행정경비·소규모 전산운영경비·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영비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입금 이자상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단순 PC 교체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으로만 구성된 사업(정보화) ■ 소속 직원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통신회선료,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 ○ 기타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사업 ■ 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단,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제외)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운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회의나 심의·의결 기구 등의 자문비 지급, 회의비용 지출 등의 운영사업 ■ 국가시험 운영·정부 내 평가 관련 사업,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 사업, 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 * 다만 기관운영 출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운영 성격이 아닌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 ■ 대출금 또는 원금상환, 이차지원금(사업성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 제외) ■ 법정교부금, 장려금, 채당금, 보상금, BTL 정부지급금, 최소운영수입 보전금(MRG), 반환금, 국제기구분담금 ■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정보화 사업은 5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 조직 내부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 직원 복지 등 부처공통 행정지원 프로그램(단,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성과관리 대상) ■ 고시비용, 고지서 등 발송비용, 공공요금 및 수수료, 활동비 등 행정절차 및 행정이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 공무원, 교직원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R&D	○ 관련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 대외공개가 곤란한 업무 ○ 과학기술계 출연연지원금(연구회 포함) ○ 경제사회계 출연연지원금 ○ 인문사회 정책, R&D 사업기획 등 정책연구 ○ 평가관리 사업(과제평가, 과제관리, 조사분석) ○ 정부연구소 인건비 ○ 연구개발 내용이 없는 학술단체 등 기관지원 ○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 기타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관리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단위사업(예시)> ■ 인건비, 기본경비, 기금운영비,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사업, 평가관리,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단위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 대상사업 기준의 정비가 성과계획서 대상 사업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 및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계획서 대상 사업의 감축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 대상 사업과 재정사업 자율 평가 대상사업의 불일치 해소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 재정성과관리 강화라는 기획재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재정성과관리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메타평가의 폐지나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폐지, 성과계획서 대상 사업의 정비는 부처의 자율성과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성과평가의 객관성 저하 우려, 성과 개선 유인 체계 약화, 전략적 왜곡 행동 가능성의 잔존, 성과관리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는 성과중심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예를 들면,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나 향후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될 수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2006년에 성과관리대상을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성과관리대상을 국한할 경우, 그 사업과 연계되어 수행되는 정책이나, 제도, 규제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정도·원인 등에 종합적인 분석·판단에 한계가 있으며, 인건비, 경상경비 등 간접비로 수행되는 정책 및 규제 등도 성과관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 현 황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¹⁾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타당성조사 및 제도운영을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69억 9,400만원 중 67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이월액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6,994	6,994	0	0	6,994	6,756	230	8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2017년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사의 지연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29조²⁾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6개월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조사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조사 수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28건 중 3건이 완료되었으나, 모든 조사의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646-301

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지연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1년 이후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155건 중 6개월 이내에 완료된 조사 건수는 29건에 불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행기간 준수비율이 18.7%에 불과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수 행 건 수	완료	6개월 이내	16	10	1	2	-	-	-	29
		6개월 초과	27	27	27	21	6	15	3	126
	진행		0	1	8	16	21	9	24	79
	철회		-	-	1	-	1	3	1	6
	합계		43	38	37	39	28	27	28	240
수행기간 평균 (개월)			8.6	10.3	13.3	13.6	9.1	12	8.8	10.8
지 연 사 유	사업 계획 관련		18	13	15	18	9	6	2	81
	검토 관련 (재검토, 요청)		14	7	9	8	6	8	5	57
	설문 조사 관련 (개시, 지연)		3	1	2	1	-	2	-	9
	회신 지연		1	3	-	2	3	6	4	19
	자료 관련 (부족, 지연)		3	3	13	12	3	2	7	43
	신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KTDB) 관련		-	-	-	7	8	-	-	15
	합계		39	27	39	48	29	24	18	224

주: 지연사유는 중복답변을 포함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지연은 사업의 적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업의 후속절차 지연으로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업부처의 사업계획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상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¹⁾은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2017년도 예산 17억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00만원 등 예산현액 17억 4,700만원 중 9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1,708	1,708	39	0	1,747	939	265	543
재정전략 기획을 위한 재정동향 점검 및 협의	42	42	0	0	42	41	0	1
재정전략기획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565	565	39	0	604	243	20	341
재정사업 심층평가	1,101	1,101	0	0	1,101	655	245	201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 추진된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일반용역비 불용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이후 매년 집행률이 80% 미만 수준으로 부진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5회계연도에 예비비를 배정 받아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나 예비비의 77.2%를 집행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연구용역비 집행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712-301

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70.3%, 예산현액 대비 74.5%를 나타냈다. 2017회계연도 역시 이 사업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55.0%, 예산현액 대비 53.7%로 저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상황 변경 등으로 내역사업인 재정전략기획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사업의 일반용역비가 불용되었으며,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의 사업출연금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5~2017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15	0	0	0	0	753	753	581	-	77.2
2016	700	700	20	△60	0	660	492	70.3	74.5
2017	1,708	1,708	39	0	0	1,747	939	55.0	53.7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내역사업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²⁾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7년 출연금 예산 9억원 중 6억 3,2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피출연기관은 이 가운데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7.1%에 불과하였다.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의 출연금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기관명	부처			피출연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90	490	365	365	365	127	238	0	25.9
한국정보화진흥원	90	90	63	63	63	27	36	0	30.0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120	120	84	84	84	0	84	0	0.0
(사)농정연구센터	100	100	50	50	50	0	50	0	0.0
한국재정학회	100	100	70	70	70	0	70	0	0.0
합 계	900	900	632	632	632	154	478	0	17.1

자료: 기획재정부

2)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재정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개별사업의 운영성과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

피출연기관의 실행실적 부진 사유는 기획재정부의 과제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 선정 및 출연금 집행 등 후속절차 순연에 기인한다. 물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상황 변경 등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으나, 2017년도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심층평가 과제 8건 가운데 6건의 과제가 11월에서야 선정된 점, 이에 따라 출연금 집행액 6억 3,200만원 중 3억 7,200만원이 12월에 집중적으로 교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의 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과제별 추진 현황]

기관명	과제명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출연금 집행	연구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16.12.	'17.01.	'17.02. '17.10.	'17.01.~'17.06.
	신재생에너지 사업군	'17.11.	'17.12.	'17.12.	'17.12.~'18.06.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고용장려금 체계 개편	'17.11.	'17.12.	'17.12.	'17.12.~'18.06.
	정신건강증진사업군	'17.11.	'17.12.	'17.12.	'17.12.~'18.06.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공간정보정책 사업군	'17.05.	'17.05.	'17.06.	'17.05.~'18.02.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문화콘텐츠산업육성 사업지원군	'17.11.	'17.12.	'17.12.	'17.12.~'18.06.
(사)농정연구센터	농업인력양성 사업군	'17.11.	'17.12.	'17.12.	'17.12.~'18.06.
한국재정학회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17.11.	'17.12.	'17.12.	'17.12.~'18.06.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의 조기 확정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 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³⁾

3)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집행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2018년도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전년 대비 6.1%)하였으며, 특히 일반용역비의 경우 전년 대비 71.4%를 감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도 이 사업 일반용역비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95.2%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은 사업의 집행 부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사업의 집행 부진은 예산의 과다편성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미흡한 사업관리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¹⁾은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2017년도 예산 195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8,800만원 등 예산현액 240억 9,200만원 중 23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2,3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19,504	19,504	4,588	0	24,092	23,224	45	823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나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감축 효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모든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1월 시스템 1차 개통에 이어 7월에는 시스템을 완전히 개통하였다.

한편, 시스템 BPR·ISP가 수행되었던 2015년의 경우 “시스템구축 관련 분석·설계 진척도”가,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2016~2017년의 경우 “시스템구축 진척도”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713-501

각각 성과지표로 설정되었으며, 연간 시스템이 가동되는 첫 해인 2018년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률”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단위: %)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시스템구축 관련 분석·설계 진척도	-	목표	100	-	-	-
		실적	100	-	-	-
		달성률	100.0	-	-	-
시스템구축 진척도	PMS 상에서의 시스템 구축 누적 진척률	목표	신규	78	100	-
		실적	신규	67.2	100	-
		달성률	신규	86.2	100.0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률	연간 전산장비 운영시간 대비 연간 총 가동시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8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률	신규	신규	신규	-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와 같은 시스템 가동률은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적절할 수 있겠으나, 업무의 효율성 개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감축 효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가급적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시스템 운영 초기단계로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²⁾되고 있으며 보조금 유용의 방지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스템 개선사항을 적극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 개통에 따른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부 소관)」을 통하여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가. 현 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 예수금¹⁾은 특별회계의 예상되는 잉여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의 2017년도 수정계획액 4조 7,668억 9,500만원 중 3조 7,058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회계예수금	4,795,927	4,766,895	0	4,766,895	3,705,895	3,705,895	0	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17회계연도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예수금 징수실적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징수액이 계획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6회계연도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은 계획액 4조 1,46억원 대비 수납액 2조 5,069억원으로 징수율이 60.5%에 불과하였다. 이에 국회는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수입계획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과정에서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계획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7회계연도 공자기금의 기타특별회계예수금 징수실적은 계획액 대비 징수율이 77.7%로 나타났다. 이는 2016회계연도 징수율 60.5%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것이나, 여전히 징수액이 계획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공공자금관리기금 94-942

개별 특별회계의 수입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은 인정될 수 있으나, 예수계획의 연례적 과다계상과 이에 따른 과소수납의 반복은 적절하지 않다.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공자기금의 수입부족분을 국채 추가발행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적정 수준의 예수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7년도에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 가능 여부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으로 예수금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과 공자기금의 수입계획에 각각 공자기금 예탁과 특별회계부터의 예수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 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예산이 편성된 2014년도 이후 매년 예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6년도 역시 2,327억원의 예수가 계획되었음에도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관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공자기금 예탁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향후 동 특별회계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7년 역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예수금 실적이 전무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예수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2)에 따라 예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이 민간의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우체국예금과는 달리 우체국보험을 예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자기금 예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015~2017년 회계별 예수금 결산내역]

(단위: 억원)

회 계	'15년		'16년		'17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교도작업특별회계	98	98	349	349	436	32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44	300	1,533	750	232	2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	0	0	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	25,382	19,820	25,967	15,000	26,764	23,8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1,008	1,008	285	285	412	412
우편사업특별회계	832	200	3,710	1,507	4,174	10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621	0	2,327	0	3,464	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282	1,282	7,179	7,179	6,180	6,180
대산지방해양항만청특별회계	0	0	116	0	0	0
교통시설특별회계	0	0	0	0	6,007	6,007
계	31,767	22,708	41,463	25,069	47,669	37,059

자료: 기획재정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수금 계획과 수납 실적간의 연례적인 불일치는 공자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업진행컨설팅 사업¹⁾은 대개도국차관, 민간협력차관, 개발금융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차관지원 및 개발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2017년도 계획액 138억 8,900만원 중 74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90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 사업은 2016년도까지 개도국사업진행컨설팅, 민간협력사업진행컨설팅,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7년도에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사업진행컨설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업진행컨설팅	13,889	13,889	3,433	0	17,322	7,418	9,074	83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7회계연도 이 사업의 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53.4%, 계획현액 대비 42.8%로 부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지급사유 미발생 및 수원국 정부로부터의 F/S²⁾ 지원신청 지연에 따른 F/S용역계약 체결 지연 등을 미집행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에서 비롯되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규모가 2015~2016년 52억원 수준에서 2017년 8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월액이 여전히 과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대외경제협력기금 3332-302

2)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

하게 발생하여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2014~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50%대로 나타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국회도 2016회 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F/S사업의 대형화 및 장기화 추세를 감안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타 과제와 비교할 때 예산집행률의 부진을 타개할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연례적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2017년 사업진행컨설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4	7,230	7,230	654	7,884	4,171	55.7	52.9	3,022	691
2015	11,532	11,532	3,022	14,454	6,583	57.6	45.5	2,655	5,216
2016	12,554	12,554	2,655	15,209	6,505	51.8	42.8	3,433	5,271
2017	13,889	13,889	3,433	17,322	7,418	53.4	42.8	9,074	830

자료: 기획재정부

가. 현 황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을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2009년 1월 신설되어 해외투자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 1월에는 법령 개정으로 투자 대상이 수출입, 중소기업 해외진출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펀드투자 관련 조항의 기간별 변경 현황〕

~2008년 까지	2009.1.~2013.	2014.1 이후
(규정 없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②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해외의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¹⁾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3(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2008년 까지	2009.1.~2013.	2014.1 이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 합투자기구 3. 그 밖에 해외투자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투자기구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 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 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주: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
자원개발의 활성화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법」

상기 법령 조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이후 2018년 4월 현재까지
12개 펀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였는데, 12개 펀드 중 ‘탄소펀드’와 ‘자원개발 1,2호
펀드’의 3개 펀드는 2009년 법 개정이후 투자된 것이며, 나머지 9개의 펀드는 2014
년의 법 개정 이후 투자된 것이다. 전체 12개 펀드에 대한 총 투자 약정금액은 2조
5,966억원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의 투자 약정 금액 2,069억원 중 2018년 4월
까지 963억원(46.5%)을 투자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펀드투자 현황(2018.4)]

(단위: 억원, %)

펀드 명		투자약정			투자집행		결성시점	투자기간	회수기간	집행률 (b/a) (‘18.4. 기준)
		전체 펀드 (A)	수출입 은행 (a)	(비중) (a/A)	전체 펀드	수출입 은행 (b)				
탄소펀드		1,129	169	(15.0)	437	57	2009. 10.	10년 (~2019.10.)	10년 (~2019.10.)	33.7
자원개발1호펀드		5,459	500	(9.2)	3,641	334	2009. 12.	5년 (~2014.12.)	10년 (~2019.12.)	66.8
자원개발2호펀드		1,340	100	(7.5)	300	22	2010. 8.	5년 (~2015.12.)	10년 (~2020.8.)	22.0
2014 중소중견	스틱성장 동력 M&A	2,210	250	(11.3)	1,940	219	2014.12.	4년 (~2018.11.)	8년 (~2022.11.)	87.8
	유니슨 캐피탈	3,075	150	(4.9)	2,250	110	2015. 1.	5년 (~2019.6.)	10년 (~2024.5.)	73.2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500	125	(25.0)	103	26	2015. 4.	4년 (~2019.4.)	8년 (~2023.4.)	20.6

펀드 명	투자약정			투자집행		결성시점	투자기간	회수기간	집행률 (b/a) (‘18.4. 기준)
	전체 펀드 (A)	수출입 은행 (a)	(비중) (a/A)	전체 펀드	수출입 은행 (b)				
KBS-KDB 한류콘텐츠	600	125	(20.8)	203	42	2016. 8.	3년 (~2019.8.)	5년 (~2021.8.)	33.8
스톤브릿지 -하이랜드 헬스케어	1,670	150	(9.0)	434	39	2017. 1.	4년 (~2021.1.)	8년 (~2025.1.)	26.0
2017 중소중견	엔비이글로벌 코리아메자닌	4,806	150 (3.1)	1,211	38	2017. 6.	5년 (~2022.2.)	10년 (~2027.2.)	25.2
	프랙시스 밸류크리에이션	1,827	75 (4.1)	854	35	2017. 6.	4년 (~2021.3.)	8년 (~2025.3.)	46.7
	아주 좋은	2,500	75 (3.0)	1,365	41	2017. 7.	3년 (~2020.6.)	6년 (~2023.6.)	54.6
글로벌인프라벤처	850	200	(23.5)	0	0	2018. 1.	5년 (~2022.9.)	15년 (~2032.9.)	0.0
합 계	25,966	2,069	-	12,738	963	-	-	-	46.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분석의견

한국수출입은행은 집행률이 부진한 펀드투자를 지양하는 등 실제 펀드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펀드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09년 이후 2018년 4월까지 투자를 집행한 12개 펀드 중 투자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투자 종료기간이 1년 미만(2019년 4월까지 투자) 남은 아래 4개 펀드투자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4 중소중견 - 스틱 성장동력 M&A’ 펀드를 제외한 3개의 펀드는 모두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즉, 투자기간이 종료된 자원개발 1, 2호 펀드의 경우에는 모두 집행금액이 약정금액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자원개발 2호펀드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22.0%에 불과하다.²⁾

2)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집행률 저조는 펀드의 설립(2009.12., 2010.8.) 이후 초기 투자시점 대비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가스가격 급락(2014년) 및 가격 변동 지속으로 투자리스크가 높아져 펀드 운용사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데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기간 종료 또는 종료기간 1년 미만 펀드 현황]

(단위: 억원, %, 건)

펀드 명	투자약정			투자집행		결성 시점	투자기간	회수기간	2018.4.기준	
	전체 펀드	수출입 은행	(비중)	전체 펀드	수출입 은행				투자 건수	집행률
자원개발1호펀드	5,459	500	(9.2)	3,641	334	2009. 12	5년 (~2014.12)	10년 (~2019.12)	3	66.8
자원개발2호펀드	1,340	100	(7.5)	300	22	2010. 8	5년 (~2015.12)	10년 (~2020.8)	22	22.0
2014 스틱성장 중소중견 동력 M&A	2,210	250	(11.3)	1,940	219	2014.12	4년 (~2018.11)	8년 (~2022.11)	6	87.8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500	125	(25.0)	103	26	2015. 4	4년 (~2019.4)	8년 (~2023.4)	1	20.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상기 펀드 중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³⁾는 2015년 4월 결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모태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요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병원)의 수출 및 해외투자 사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약정 총액의 60%이상 투자)으로 하고 있다. 상기 펀드는 투자 잔여 기간이 1년(2019년 4월까지)이며, 이후 4년간은 회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8년 4월 말까지 집행률이 20.6%(103억원 투자)에 불과한 상황이다.⁴⁾

3)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개요]

항 목	내 용
펀드 명칭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케이티비 뉴레이크 의료글로벌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
펀드 구조	PEF(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
펀드 규모	500억원
출자자 구성	보건복지부(모태펀드 출자) 100억원 / 한국수출입은행 125억원 /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 KTB 프라이빗 에쿼티(공동운용사) 75억원 외 3개 기관 200억원
펀드 존속 기간	8년(4년 투자·4년 회수, 2년 연장 가능)
주목적 투자대상	국내 의료기관(병원)의 수출 및 해외투자 사업에 대해 투자기간 내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 (※ 주목적 투자 외 투자대상도 보건의료 분야로 한정)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성공적 조성 완료”, 보도자료, 2015.4.30.

4)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동 펀드 운용사는 2018년 5월 현재 검토 중인 3개 프로젝트의 투자 계획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를 감안할 경우 펀드의 집행률은 78%로 상승한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투자 계획에는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주)로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헬스커넥트(주)는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시장 제약 등에 따른 사업부진에 의해 2017년 말

해당 투자 건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80억원의 금액을 아래의 A사⁵⁾에만 투자하였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의 투자 내역]

(단위: 백만원, 주, %)

구분	투자회사	종류	투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2016	A사	우선주	3,000	222,222	22.34
2017	A사	우선주	5,000	172,473	17.34
합계			8,000	394,696	39.68

자료: 케이티비 뉴레이크 의료글로벌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설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⁶⁾에 따르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은 진출국가의 상황, 특수한 의료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존재⁷⁾하여 적정 투자처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투자 집행률은 부진함에도 관련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약정금액의 1.9%를 펀드에 관리보수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는 출자 납입금액의 0.01%를 수탁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상기 펀드의 2015년 설정 이후 2017년까지 관리보수 및 수탁보수로 지급된 금액은 총 21억원 규모이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의 관리보수 및 수탁보수 지급액]

(단위: 천원)

구분	지급 대상	보수지급기준	2015	2016	2017	합계
관리보수	펀드에 지급	투자약정액의 1.9%	546,575	880,437	639,753	2,066,765
수탁보수	수탁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출자납입금액의 0.01%	0	70	498	568
합계			546,575	880,507	640,251	2,067,333

주: 2016년과 2017년 관리보수는 펀드 운용사의 운용인력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패널티로 일부 삭감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현재 누적결손금 257억원으로 2011년 12월 설립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헬스케어(주)의 2017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는 누적된 결손금의 규모와 증가추이 등을 고려할 때, 향후의 지속적인 기업 유지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서울대학교병원 자회사 및 인재원 운영상의 문제점” 참조)

5) A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의료정보제공 및 의료기기 도소매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등 해외 병원 등의 인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당기순이익은 8억원 규모이며, 자본총계는 126억 7,600만원으로, 상기 펀드투자 등에 힘입어 2014년 자본총계 24억 5,200만원 대비 102억 2,400만원 증가하였다.

6) 보건복지부,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성공적 조성 완료”, 보도자료, 2015.4.30.

7) 보건복지부, “6월 2일자 서울경제, “복지부 출자펀드 ‘복지부동’ ... 2년째 개점휴업”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해명자료, 2017.6.

펀드투자와 관련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규정의 2009년 개정 이후 투자된 3건의 펀드투자 현황을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상기 펀드는 집행률이 부진한 것 외에도 수익률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들 펀드에 대하여 2017년 말까지 총 413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자원개발 1, 2호 펀드는 투자기간이 종료되었으며, 탄소펀드는 투자기간이 2019년 10월까지로, 각각의 투자금액 회수기간은 2019년과 2020년까지이다. 그런데, 이들 펀드의 2017년 12월 말 현재 평가 손익을 살펴보면, 전체 펀드 약정 금액 7,928억원 중 실제 투자된 4,378억원에 대하여 탄소펀드와 자원개발 1호 펀드, 2호 펀드의 평가금액은 각각 165억원과 115억원, 212억원으로, 이들의 누적 평가손실은 각각 272억원과 3,526억원, 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해당 평가손실의 투자액 대비 비율은 각각 62.2%와 96.8%, 29.3%로, 전체적으로는 3,886억원(88.8%)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009년 법 개정 이후 투자된 3건 펀드투자의 펀드 평가손익 현황(2017.12.)]

(단위: 억원, %)

펀드 명	투자기간	회수기간	수은 투자금액	전체 펀드 내역					
				총 약정금액 (a)	투자집행 (b)	(집행률) (b/a)	평가금액 (2017.12) (c)	누적 평가손익 (d=c-b)	평가 손익률 (d/b)
탄소펀드	10년 (~2019.10)	10년 (~2019.10)	57	1,129	437	(38.7)	165	△272	△62.2
자원개발1호펀드	5년 (~2014.12)	10년 (~2019.12)	334	5,459	3,641	(66.7)	115	△3,526	△96.8
자원개발2호펀드	5년 (~2015.12)	10년 (~2020.8)	22	1,340	300	(22.4)	212	△88	△29.3
합계			413	7,928	4,378	(55.2)	492	△3,886	△88.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법령개정에 따라 투자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펀드 투자 확대는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 등이 필요한 분야로의 정책적 지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집행률이 부진한 펀드투자를 지양하는 등 실제 펀드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펀드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2005년 7월 1일 설립되어 2006년 11월부터 투자업무를 개시하였다. 한국투자공사의 설립목적은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¹⁾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7월 설립 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출자 받았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총 위탁자산 규모는 1,000.4억달러이다. 이 중 기획재정부의 위탁자산이 750.4억달러로 전체의 7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공사 설립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27.1~100억 달러를 꾸준히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 자산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위탁자산은 250억 달러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 위탁 현황]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획재정부	연도별 위탁액	0.0	27.1	50.6	41.0	46.5	50.0	85.2	100.0	100.0	100.0	50.0
	누적 위탁액	0.0	27.1	77.7	118.7	165.2	215.2	300.4	400.4	500.4	600.4	750.4
	(비중)	0.0	(18.3)	(31.4)	(41.1)	(49.3)	(51.8)	(60.0)	(66.7)	(71.4)	(75.0)	(75.0)
한국은행	연도별 위탁액	10	111	49	0	0	30	0	0	0	50	0
	누적 위탁액	10	121	170	170	170	200	200	200	200	250	250
	(비중)	(100.0)	(81.7)	(68.6)	(58.9)	(50.7)	(48.2)	(40.0)	(33.3)	(28.6)	(25.0)	(25.0)
계	연도별 위탁액	10.0	138.1	99.6	41.0	46.5	80.0	85.2	100.0	100.0	150.0	50.0
	누적 위탁액	10.0	148.1	247.7	288.7	335.2	415.2	500.4	600.4	700.4	850.4	1,000.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위탁 원금 기준이며, 계약 기준이 아닌 실제 수령 받은 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2006년 최초 투자 이후 2017년까지 연간(연환산) 4.27%의 수익률을 실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 2,28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해당 수수료 수익은 위탁자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06년 2억원에서 2017년 2,00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에 대한 연도별 총자산 수익률 및 수수료 수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운용수익률	0.7	7.3	△17.7	17.3	8.0	△4.2	11.5	8.9	3.8	△3.2	4.2	16.3	4.27
수수료 수익	2	128	396	820	745	823	1,015	1,338	1,804	1,557	1,650	2,006	12,284

주: 1. 상기 한국투자공사 위탁 총자산 운용수익률은 한국투자공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용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수익률임

2. 상기 운용수익률 '합계'는 2006년 최초 투자 이후 2017년까지의 연환산 수익률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상기와 같은 수수료 수익의 증가 등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51억원의 손실에서 2017년 333억원 이익으로 385억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누계에서 외부 배당을 제외한 이익잉여금 잔액은 2006년 71억원 손실에서 2017년 1,255억원으로 1,326억원 증가하였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단위: 억원)

구 분	2006 (a)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	증감 (b-a)
당기순이익	△51	△31	102	279	163	161	192	247	514	187	220	333	385
이익잉여금	△71	△102	△144	279	386	514	640	810	1,200	1,027	1,098	1,255	1,326

자료: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수수료 수익의 증가에 따라 한국투자공사가 기관 내에 보유하는 고유계정의 금융자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은 2006년 887억원에서 2017년 2,049억원으로 1,162억원 증가하였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고유계정 금융자산]

(단위: 억원)

구 분	2006 (a)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	증감 (b-a)
현금 및 예치금(A)	887	730	743	704	1,151	1,401	1,497	1,176	1,357	1,341	1,469	1,567	680
유가증권(B)	0	104	180	215	0	0	0	332	276	438	434	482	482
합 계(A+B)	887	834	923	919	1,151	1,401	1,497	1,508	1,633	1,779	1,903	2,049	1,162

자료: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과도한 고유자산 적립의 필요성이 낮으며, 적정규모 이상의 고유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의 배당 확대 등 고유계정 금융자산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운용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안정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년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① 이월손실금의 보전,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③ 국고에의 납입, ④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의 순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공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연간 19억원에서 167억원의 임의적립금을 꾸준히 적립해 왔으며, 2015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의 80%를 한국투자공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에 배당하고 있음에도 연간 19억원에서 33억원의 임의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이익발생액 및 처분액]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당기순이익	102	279	163	161	192	247	514	187	220	333
잉여금 처분	102	279	163	161	190	248	513	187	220	333
1.이월결손금 보전	102	0	0	0	0	0	0	0	0	0
2.이익준비금 적립	0	56	33	16	19	25	51	19	22	33
3. 외국환평형기금 배당	0	56	33	65	77	124	360	150	176	267
(배당성향)	(0.0)	(20.0)	(20.2)	(40.4)	(40.0)	(50.1)	(70.1)	(80.0)	(80.0)	(80.0)
4.임의적립금 적립	0	167	97	80	94	99	102	19	22	33

주: 배당성향 = 배당금 ÷ 당기순이익

자료: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성

이와 같은 이익금의 내부 적립은 한국투자공사 고유계정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 시에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1,00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 말에는 고유계정 금융자산 잔액이 2,049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앞의 표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고유계정 금융자산] 참조). 한국투자공사는 해당 고유계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²⁾ 및 한국투자공사 「고유자산운용규정」, 「고유자산운용세칙」에 의해 운용하고 있으며, 「고유자산운용규정」 제3조³⁾에 따르면, 고유자산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추구 위주로 고유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즉, 한국투자공사는 아래 표 [2017년 한국투자공사 고유계정 금융자산 운용 세부내역]에서와 같이 2017년 말 현재로 연간 0.1~2.24%의 이자를 수취하는 현금 및 예치금 등에 1,567억원의 고유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 등의 유가증권에 482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2)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¹⁾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의 매매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4.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3) 「한국투자공사 고유자산운용규정」

제3조(운용 원칙) ①고유자산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고유자산 운용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고유자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산과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7년 한국투자공사 고유계정 금융자산 운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2017
현금 및 예치금 (a)	MMDA (중소기업은행)	0.10~0.30	60
	MMT (KB증권 외)	1.49~1.90	7,109
	MMW (NH투자증권)	1.95	5,000
	원화보통예금 (중소기업은행 외)	0.1	48
	외화보통예금 (중소기업은행 외)	0.00~0.04	3,517
	원화정기예금 (하나은행 외)	1.73~2.24	74,000
	양도성예금증서 (우리은행)	1.70~1.79	67,000
	소계		156,734
유가 증권 (b)	이지스사모부동산 투자신탁 43호	-	26,888
	KB증권 제2017-440회 파생결합사채	-	4,912
	케이리얼티제6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6,414
	소계		48,214
합계 (a+b)			204,948

자료: 한국투자공사 2017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투자공사는 매년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히 임의준비금 등을 과다하게 고유자산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는 주로 외국환평형기금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인건비 등의 기관 운영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다시 한국투자공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외국환평형기금으로의 배당 확대를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상환 재원으로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투자공사는 고유계정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외국환평형기금으로의 적극적인 배당 확대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다한 고유자산 적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⁴⁾

4)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투자공사는 그 간 배당성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향후 위탁자산 확대에 따른 투자시스템 고도화 등 투자 시 소요재원 마련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현 황

한국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내 은행권용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¹⁾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 노후시설 보완 필요성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에 면펄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0년 한국조폐공사와 (주)포스코대우(舊(주)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회사(Global Komsco Daewoo (“GKD”))를 설립한 후 현지 면펄프공장²⁾을 인수하였다.³⁾ 현지 회사인 GKD의 설립개요 및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GKD 설립개요 및 추진경과]

	내 용	
법인명	Global Komsco Daewoo (“GKD”)	
설립지역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양기울)	
지분구조	한국조폐공사 65%, (주)포스코대우(舊(주)대우인터내셔널) 35%	
설립일자	2010.9.13.	
주요제품	면펄프 (은행용, 화학용, 라يو셀 등)	
추진경과	2010.7.	한국컨소시엄,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성 간 투자협정서 체결
	2010.8.	본 사업과 관련한 우즈벡 대통령령(특혜보장) 공포
	2010.9.13.	GLOBAL KOMSCO DAEWOO 현지 법인 인가
	2010.12.9.	생산시설 인수 완료
	2011.2.~8.	현지 생산시설 보완 공사
	2011.8.26.	현지 생산시설 보완공사 준공
	2011.11.~	제품 생산

자료: 한국조폐공사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 1)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용지의 원재료인 면펄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중국의 산업 발달로 원자재의 중국 자체소요가 증가하여 원자재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2) 폐업상태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코코지사 양기울공장의 기계 등을 포함한 자산인수를 실시하였다.
- 3) 한국조폐공사는 생산시설 운영(인사, 생산, 기술, 품질 등)기술을, (주)포스코대우(舊(주)대우인터내셔널)은 영업 및 관리(법률, 회계 재무 등)기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GKD는 2012년 223만 7,000달러의 영업손실과 613만 6,000달러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2013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라 2017년에는 매출액 2,327만 4,000달러, 영업이익 343만 4,000달러, 당기순이익 207만 4,000달러를 실현하였다. 2017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12년 대비 각각 1,518만 5,000달러와 821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GKD 재무현황]

(단위: 천 USD)

구 분	2012(a)	2013	2014	2015	2016	2017(b)	증감액 (b-a)
매 출 액	8,089	13,825	10,098	13,176	18,061	23,274	15,185
영업이익	△2,237	547	1,018	1,810	2,411	3,434	5,671
당기순이익	△6,136	△421	222	783	1,109	2,074	8,210

자료: 한국조폐공사

나. 분석의견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 기준 자회사 GKD 면필프 매출액의 56%를 외부 판매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GKD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조폐공사 관련 사업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조폐공사는 GKD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GKD의 면필프 매출은 GKD 직접판매와 한국조폐공사로의 매출로 이루어진다. 한국조폐공사는 GKD로부터 면필프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지폐 등의 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외부로 판매⁴⁾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외부판매를 위해 GKD로부터 구입하는 면필프는 2013년 48만 7,000달러에서 2017년 1,306만달러로 1,257만 4천달러 증가하였으며, GKD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5%에서 2017년 56.1%로 동 기간 동안 52.6%p 증가하였다.

4) 한국조폐공사는 2012년부터 GKD유희 생산시설의 가동을 제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GKD로부터 면필프를 수입하여 재 판매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2012년 4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GKD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필프 판매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GKD 연도별 매출 세부내역]

(단위: 천 USD, %, %p)

		2013 (A)	(비중) (a)	2014	(비중)	2015	(비중)	2016	(비중)	2017 (B)	(비중) (b)	증감 (B-A) (b-a)	
GKD 직접판매		4,773	(34.5)	2,462	(24.4)	2,931	(22.2)	4,114	(22.8)	6,777	(29.1)	2,004	(△5.4)
한국 조폐공사 구입	자체사용	8,565	(62.0)	4,877	(48.3)	4,486	(34.0)	4,952	(27.4)	3,437	(14.8)	△5,128	(△47.2)
	외부판매	487	(3.5)	2,759	(27.3)	5,759	(43.7)	8,994	(49.8)	13,060	(56.1)	12,574	(52.6)
합 계		13,825	(100.0)	10,098	(100.0)	13,176	(100.0)	18,061	(100.0)	23,275	(100.0)	9,450	-

자료: 한국조폐공사

그런데 한국조폐공사가 GKD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면필프의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 및 구입단가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톤당 평균 구입단가에서 판매단가를 차감한 톤당 이익이 63달러로 판매단가 대비 이익률이 3.3%였으나, 2017년도에는 톤당 이익이 34달러로 낮아졌으며, 이익률 또한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조폐공사가 GKD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면필프의 연도별 톤당 평균 판매단가 및 구입단가]

(단위: USD/ton,%)

	2014	2015	2016	2017
평균 판매단가 (a)	1,906	1,631	1,544	1,698
평균 구입단가 (b)	1,843	1,587	1,500	1,664
이익 (c=a-b)	63	44	44	34
이익률 (c/a)	3.3	2.7	2.8	2.0

주: 전체 면필프의 평균 단가(연도별 총 매출액 ÷ 연도별 총 매출 수량)임

자료: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GKD로부터 면필프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간 9,300만원에서 5억 7,200만원의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간 해당 사업의 총 매출액은 399억 2,000만원이며, GKD로부터 구입한 면필프 가격인 매출원가가 389억 2,500만원 발생하여 9억 9,500만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동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7년간 해당 사업에서는 인건비 18억 7,300만원을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22억 8,000만원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총 12억 8,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한국조폐공사가 GKD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면필프 사업의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합계 (2014~2017)
매출액 (a)	3,372	7,724	12,132	16,692	39,920
매출원가 (b)	3,260	7,518	11,789	16,358	38,925
매출총이익(c=a-b)	112	206	343	334	995
판매비와 관리비(d)	205	778	759	538	2,280
인건비	144	700	579	450	1,873
기타	61	78	180	88	407
영업이익(c-d)	△93	△572	△416	△204	△1,285

주: 2014년 10월부터 한국조폐공사에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의 재무현황 자료를 사용함

자료: 한국조폐공사

설립 이후 2017년 말까지 한국조폐공사는 GKD에 3명에서 5명의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인력 중 1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부담하였다. 반면, (주)포스코대우가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는 모두 GKD에서 부담하여 왔다.⁵⁾

[한국조폐공사와 (주)포스코대우의 GKD 파견 인력 및 인건비 부담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설립~2012.12.		2013.1.~2013.9.		2013.10.~2015.12.		2016.1.~2017.12.	
		조폐공사 파견	포스코대우 파견	조폐공사 파견	포스코대우 파견	조폐공사 파견	포스코대우 파견	조폐공사 파견	포스코대우 파견
인 력 수	GKD 부담	1	1	1	1	1	0	1	0
	조폐공사 부담	4	0	2	0	3	0	2	0
	포스코대우 부담	0	0	0	0	0	0	0	0
	합계	5	1	3	1	4	0	3	0
인 건 비	GKD 부담	925	1,121	393	133	724	0	680	0
	조폐공사 부담	624	0	247	0	442	0	353	0
	포스코대우 부담	0	0	0	0	0	0	0	0
	합계	1,549	1,121	640	133	1,166	0	1,033	0

주: (주)포스코대우는 2010년 11월 포스코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편입되었으며, 2016년 3월 사명을

'(주)대우인터내셔널'에서 '(주)포스코대우'로 변경함

자료: 한국조폐공사

5)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GKD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GKD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상기와 같이 한국조폐공사가 GKD로부터 면필프 구입 시 관련 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한 적정가 보다 높은 단가로 구매하거나 관련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지분을 100%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조폐공사 지분 65%인 GKD의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실제로 한국조폐공사의 관련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조폐공사는 자회사인 GKD관련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회사 GKD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693억 1,300만원이며, 4조 8,835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0.3%인 9,910억 1,200만원을 수납하고 3조 5,308억 5,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616억 6,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국세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61,740	1,061,740	1,061,740	4,883,539	991,012	3,530,859	361,668	20.3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	7,573	7,573	7,573	0	0	0	0	-
합계	1,069,313	1,069,313	1,069,313	4,883,539	991,012	3,530,859	361,668	20.3

자료: 국세청

2017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6,105억 1,500만원이며, 이 중 98.9%인 1조 5,926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6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국세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10,207	1,610,207	1,610,515	1,592,674	152	17,689	98.9

자료: 국세청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국세청의 자산은 20조 5,621억 7,000만원, 부채는 16조 4,035억 3,400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1,586억 3,6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5,685억 700만원(2.8%)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6조 837억 1,700만원, 일반유형자산 2조 5,689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미수체제금 수익 2,236억 1,500만원 및 장기미수국세 3,639억 1,5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1,734억 9,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3,187억 3,100만원(2.0%)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14조 7,722억 2,700만원, 장기충당부채 1조 5,909억 7,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수수익 1,495억 7,100만원 증가, 미지급국세 1,108억 7,3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2,583억 1,800만원 증가, 소송충당부채 577억 6,2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0,562,170	19,993,663	568,507	2.8
Ⅰ. 유동자산	16,083,717	15,910,226	173,491	1.1
Ⅱ. 일반유형자산	2,568,920	2,513,128	55,792	2.2
Ⅲ. 무형자산	75,987	99,782	△23,795	△23.8
Ⅳ. 기타비유동자산	1,833,546	1,470,527	363,019	24.7
부 채	16,403,534	16,084,803	318,731	2.0
Ⅰ. 유동부채	14,772,227	14,513,909	258,318	1.8
Ⅱ. 장기차입부채	40,337	37,686	2,651	7.0
Ⅲ. 장기충당부채	1,590,970	1,533,208	57,762	3.8
순 자 산	4,158,636	3,908,860	249,776	6.4
Ⅰ. 기본순자산	1,843,247	1,843,247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386,861	1,138,485	248,376	21.8
Ⅲ. 순자산 조정	928,528	927,129	1,399	0.2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2,929억 7,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284억 9,3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5,666억 7,500만원, 비배분비용 5,192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억 9,600만원, 비배분수익 207억 6,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417억 9,300만원(5.8%) 감소한 2조 2,929억 7,700만원이며, 이는 대손상각비 889억 7,400만원 감소 및 자산재평가손실 1,486억 3,900만원 감소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2,357억 2,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탈세대응강화(1,554억 6,200만원), 체납·징수관리 프로그램(509억 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1,148억 8,600만원과 복리후생비 1,917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5,165억 4,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27,796	203,108	24,688	12.2
가. 프로그램 총원가	228,493	203,787	24,706	12.1
나. 프로그램 수익	696	679	17	2.5
II. 관리운영비	1,566,675	1,515,443	51,232	3.4
III. 비배분비용	519,275	754,998	△235,723	△31.2
IV. 비배분수익	20,769	38,779	△18,010	△46.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292,977	2,434,770	△41,793	△5.8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292,977	2,434,770	△141,793	△5.8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3조 9,088억 6,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1,586억 3,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497억 7,600만원(6.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조 2,929억 7,7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4억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조 5,413억 5,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3조 5,330억 2,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9,910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국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908,860	3,604,375	304,485	8.4
II. 재정운영결과	2,292,977	2,434,770	△141,793	△5.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541,353	2,492,185	49,168	2.0
IV. 조정항목	1,400	247,070	△245,670	△99.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158,636	3,908,860	249,776	6.4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 ②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 등이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비중이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여 카드 제작 비용의 10%인 2,200만원이 감액(38억 4,200만원→38억 2,000만원)되었고,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집행실적이 없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10%인 500만원이 감액(23억 4,600만원→23억 4,100만원)되었다.¹⁾

1)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국세청은 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②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③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한 대응**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④ 실질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실질적 소통과 개혁 추진**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급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청 및 세무서 단위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및 심의 안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세고지서 발송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과도한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세입 편성의 정확성 및 수납률 제고 필요

가. 현 황

재산수입 중 토지대여료¹⁾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2017년 예산은 1억 1,3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다.

경상이전수입 중 과태료²⁾는 소관 법령에 의한 명령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된다. 2017년 예산은 758억 8,600만원이었으나, 1,984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9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목명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							
재산수입	274	274	274	161	161	0	0	58.8	100.0
토지대여료	113	113	113	3	3	0	0	2.7	100.0
경상이전수입	1,040,064	1,040,064	1,040,064	4,859,853	973,348	3,525,423	361,082	93.6	20.0
과태료	75,886	75,886	75,886	198,429	92,968	52,738	52,723	122.5	46.9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이 불가능한 내역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토지대여료는 당초 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7%인 300만원만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51-511

2) 코드명: 일반회계 56-563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로 인계된 구(舊) 제주청사 토지의 임대료가 제외되지 않고 반영되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7년 초 제주세무서가 제주합동청사에 입주한 후, 구(舊) 청사를 제주시에 임대하여 이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 기획재정부가 제주세무서 구청사를 ‘제주통합관사’로 기금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여 인계요청을 하였고, 국세청은 동 청사를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용도를 폐지하여,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에 청사를 인계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도 토지대여료 수입에 구(舊) 청사 임대료를 계상하지 않고,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는 점에서, 2017년도 예산 편성 당시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토지대여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							
2015	110	110	110	114	114	0	0	103.6	100.0
2016	1	1	1	2	2	0	0	200.0	100.0
2017	113	113	113	3	3	0	0	2.7	100.0

자료: 국세청

향후에 국세청은 수납이 불가능한 내역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은 과태료의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에 의한 명령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고 있다. 2017년에는 8개의 범칙조항³⁾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상의 현금영수증 발

3)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범칙조항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6조(금품 수수 및 공여), 「조세범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불이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의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90.8%, 수납액의 85.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과태료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22.5%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6.9%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최근 5년 간 과태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							
2013	17,997	17,997	17,997	118,011	85,819	32,192	0	476.9	72.7
2014	84,129	84,129	84,129	151,302	98,244	42,270	10,788	116.8	64.9
2015	97,155	97,155	97,155	145,147	64,596	76,628	3,923	66.5	44.5
2016	97,699	97,699	97,699	279,040	82,839	49,953	146,248	84.8	29.7
2017	75,886	75,886	75,886	198,429	92,968	52,738	52,723	122.5	46.9

자료: 국세청

미수납액 527억 3,800만원 중 납기 미도래액인 106억 9,500만원을 제외하면 79.7%가 징수유예 혹은 체납정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정리 중인 체납액의 경우 대부분 무재산인 상황으로 소득 및 재산취득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과태료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징수유예 ¹⁾	납기미도래 ²⁾	정리유예 ³⁾	체납정리 진행
금액	52,738	2,024	10,695	0	40,019
비율	100.0	3.8	20.3	0.0	75.9

주: 1)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

2)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미수납액

3) 공매의뢰, 불복청구,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체납정리 유예

자료: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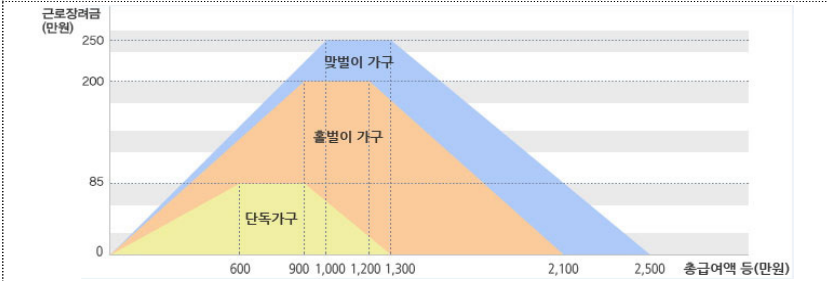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소득세법」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불이행)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과태료 체납액의 증가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세수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세청은 미수납액 회수를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세금환급형태로 일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대상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2017년도에는 165만 5천 가구가 1조 1,967억원을 지원받았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수급요건	세 부 내 용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30세 이상(단독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85만원
	홀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2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250만원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자료: 국세청

또한, 2015년부터는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이 도입되었다. 2017년도에는 106만 2천 가구가 5,637억원을 지원받았다.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

수급요건	세 부 내 용		
가구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최대 지급액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자료: 국세청

[연도별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천가구, 억원)

구분	합계		근로		자녀		근로·자녀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근로)	금액 (자녀)
	(A=B+C)		(B)		(C)		(D)		
'15	2,357	17,145	1,282	10,566	1,075	6,579	573	5,346	4,124
'16	2,383	16,274	1,439	10,574	944	5,700	506	4,677	3,584
'17	2,717	17,604	1,655	11,967	1,062	5,637	466	4,551	3,216

주: D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임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급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속적인 지급요건의 완화 또는 지급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시행연도	주요 내용
2009	(1) 대상: 근로소득자 (2) 총소득: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3)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4) 주택: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의 1주택 (5) 재산: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직전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제외
2012	(대상자 추가) 무자녀 가구 추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상에 추가 (주택요건 완화) 주택가격 5천만원→6천만원 이하 (지급기준 변경) 부양자녀수(0~3인)에 따른 소득요건·지급수준 차등화 소득요건: 1300~2500만원, 지급액: 70~200만원
2013	(대상자 추가) 60세이상 단독가구
2014	(지급기준 변경) 소득 및 급여 기준 변경: 자녀수→가구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 단위 소득요건: 1,300/2,100/2,500만원 미만, 지급액: 70/170/210만원
2015	(대상자 추가):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규정 삭제 (주택요건 완화): 주택가격기준 삭제 (재산요건 완화): 1억 미만→1.4억 미만
2016	(대상자 추가)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50세 이상)
2017	(대상자 추가)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40세 이상) (지급액 인상) 70/170/210만원→77/185/230만원
2018	(대상자 추가)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30세 이상)기준 폐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적용 (지급기준 완화) 70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의 홀벌이 가구 인정 (지급액 인상) 77/185/230만원→85/200/25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그러나 대상자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 제도가 변경되고 있음에도, 대상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17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대상 확대를 “몰랐다”는 답변이 91.9%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청요건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다” 또는 “몰랐다”는 답변이 39.0%로 정확하게 요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근로·자녀장려금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2015	2016	2017
수급대상 확대 인지도	▶ 잘 알고 있었다	8.0	2.2	2.3
	▶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	3.3	2.6
	▶ 들어본 적이 있었다	7.3	4.0	3.2
	▶ 몰랐다	84.7	90.5	91.9
신청요건에 대한 인지도	▶ 잘 알고 있었다(스스로 판단 가능)	17.4	23.9	25.3
	▶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41.7	39.8	35.7
	▶ 들어본 적이 있었다	-	12.2	12.5
	▶ 몰랐다	40.9	24.1	26.5

자료: 국세청

또한,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중 신청 후 심사 결과 지급제외된 가구 수는 53만 8,000가구로, 전체 신청가구의 16.5%로 나타났다. 신청 후 지급제외되는 경우,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관리·행정비용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요건 완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하여 지급제외가 되거나 지급 대상자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세청은 2017년부터 가구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장려금 신청대상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을 제공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전에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청과 세무서,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수당 등 운영 비용은 각 지방청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총 4억 290만원의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수당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서울청	125	125	100.0
중부청	131	131	100.0
대전청	30.8	30.8	100.0
광주청	34.4	34.4	100.0
대구청	34.4	34.4	100.0
부산청	47.3	47.3	100.0
합 계	402.9	402.9	100.0

자료: 국세청

세무서 및 지방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일 내에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¹⁾²⁾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나. 분석의견

지방청 및 세무서 단위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지방청 당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14.5회이며, 지방세무서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3.4회로, 2016년에 대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2016~2017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회, 개, 일)

연도	구분	지방청	세무서(121개)			계
			소계	1·2군	3군	
2016	연간 개최횟수	109	434	403	31	543
	관서수	6	121	97	24	127
	평균 개최횟수	18	3.6	4	2	4.3
	평균 처리 기간	8	15	15	11	10
2017	연간 개최횟수	87	422	405	17	509
	관서수	6	121	97	24	127
	평균 개최횟수	14.5	3.4	4.2	0.7	4.0
	평균 처리 기간	8	15	15	13	11

자료: 국세청

또한, 2012년 이후 최근까지의 지방청 및 소관 세무서의 지역별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현황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지역에서 개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개최 횟수도 2012년 808회에서 2017년 509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본청은 2017년 12월 「국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2012년~2017년 지역별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808	768	733	674	543	509
서울청	290	273	232	231	180	172
중부청	269	285	250	218	180	186
대전청	71	62	78	75	60	50
광주청	53	50	36	26	18	20
대구청	35	20	47	44	38	31
부산청	90	78	90	80	67	50

자료: 국세청

그러나 원칙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³⁾ 이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지방청 단위에서도 월평균 1.2회 정도 개최한 것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 수요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건 건수 및 시정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7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 및 시정 현황]

(단위: 건)

연도	심의요청			시정		
	합 계	고충민원 등	권리보호	합 계	고충민원 등	권리보호
2015	606	570	36	298	276	22
2016	469	419	50	240	221	19
2017	429	343	86	197	167	30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고충민원의 경우 직권시정 등 자체해결 노력에 의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본청 신설 및 심의대상 확대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조(운영)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충된 만큼 납세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향후 납세자들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이를 통해 납세자가 확대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고지서 발송 사업의 연례적 이용 발생 및 사업 통합 필요

가. 현 황

납세고지서 등 발송¹⁾ 사업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송달을 위한 사업이다. 2017년 예산은 387억 3,100만원이나 46억 6,7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현액은 433억 9,800만원이며, 이 중 433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²⁾ 사업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납세고지서 송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7년 예산은 6억 6,600만원이었으나 1억 4,0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현액 8억 600만원 중 8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지서 발송 관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납세고지서 등 발송	38,731	38,731	0	4,667	43,398	43,386	0	12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666	666	0	140	806	805	0	1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세고지서 발송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과도한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2233-300

2) 코드명: 일반회계 1133-302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공공요금 부족으로 이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우편물 발송량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족해진 공공요금을 위해 46억 6,700만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에서도 2016년에 이어 2017년 납세인원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1억 4,000만원의 부족분을 이용하여 집행하였다.

[최근 5년간 고지서 발송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납세고지서 등 발송	2013	30,086	30,086	2,112	32,198	32,177	106.9	21
	2014	32,000	32,000	4,204	36,204	36,201	113.1	3
	2015	37,178	37,178	0	37,178	37,156	99.9	22
	2016	37,178	37,178	3,451	40,629	40,569	109.1	60
	2017	38,731	38,731	4,667	43,398	43,386	112.0	12
종합부동산세 운영 지원	2015	603	603	0	603	587	97.3	16
	2016	573	573	178	751	703	122.7	48
	2017	666	666	140	806	805	120.9	1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우편요금의 인상 및 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이 예산 대비 부족하였다는 입장이다. 2017년에 우편요금의 인상 등 예측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공요금의 경우 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전용이 발생하여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송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통한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국세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납세고지서 발송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불필요한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의 정확성 제고를 목표로 별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 10년 이상이 지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업무가 안정화되었다는 점

에서 이를 다른 국세와 달리 운영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비 집행액 8억 500만원 중 91.3%인 7억 3,500만원이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때, 행정업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 통합합 필요”를 시정요구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예산 편성 내역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창봉투 등 인쇄비: 104백만원 - 창봉투·납부안내문(400,000부×62원) = 25백만원 - 합산배제 안내문·창봉투(230,000부×77원) = 18백만원 - 종부세 실무해설책자(4,000부×4,274원) = 17백만원 - 기타 홍보물·동영상 등 제작: 44백만원	104	104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고지서 발송비): 553백만원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정기분) 및 납부안내문 등 발송비 (1,872원*280,000부) = 524백만원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수시분) 발송비(1,930원*15,000부) = 29만원	553	693
사업추진비	·관계부처 실무자 정례협의회 등 관련비용: 9백만원	8	8
합계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예산: 806백만원	666	805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¹⁾ 사업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지속 추진·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 예산은 38억 2,000만원으로, 34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3,820	3,820	0	0	3,820	3,433	0	387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이용률을 고려하여 제작 수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동 사업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2만매를 제작하여 89만 5,000매를 보급하였다. 전용카드의 2017년 말 재고량은 당해연도 제작 수량의 48.0%인 44만 2,000매로, 매년 필요 수량에 대비하여 많은 양이 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 및 보급수량]

(단위: 천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년도 재고	375	347	230	349	417
제작 수량	1,095	1,255	1,233	1,225	920
보급 수량	1,123	1,372	1,114	1,157	895
해당연도 재고	347	230	349	417	442

자료: 국세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0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외의 다양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별 발급액 현황을 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액의 비율이 2013년 5.4%에서 2017년 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핸드폰이나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타 발급수단의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수단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	구분	합계	핸드폰	전용카드	기타카드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2013	금액	85,515	56,098	4,633	1,407	18,597	4,780
	비율	100.0	65.6	5.4	1.6	21.7	5.6
2014	금액	91,947	62,453	4,333	1,312	18,289	5,560
	비율	100.0	67.9	4.7	1.4	19.9	6.0
2015	금액	96,556	69,841	3,967	779	15,844	6,125
	비율	100.0	72.3	4.1	0.8	16.4	6.3
2016	금액	101,258	73,617	3,126	601	16,848	7,066
	비율	100.0	72.7	3.1	0.6	16.6	7.0
2017	금액	107,827	78,131	2,589	573	18,935	7,599
	비율	100.0	72.5	2.4	0.5	17.6	7.0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소비자용 카드와 지출증빙을 위한 사업자용 카드로 발급목적이 구분되는데, 2017년부터는 재고과약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하고 불필요한 신청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용 카드를 다수 신청하는 경우 필요수량을 확인 후 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결과 발급 건수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²⁾

실제로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액 비율은 2013년 20.3%에서 2017년 11.8%까지 감소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매수는 (15년) 69만 3,000매 → (16년) 82만 4,000매 → (17년) 52만 3,000매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십억원, %)

구 분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금액	7,140	7,937	8,609	9,276	9,81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용카드	금액	1,447	1,540	1,538	1,304	1,161
	비율	20.3	19.4	17.9	14.1	11.8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4,951	5,560	6,243	7,065	7,693
	비율	69.3	70.1	72.5	76.2	78.4
그 외	금액	742	837	828	907	960
	비율	10.4	10.5	9.6	9.7	9.7

자료: 국세청

이러한 추세와 국세청의 카드 발급 관리 강화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급 매수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사업¹⁾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납세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 32억 7,200만원 중 32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272	3,272	0	0	3,272	3,271	0	1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홍보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예산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세금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뿐 아니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된 홍보비 예산을 함께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된 홍보비 예산은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3132-300

[2017년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용	집행액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동영상, 웹툰 제작,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운영, 라디오 홍보 등	76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리플릿, 포스터, 알림톡 사용료 등	27

자료: 국세청

그러나 ①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사업은 납세정보의 제공이 목적인 사업이므로 세금과 무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홍보 예산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 세부사업의 시행 주체 역시 취업후학자금의 경우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은 징세법무국 소관으로,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상금 지급을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하고 있으나, 포상금(310-03목)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참여 및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 뿐 아니라, 기본경비 등을 통해서 각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통해 일부 작품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현상모집(懸賞募集)의 상금”은 포상금(310-03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금을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2017년도 공모전 상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세목	내용	지급액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일반수용비	30초 영화제 공모전 상금 지급	10,000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수상자 상금	20,400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기공 모전 입상자 상금	5,000
	일반수용비	제2회 국세행정발전 논문공모전 수상자 상금	14,500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시행하는 경우, 그 상금을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¹⁾에 따라 탈세·은닉재산·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²⁾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압류재산공매³⁾ 사업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13억 6,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7회계연도 포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압류재산공매	5,000	5,000	0	591	5,591	5,587	0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774	774	0	591	1,365	1,365	0	0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과소 편성되어 연례적으로 이용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예산은 7억 7,400만원이었으나 5억 9,100만원을 이용하여 176.3%인 1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016년에도 5억 1,1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액 대비 239.7%인 8억 3,9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지속적인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1131-300), 탈세제보포상금, 차명계좌포상금은 조사활동지원 사업(2131-302),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사업(7111-255)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다.

3) 코드명: 일반회계 2232-301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5	350	350	0	501	851	851	0	0
2016	350	350	0	511	861	839	0	22
2017	774	774	0	591	1,365	1,365	0	0

주: 2014년 이전에는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내에서 편성 및 집행됨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률 인상⁴⁾ 및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보 및 지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건수 및 건당 평균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건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급액	48	226	851	839	1,365
지급건수	5	15	23	25	30
건당 평균지급액	10	15	37	34	46

자료: 국세청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의 증가율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간 충분한 소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단순히 최근 3년의 평균 건수 및 지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급 건수의 증가율은 반영하였으나, 지급액은 2016년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였다.

포상금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질의 경비이고, 세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이·전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포상금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4) 2018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20%로,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15%로, 20억원 초과 구간은 5%에서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로 지급률이 인상되었다.

가. 현 황

징수위탁수수료 사업¹⁾은 국세채납자 중 인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은 20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징수위탁수수료	2,000	2,000	0	0	2,000	2,000	0	0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체납액 규모에 따라 징수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 대상을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23조의2²⁾에 따라 체납액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³⁾에 따라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2232-303

2)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2(위탁 대상 체납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상인 경우 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에 기존 위탁액 중 1조 506억원을 위탁해지하고, 2조 2,569억원을 추가위탁하여 총 5조 8,293억원을 위탁하였으며, 이 중 378억원을 징수하여 위탁수수료 2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율은 2015년 0.49%에서 2016년 0.63%, 2017년 0.65%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규모별 위탁징수율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보면, 체납액 1억원 미만인 경우의 징수율은 2.27%인 반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의 징수율은 0.14%에 불과하였다. 2017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이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위탁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징수위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⁴⁾

[체납액 위탁징수 누적실적 추이]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2013~2016.6		2013~2018.3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액 1억원 미만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액 1억원 미만
체납자 수	5,728	100,691	15,862	142,942
위탁액	1,708,537	3,005,042	3,659,782	4,347,739
징수액	3,047	36,479	5,016	98,859
징수율	0.18	1.21	0.14	2.27
1인당 평균징수액	0.53	0.36	0.32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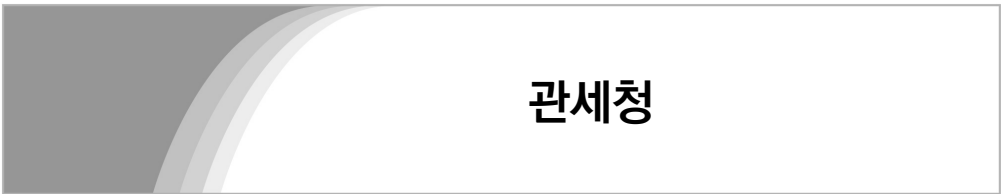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이후 21개월 간 체납액 1억원 미만인 경우의 위탁액은 44.7%가 증가한 반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위탁액은 114.2% 증가하였다. 반면, 체납액 1억원 미만인 경우의 위탁징수율은 1.21%에서 2.27%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위탁징수율은 0.04%p 감소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납부촉구, 체납자 주소확인 등 단순사실행위를 통한 징수

4)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징수실적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여 징수위탁 대상을 조정하고, 위탁 징수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징수율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세청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46억 6,100만원이며, 4,331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4%인 322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3,925억 6,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3억 8,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관세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4,661	44,661	44,661	433,192	32,242	392,563	8,388	7.4

자료: 관세청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128억 5,900만원이며, 이 중 94.5%인 4,849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1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관세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12,859	512,859	513,264	484,986	1,161	27,117	94.5

자료: 관세청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관세청의 자산은 5조 165억 5,300만원, 부채는 3조 6,934억 1,0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3,231억 4,3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5,546억 2,400만원(12.4%)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3조 8,979억 4,100만원, 일반유형자산 1조 198억 9,600만원, 무형자산 880억 8,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미수채권의 순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5,626억 8,500만원 증가, 자산취득으로 인한 증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의 36억 7,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5,386억 5,500만원(17.1%)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3조 5,342억 300만원, 장기충당부채 1,224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송패소에 따른 미지급금 증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4,916억 9,800만원 증가, 소송충당부채 계상액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450억 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단위: 백만원, %)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016,553	4,461,929	554,624	12.4
Ⅰ. 유동자산	3,897,941	3,335,256	562,685	16.9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1,019,896	1,016,224	3,672	0.4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88,084	102,462	△14,378	△14.0
Ⅵ. 기타비유동자산	10,632	7,986	2,646	33.1
부 채	3,693,410	3,154,755	538,655	17.1
Ⅰ. 유동부채	3,534,203	3,042,505	491,698	16.2
Ⅱ. 장기차입부채	36,789	34,835	1,954	5.6
Ⅲ. 장기충당부채	122,417	77,415	45,002	58.1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1,323,143	1,307,173	15,969	1.2
Ⅰ. 기본순자산	691,124	691,12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22,935	307,979	14,956	4.9
Ⅲ. 순자산 조정	309,084	308,070	1,014	0.3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062억 5,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430억 4,300만원, 관리운영비 4,160억 3,700만원, 비배분비용 579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5억 300만원, 비배분수익 82억 7,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050억 1,900만원(21.0%) 증가한 6,062억 5,300만원이며, 이는 소중부채충당금전입액 및 대손상각비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513억 9,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보화및국제협력 프로그램(799억 2,900만원)과 밀수감시단속 프로그램(353억 7,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829억 8,000만원과 경비 1,330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23억 1,300만원과 감가상각비 1억 9,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40,540	113,721	26,819	23.6
가. 프로그램 총원가	143,043	116,083	26,960	23.2
나. 프로그램 수익	2,503	2,361	142	6.0
II. 관리운영비	416,037	408,891	7,146	1.7
III. 비배분비용	57,948	6,551	51,397	784.6
IV. 비배분수익	8,273	27,930	△19,657	△70.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06,253	501,234	105,019	21.0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06,253	501,234	105,019	21.0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3,071억 7,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3,224억 4,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52억 7,6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1,057억 1,300만원이 증가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65억 9,6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항목이 762억 8,7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6,535억 7,6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23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0억 1,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관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307,173	1,116,494	190,679	17.1
II. 재정운영결과	606,947	501,234	105,713	21.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21,208	614,612	6,596	1.1
IV. 조정항목	1,014	77,301	△76,287	98.7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322,449	1,307,173	15,276	1.2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물류축진및무역원활화 사업, ② 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 등이 있다.

물류축진및무역원활화 사업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기준으로 통신비를 재산출하여 1,200만원이 감액(32억 4,400만원→32억 3,200만원)되었고, 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은 건조검사를 받은 신규감시정에 대한 정기검사 수리비와 7월말 교체될 노후감시정에 대한 수리비 5개월분 총 4,400만원이 감액(131억 3,100만원→130억 8,7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계기구매각대 목(세입) 등이 있다.

기계기구매각대 목은 예산 편성 시 누락된 중고감시정 1척 매각대금을 추가 반영하여 4,500만원이 증액(1억 8,600만원→2억 3,100만원)되었다²⁾.

1)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관세청은 ①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②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③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계 혁신**, ④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⑤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원산지관리시스템은 관세청의 FTA-PASS와 산업통상자원부의 FTA-KOREA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연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 AEO 공인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당초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AEO 공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AEO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AEO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AEO 공인심사 위탁계약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계약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예산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컨테이너 검색 수 및 검색률이 감소하는 등 신규 컨테이너 검색기의 도입 및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에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세입 수납 관리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벌금 및 과료¹⁾는 「관세법」 제311조²⁾에 따라 관세법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 부과·징수하는 벌금을 수납하는 세입과목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60억 1,000만원이었으나 56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다.

과태료³⁾는 「관세법」 제277조(특허사항위반, 용도세유택용위반, 적하목록 미제출 등), 「외국환거래법」 제32조(지급절차 위반, 지급수단 허위 수출입신고 등)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수납하는 세입과목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167억 9,100만원이었으나 133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벌금및과료,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세입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벌금및과료	6,010	6,010	6,010	5,699	3,873	1,815	11	68.0
과태료	16,791	16,791	16,791	13,325	6,089	7,152	84	45.7

자료: 관세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56-561

2)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코드명: 일반회계 71-713

나. 분석의견

별금 및 과료와 과태료의 수납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별금 및 과료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64.4%,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8.0%이다.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년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오분류분을 제외하면 실제 별금및과료 미수납액은 4억 3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⁴⁾, 2017년도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년간 별금및과료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4	2,663	2,663	2,663	5,807	5,579	209.5	96.1	229	0
'15	4,114	4,114	4,114	9,381	8,985	218.4	95.7	396	0
'16	5,579	5,579	5,579	7,270	5,771	103.4	76.6	1,083	416
'17	6,010	6,010	6,010	5,699	3,873	64.4	68.0	1,815	11

자료: 관세청

과태료 역시 2017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36.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5.7%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매년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다. 미수납액 71억 5,200만원 중 납기 미도래 8억 5,300만원을 제외하고 88.1%인 62억 9,200만원이 체납 정리 중이거나 체납자 무재산 등으로 미수납되고 있는 상황이다.

4) 2016년 과태료 및 과징금 중 일부가 별금 항목으로 잘못 분류되어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156.)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4	8,423	8,423	8,423	21,562	16,791	199.3	77.9	4,770	1
'15	14,106	14,106	14,106	20,367	14,853	105.3	72.9	5,458	56
'16	16,791	16,791	16,791	15,954	10,025	59.7	62.8	5,774	155
'17	16,791	16,791	16,791	13,325	6,089	36.3	45.7	7,152	84

자료: 관세청

그러나 관세청은 예산액 대비 수납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2016년 이후 벌금 및 과료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과태료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최근 3년간 편성의 근거를 2014년 결산액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고 있는 수납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⁵⁾

[최근 3년간 예산 편성액 및 그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 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6	5,579	'14년 결산액으로 편성	16,791	'14년 결산액으로 편성
2017	6,010	'15년 수입액에 5% 증액 편성	16,791	'16년 예산액으로 편성
2018	6,311	'17년 예산액의 5% 증액 편성	16,791	'17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 실적 및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2013년 이후 과태료 수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3) 17,490백만원 → (14) 16,791백만원 → (15) 14,853백만원 → (16) 10,025백만원 → (17) 6,089백만원

가. 현 황

FTA 이행지원 사업¹⁾은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FTA 세관협력 확대, 불법·부정 FTA 무역 차단 및 원산지 검증을 통한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무역원활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81억 9,500만원 중 78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 내의 원산지정보수집분석 위탁 내역사업은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위탁운영 및 기능개선,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을 위탁하는 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 40억 1,100만원 중 3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FTA-PASS 운영 비용은 7억 9,900만원, 기능개선 비용은 1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FTA 이행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FTA 이행지원	8,195	8,195	0	0	8,195	7,898	0	297
원산지정보수집 분석 위탁	4,011	4,011	0	0	4,011	3,836	0	175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관세청의 FTA-PASS와 산업통상자원부의 FTA-KOREA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시스템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동 사업 내에서 국내 중소·영세기업이 체계적인 FTA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FTA-PASS는 2010년 구축된 이후 2017년까지 구축비용 16억 5,100만원, 고도화비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1132-303

용 35억 4,900만원, 유지·보수비용 45억 5,500만원으로, 총 97억 5,500만원이 투입되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협정국내대책 추진지원 사업²⁾으로 2011년부터 FTA-KOREA라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두 개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정 등 동일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비교]

구 분	FTA-PASS	FTA-KOREA
구축연도	2010년	2011년
관리기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구축·운영·유지보수비	구축비용 16.5억원, 고도화비용 35.5억원, '17년 유지보수비 8.0억원	구축비용 ¹⁾ 26.9억원 고도화비용 9억원 '17년 유지보수비 1.5억원
주요기능	수출입거래처 정보 관리,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물품정보 제공, 자사물품 HS코드 조회 및 관리, 원산지판정 및 관련증명서 발급	

주: 1) 구축비용은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전액 부담함

자료: 관세청

2017년 FTA-PASS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는 13,677건, 원산지 확인서 발급 건수가 32,032건, 원산지 판정 건수가 2,113만건으로 각각 전체 활용 건수의 97.6%, 87.9%, 96.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내역]

(단위: 건)

연도	FTA-PASS			FTA-KOREA		
	증명서 발급	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정
2013	4,734	19,131	4,522,239	219	3,009	383,909
2014	7,126	27,997	8,336,830	3,414	4,274	1,141,411
2015	7,769	33,689	25,740,510	764	7,322	1,935,974
2016	10,843	33,760	24,104,713	419	10,090	1,583,154
2017	13,677	32,032	21,127,221	337	4,421	863,334

자료: 관세청

2) 코드명: 일반회계 1935-301

두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 3월 감사원 지적 이후 연계하여 2017년 6월부터 원산지확인서 송수신 기능이 연계 구축되었다.³⁾

그러나 이와 같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 매년 각 시스템의 유지보수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 비용이 각각 지출되고 있으며, 원산지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홍보 및 교육 사업이 각 부처의 시스템별로 나누어 운영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자인 기업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정보 획득 및 교육을 이중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관련 홍보 및 교육]

	FTA-PASS(관세청)	FTA-KOREA(산업부)
교육 지원내역	YES FTA 전문교육(55회, 760명)	FTA Korea 사용자 정기교육(11회, 325명)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실무교육(19회, 356명) 등
집행액	1억 4천만원	400만원

자료: 관세청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기관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특화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산물 전용시스템(FTA-Agri) 및 소기업용 간편시스템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유사하며, 수요자인 기업의 이용 목적이 원산지 증명서, 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정이라는 점에서 두 시스템이 특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로 운영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에 있어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두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이용 대상이 특화되어 있는지 여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의 효과와 유지보수비용 및 교육비 등의 이중 지출 등의 비효율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시스템 연계 이후, 2018년 5월까지 FTA-KOREA에서 FTA-PASS로 5건, FTA-PASS에서 FTA-KOREA로 80건의 문서가 송신되었다.

가. 현 황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¹⁾은 「관세법」 제255조의2²⁾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위한 서류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8억 3,000만원 중 7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절차 상 혜택을 받게 되며, AEO제도 시행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상대국 수입통관시에도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2017회계연도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관세탈루심사	3,489	3,489	0	0	3,489	3,288	0	201
AEO 공인심사 위탁	830	830	0	0	830	788	0	42

자료: 관세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1231-300의 내역사업

2)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AEO 공인심사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AEO 공인위탁 심사 건수는 총 130건 나타났다. 신규 심사 건수는 76건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공인 심사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실적 대비 낮은 편이다. 2017년 예산 편성 당시 신규공인 건수 160건, 재공인 신청건수 105건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가 47.5%, 51.4%로 나타났다.

[AEO 공인 위탁심사 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 (A)	실적 (B)	달성률 (B/A)
신규	128	150	138	119	160	76	47.5
재공인	78	145	150	6	105	54	51.4
합계	206	295	399	125	265	130	49.1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신규 심사 건수의 감소 추세는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중단³⁾과 AEO 공인취득 및 유지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공인 심사 건수의 감소 추세는 2015년 고시 개정으로 공인 유효기간이 연장(3년 → 5년)됨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⁴⁾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AEO 공인 위탁심사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	합계	128	150	138	119	76
	대기업	36	44	30	31	15
	중소기업	92	106	108	88	61
재공인	합계	78	145	150	6	54
	대기업	56	53	54	4	20
	중소기업	22	92	96	2	34

자료: 관세청

3)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년 이내 단계적 폐지”로 결정되어 2017년 폐지되었다.

4) 관세청은 유효기간 연장으로 연기된 심사건이 2018년, 2019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18년 186건, '19년 209건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신규 심사 신청 건수가 61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며, 공인서류심사 기각 건수 19건 중 16건이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AEO 공인획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문 및 기업규모별 서류심사 기각내역]

(단위 : 건)

구분	종업원 수(규모) 별 기각 건		합계
	200명 미만	200명 이상	
수출	9	1	10
수입	1	2	3
운송주선	6	0	6

자료: 관세청

따라서 AEO 공인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홍보 및 교육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심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원대상 기업이 중도에 인증을 포기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⁵⁾는 점에서 기업들이 AEO 공인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AEO 제도의 효과성을 제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AEO 공인심사 위탁계약이 사업시행 이후 단독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 또는 위탁기관 추가지정 등을 통해 계약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2010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사)한국AEO진흥협회⁶⁾와 단독 수의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AEO 심사업무 위탁기관을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⁷⁾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나, 2010년 이후 추가적인 위탁기관 지정계획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16.7.

6) (사)AEO진흥협회는 AEO제도 관련 홍보, 운영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2010년 8월 5일 설립되었다.

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연초 신규 지정 및 입찰 시 위탁계약 체결지연에 따라 심사지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2018~2019년에 재공인 심사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탁기관이 다수 지정될 경우 매년 선정결과에 따라 심사 전문인력 고용불안 발생 등 심사 전문성 악화가 우려되어 위탁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2019년도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탁기관 추가지정 공고 여부를 2018년 하반기에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에서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정업체를 추가 지정하도록 “AEO 공인 서류심사 위탁의 단독·수의계약 방식 개선”에 대하여 요구한 바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은 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관세공무원 역량강화 사업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기법을 관세행정²⁾에 적용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을 통해 관세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관세청은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한 훈련분야를 선정하여 위탁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2017년~2021년 5년간 최소 3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1억 1,6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관세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관세행정지원	18,716	18,716	0	±68	18,716	18,646	0	70
관세공무원 역량강화	116	116	0	0	116	116	0	0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내 국외위탁교육 집행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액 대비 초과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세목 조정 등 예산 조정 절차 없이 두 사업으로 나누어 분리 집행되었다.

당초 관세청은 위탁교육 관련하여 관세행정지원 사업에 일반수용비 1억 1,600만원, 국외교육여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관세행정관리 사업²⁾에서 2억 5,3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추가로 집행하였다. 그 결과 당초 편성된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7131-301

2) 코드명: 일반회계 7131-351

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을 초과집행하여 180.8%인 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다.

[관세공무원 위탁교육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세목	예산(A)	집행(B)	집행률(B/A)
관세행정지원 (7131-301)	일반수용비	116	116	100.0
	국외교육여비	144	101	70.1
	소 계	260	244	93.8
관세행정관리 (7131-351)	일반수용비	0	253	순증
	소 계	0	253	순증
합 계	일반수용비	116	369	318.1
	국외교육여비	144	101	70.1
	합 계	260	470	180.8

자료: 관세청

4개의 교육 과정 중 2018년으로 연기된 호주 맥쿼리대학교로의 위탁교육³⁾까지 고려하면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하여 위탁교육 계획이 과다하게 세워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세공무원 위탁교육 관련 세부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훈련분야	훈련기관	인원	훈련기간	예산		집행	
				일반 수용비	국외 여비	일반 수용비	국외 여비
총 계				116	144	369	101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기술 개발활동	삼성멀티캠퍼스	16	’17.08.16 ~11.24	116	144	350	72
	미국 IBM연구소 등		’17.11.26 ~ 12.03				
무역기반 금융범죄 조사	OECD TCIA ¹⁾	2	’17.09.11 ~09.29			5	13
		2	’17.10.16 ~10.27				
	호주 맥쿼리대학교	2	’18년으로 연기			-	-
초국가적 국제범죄 대응(테러, 환경범죄)	UNICRI ²⁾	2	’17.10.16 ~ 12.15			13	16

주: 1) OECD Tax Crime Investigation Academy

2)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에서 사업초기임을 감안해 일부예산만 반영하여, 관세행정관리 사업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2018년 예산 편성 시에도 위탁교육계획 상 소요 비용이 6억 7,800만원이나 관세행정지

3) 2018년 맥쿼리대학교 위탁교육비는 4인 기준 1억 1,200만원이 계획되어 있다.

원 사업에 5억 1,100만원만을 요구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교육비는 기본경비에
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탁교육 예산을 두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를 알기 어렵게 만들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
다. 또한 관세행정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위탁교육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 내로 예산의 조정 후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에 맞춰 예산을 요
구하여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소요예산에 맞는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도하게 예산을 초과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계기구매각대¹⁾는 국가가 보유한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세관보유 감시정, 차량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기구의 매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억 3,100만원이었으나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기타고정자산매각대²⁾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사무용비품 등 기타고정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수납하는 세입과목이다. 2017년도 7,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감시정 관련 세입 과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목	예산		세입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기계기구매각대	231	231	231	66	66	0	0	100.0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0	0	0	72	72	0	0	100.0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노후감시정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잘못된 세입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상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2017년도 총 4척의 감시정을 매각하여, 1억 3,600만원의 매각대금을 수납하였다. 수납과정에서 2대에 관한 대금 6,600만원은 기계기구매각대로 수납하였으나, 나머지 2대 판매대금 7,200만원은 기타고정자산매각대로 수납하였다.

그러나 감시정 매각대금은 기계기구매각대로 수납하는 것이 적절하며, 예산 편성 시에도 기계기구매각대로 전액 편성되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71-712

2) 코드명: 일반회계 71-713

세입 항목 상 오류는 세입 실적에 대한 정확한 결산을 어렵게 만들고, 향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왜곡된 자료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세청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향후 세입 징수 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시정 매각 수입이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노후감시정 매각대금 1억 3,600만원은 당초 중고감시정 매각계획액 4대 기준 1억 8,000만원 대비 75.6% 수준이다.

4대의 감시정 매각에 대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각 감시정은 전문 감정업체 2곳에 대하여 잔존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예정가격³⁾의 50% 수준으로 매각되었으며, 6회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 감시정 매각 내역]

(단위: 천원, %)

감시정명	예정가격 (A)	매각금액 (B)	비율 (B/A)	공개입찰일자	계약일자	유찰횟수
울산388	66,612	33,306	50.0	2017.04.10.	2017.07.03.	7회
경기387	65,300	32,650	50.0	2017.04.11.	2017.11.01.	8회
경남389	72,206	42,700	59.1	2017.03.10.	2017.06.01.	6회
경남390	55,109	27,554	50.0	2017.05.18.	2017.08.28.	8회

주: 군산세관 전북330호는 교육부(한국해양대) 관리전환(2017.9.21)

자료: 관세청

3)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매각금액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유찰이 발생하면서 세 번째 입찰부터 매회 100분의 10까지 그 예정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⁴⁾ 노후감시정에 대한 매입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찰로 인한 매각금액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4척의 감시정에 대한 공개입찰이 비슷한 시기(3~5월)에 집중되어 매입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관세청은 울산388호, 경남390호 매각 이전에는 해당 세관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하였으나, 경기387호, 경남389호는 매각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 감시정 수요 창출을 위하여 세관 홈페이지 안내 및 구매 가능 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⁵⁾ 따라서 향후 관세청은 여러 대의 감시정을 매각하는 경우 공개입찰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각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5) 2014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매입 시기의 집중에 대해 지적하며, “감시정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입 수요 등을 고려한 연간 매각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매각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감시정 매각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에는 1척(부산386호) 매각 당시 매각공고 2개월 전에 관세청과 해당세관 홈페이지 등에 매각사실을 사전 안내하였고, 부산386호는 유찰 없이 당초 예정금액 3,650만원 대비 127.8%인 4,666만원에 매각되었다.

가. 현 황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¹⁾은 컨테이너검색기와 같은 최신 과학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신속한 통관 및 불법물품의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121억 2,000만원 중 10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불용의 대다수는 컨테이너검색기 등 도입 사업에서 발생하였다. 컨테이너검색기 등 도입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53억 5,200만원이었으나 39억 7,000만원만 집행되었고, 1억 7,900만원이 이월, 12억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11,820	11,820	300	±68	12,120	10,483	179	1,458
컨테이너검색기 등 도입	5,052	5,052	300	△68	5,352	3,970	179	1,203
첨단 조사감시 장비 도입	2,171	2,171	0	68	2,171	1,964	0	207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과정의 지연에 따른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2017년도 예산 편성 당시 2017년 10월까지 부산 신선대 컨테이너검색기, 인천 신항 컨테이너검색기를 도입할 예정으로 임차료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부산 신선대 및 인천 신항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사업의 계약금 3억원은 2017년 사업 완료 후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된 상황이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1332-302

그러나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과정이 지연되면서 전년도 이월액 3억원과 임차료 8억 5,700만원은 불용되었다.²⁾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관련 예산 이월 및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2016				2017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부산 신선대	150	0	150	0	428.5	578.5	0	0	578.5
인천 신항	150	0	150	0	428.5	578.5	0	0	578.5

자료: 관세청

부산 신선대 및 인천 신항 컨테이너 검색기는 계약 체결이 지연된 이후 중간검수 및 장비설치, 인수까지 과정이 약 5개월 가량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전년도 이월액 3억원 및 임차료 8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컨테이너 검색기의 활용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관세청은 당초 납기일인 2017년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 1월 13일까지 납기가 연장됨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하였으며, 납기연장 이후에도 계약자 사정에 의해 지체되어 2018년 4월 최종검수 완료 이후 5월 인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신선대) 및 인천(신항)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관련 진행 내역]

도입 절차	당초 계획	집행 내역
계약 체결	2016.10.	2016.12.
건축 인·허가	2017.1.~2.	2017.3.
건축 착공 및 장비제작	2017.2.	2017.4.
중간검수	2017.7.~8.	2017.8.~2018.1.
장비설치	2017.8.~9.	2017.9.~2018.2.
시운전	2017.9.~10.	2018.2.~3.
최종검수	2017.11.~12.	2018.4.
인수	2017.12.	2018.5.

자료: 관세청

2) 그 외 불용액은 낙찰차액, 리스 기준금리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6,500만원이 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에서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노후컨테이너 검색기의 잦은 고장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컨테이너 검색수 및 검색률이 전년 대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규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및 교체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관별 컨테이너 검색률 추이]

(단위: 건, %)

세관	2013		2014		2015		2016		2017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부산(5)	25,407	1.4	26,740	1.4	27,999	1.4	29,358	1.5	28,975	1.4
인천(3)	17,544	2.4	17,345	2.2	19,384	2.4	18,678	2.1	16,460	1.7
평택(2)	5,029	2.9	6,323	3.5	11,324	6.1	10,353	5.1	10,479	4.8
광양(1)	1,654	0.6	1,893	0.6	1,979	0.6	2,459	0.7	2,591	0.7
군산(1)	594	4.4	599	5.4	574	6.0	652	5.3	664	4.0
울산(1)	602	1.7	606	2.5	632	2.7	739	3.0	753	3.1
합 계	50,830	1.7	53,506	1.6	61,892	1.9	62,239	1.8	59,922	1.6

자료: 관세청

향후 관세청은 컨테이너검색기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장비 도입과정에 대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이 어려운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비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스티커셀 구매 예산을 매년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나, 소요량을 예측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동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 조사감시장비 도입 사업에서 스티커셀 구매를 위한 일반수용비 6,800만원을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다. 관세청은 국내 반입 수하물에 대해 X-Ray 판독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자택이나 스티커셀을 부착하여 검사지정한 후 검사대에서 개장검사를 하고 있다. 스티커셀은 RFID칩이 내장된 스티커로, 전자택 부착이 곤란한 박스 등의 수하물에 사용하고 있다.

2017년 스티커셀 24만 8,000장을 구매하였으며, 총 28만 8,112장을 사용하였다.

스티커셀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예산집행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매년 수요가 예측가능한 경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집행잔액 및 예산조정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2017년에도 동 사업의 임차료 6,8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국제공항만운영지원 사업³⁾에서도 일반수용비 일부(670만원)를 사용하여 집행하였다.

[스티커셀 사용 및 예산집행 내역]

(단위: 개,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매량	100,000	213,000	340,000	280,000	248,000
사용량	246,445	198,957	249,692	289,332	288,112
예산편성액	0	0	0	0	0
예산집행액	22,780	50,715	45,300	69,600	68,000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스티커셀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관련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수요가 예측가능한 경상경비를 예산조정, 집행잔액 등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코드명: 일반회계 7132-300

가. 현 황

관세청은 2017년 말 기준으로 3조 9,046억원의 미수채권¹⁾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말 2조 3,207억원 대비 1조 5,839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관세청은 미수채권 중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으로 2017년 말 기준 105억 8,062만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421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관세청은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으로 ① 최근 3년간 평균대손확정액(불납결손금액으로 소멸시효 완성분)에서 3년 평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을 나누어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산출한 후, ② 당해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곱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다. 그 결과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3년 2.3%에 비하여 2.7%p 감소한 0.3%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관세청 미수채권 현황]

(단위: 억원, %, %p)

	2013(A)	2014	2015	2016	2017(B)	증감(B-A)
미수채권(C)	23,207	26,290	26,137	33,343	39,046	15,839
대손충당금(D)	527	335	63	52	106	△421
미수채권 잔액(D-C)	22,680	25,955	26,074	33,291	38,940	16,260
대손충당금 설정률	2.3	1.3	0.2	0.2	0.3	△2.7

자료: 관세청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합리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미수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 1) 미수채권은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의 미수채권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기미도래액이 2조 8,640억원, 정리유예 건이 6,321억원이며, 채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액이 623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관세청 미수채권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징수 유예	납기 미도래	통관 진행중	정리유예	채납자 무재산 등	관계기관 예산부족	기타 (채납 처리중)	합계
미수국세	7,125	2,862,959	7,654	379,548	37,862	420	216,380	3,511,947
미수제재금 수익	0	1,057	1,042	252,510	24,491	0	113,390	392,491
합 계	7,125	2,864,016	8,696	632,058	62,353	420	329,770	3,904,438

자료: 관세청

그러나 관세청은 채납자의 무재산으로 인해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액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의 2017년 말 잔액이 106억원에 그친 원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납결손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산출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자산가치를 상실하여 국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왜곡하여 표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의 대손가능한 금액을 추산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함과 아울러 당해 채권의 평가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는 미수채권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회계편람에서는 기말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령분석법²⁾, 채권잔액비례법³⁾, 대손실적률법⁴⁾을 적용하는 것

2)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3)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4)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보유 중인 미수채권을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분한 미수채권의 과거 경험률 등을 바탕으로 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수채권의 실질가치가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44억 5,000만원(1.9%)이 감소한 2,23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27억 2,300만원(17.1%)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191,237	228,410	228,410	223,960	△4,450	32,723

자료: 조달청

2017회계연도 조달청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25억 4,700만원(2.1%)이 감소한 1,16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8억 600만원(4.8%)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122,141	118,882	118,882	116,335	△2,547	△5,806

자료: 조달청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388억 7,900만원이며, 4,019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7.7%인 3,650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368억 7,9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338,879	338,879	338,879	401,904	365,025	36,879	0	107.7

자료: 조달청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94억 6,500만원이며, 이 중 86.2%인 2,926억원을 지출하고 6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2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338,879	338,879	339,465	292,600	625	46,240	86.2

자료: 조달청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조달청의 자산은 2조 653억 4,100만원, 부채는 82억 8,2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570억 5,9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260억 3,900만원(1.3%)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조 4,200억 1,800만원, 일반유형자산 6,297억 2,500만원, 무형자산 77억 6,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2017회계연도 조달사업 실적 호조에 따른 조달수수료·비축물자 판매수입 증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액 감소에 따른 차년도 이월금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345억 4,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0억 4,900만원(19.8%) 감소한 것으로 유동성금융리스부채 및 선수수익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7억 2,100만원 감소, 금융리스 신규취득 물품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3억 2,400만원 감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065,341	2,039,302	26,039	1.3
Ⅰ. 유동자산	1,420,018	1,385,472	34,546	2.5
Ⅱ. 투자자산	4,569	4,805	△236	△4.9
Ⅲ. 일반유형자산	629,725	635,040	△5,315	△0.8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7,765	10,830	△3,065	△28.3
Ⅵ. 기타비유동자산	3,264	3,155	109	3.5
부 채	8,282	10,331	△2,049	△19.8
Ⅰ. 유동부채	3,610	4,331	△721	△16.6
Ⅱ. 장기차입부채	4,668	5,992	△1,324	△22.1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4	8	△4	△50.0
순 자 산	2,057,059	2,028,971	28,089	1.4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입(수익)이 재정지출(비용)을 초과하여 순수익이 289억 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949억 4,000만원, 관리운영비 342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981억 1,700만원, 비배분수익 199억 3,500만원, 비교환수익 등 △599억 9,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74억 7,700만원(44.7%) 감소한 888억 9,6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수익이 264억 800만원 증가하여 프로그램 순원가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 집행액 증가에 따라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이 369억 8,100만원 감소함에 따라 비교환수익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총원가 - 수익)가 작은 프로그램은 조달 사업운영 프로그램(△1,318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18억 5,000만원과 경비 123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3,177	△77,183	△25,994	△33.7
가. 프로그램 총원가	94,940	94,526	414	0.4
나. 프로그램 수익	198,117	171,709	26,408	15.38
II. 관리운영비	34,216	32,696	1,520	4.6
III. 비배분비용	0	20	△20	△100.0
IV. 비배분수익	19,935	16,952	2,983	17.6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8,896	△61,419	△27,477	△44.7
VI. 비교환수익 등	△59,992	△27,533	△32,459	△117.9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8,904	△33,885	4,981	14.7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2조 289억 7,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조 570억 5,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80억 8,800만원(1.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적립금및잉여금이 289억 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8억 1,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028,971	1,965,760	63,211	3.2
II. 재정운영결과	△28,904	△33,885	4,981	14.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0	0	0	0
IV. 조정항목	△816	29,325	△30,141	△102.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057,059	2,028,971	28,088	1.4

자료: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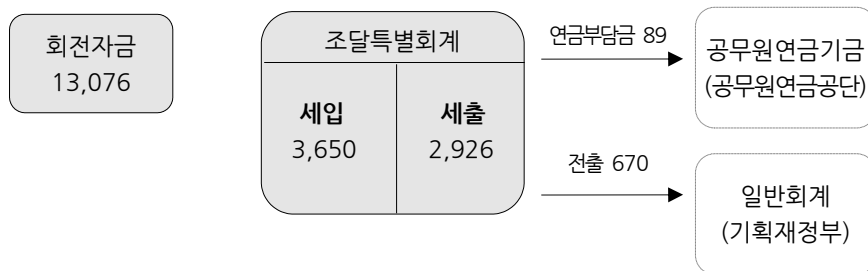
라.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조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670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연금부담금 89억원을 전출하였다.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전자조달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이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일원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조달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4,100만원을 감액(30억 2,000만원→29억 7,900만원)되었고,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예산이 4,100만원 증액(30억 8,600만원→31억 2,700만원)되었다¹⁾.

1)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조달청은 ① 국제 공공조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 ② 나라장터 콜센터 상담원 처우개선을 통한 **조달정보 제공서비스 품질 제고**, ③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통한 **공사의 품질 확보**, ④ 미래 신성장 제품에 대한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⑤ 조달물자 가격 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등을 2017년 주요 예산 편성 및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 또는 행사를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조달청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 대행 사업 및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를 진행하였으나,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잔액을 통해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유지환수위탁용역 계약을 수정하면서 2018년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월이 발생하였다. 조달청은 당초 2017년 12월까지로 체결된 정부법무공단과의 소송위탁계약을 연말에 수정하여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계속계약 체결 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세출 예산을 각 회계연도 내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1.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의 연례적 추진 문제

가. 현 황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¹⁾은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조달청은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6억 5,500만원 중 6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조달 국제 협력체제 구축	897	897	0	±80	897	889	0	8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지원	655	655	0	0	655	652	0	3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사업 내에서 일반수용비 4,3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에 없던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 사업은 미국, UN 등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의 벤더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조달특별회계 1233-331의 내역사업

[2017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 세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집행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정부조달에 특화된 해외전시회 참가	308	정부조달에 특화된 해외전시회 참가	335
해외시장 및 동향조사	33	해외시장 및 동향조사	3
시장개척단 파견 관련 국가와의 설명회 및 구매상담회	250	시장개척단 파견 관련 국가와의 설명회 및 구매상담회	223
타겟국가 특수언어 통번역 자문	50	타겟국가 특수언어 통번역 자문	48
미국 등 조달벤더 등록 지원	14	미국 등 조달벤더 등록 지원	0
-	-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	43
합 계	655	합 계	652

자료: 조달청

2017년 3월부터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²⁾ 내 운영하고 있는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개월간 총 28건의 지원을 수행하였다.

[2017년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사업 실적]

(단위: 건, 천원)

업무 구분	건수	지원금액	비 고
SAM 등록	14건	6,663	미연방 조달청 벤더등록
UNGM 등록	4건	450	UN 벤더등록
GSA MAS 등록	6건	27,335	미연방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미연방정부 제안서	4건	8,248	미연방 입찰제안서 제출
합계	28건	42,696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 사업의 집행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회의 예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였다.

조달청은 2017년 1월 9일에 있었던 2017년도 업무보고 당시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해외정부조달 입

2)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는 2016년 10월 25일 설립된 기업으로, 해외정부조달 진출 및 해외정부조달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사업의 중요성을 보았을 때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도 본예산에 ‘미국 등 조달벤더 등록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별도 신규 사업으로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달청은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동 사업을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참가지원”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조달청은 2016년에도 타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글로벌 입찰 전문인력 채용상담회를 집행잔액을 통해 우선 추진한 이후에 20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³⁾

이와 같이 집행잔액을 통해 신규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를 사후적으로 받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신규 사업 추진 시 국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입찰지원 대행 용역을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목)로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달청은 동 사업의 용역을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 총 4,3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였다. 먼저, 해당 사업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를 대행시키는 계약’으로,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⁴⁾

3)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에서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글로벌 입찰 전문인력 채용상담회)을 세목조정을 통하여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연내 시급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예산 집행을 자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주의)하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세목조정을 최소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 예산에 해당 예산을 2,000만원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4)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p.187.

[2017년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사업 계약 체결 내역]

(단위: 원)

비목	수행 기간	지급액	건명	수행인
일반수용비 (210-01)	5월~9월	21,300,000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업무대행 용역계약(1차)	사단법인 한국지팩스
	10월~12월	21,300,000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업무대행 용역계약(2차)	기업수출진흥협회

자료: 조달청

또한, 업무의 규모를 보았을 때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4월 계약 금액이 9월에 이르러 소진되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여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월 계약 체결시의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지원예산금액은 전체 1건씩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360만원이 소진된다는 점에서, 2,100만원의 예산이 연중 부족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사업 지원예산금액]

(단위: 원)

업무 구분	예산비용(A)	지원예산금액(A×70%)
SAM 등록	2,314,420	1,620,094
UNGM 등록	2,838,680	1,987,076
GSA MAS 등록	11,434,360	8,004,052
미연방정부 제안서	2,838,680	1,987,076
합계	19,426,140	13,598,298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는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2.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문제

가. 현 황

조달청은 2017년 12월 5일~7일 3일간의 일정으로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국제워크숍 및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행사는 공공조달분야 전문가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고 조달워크숍, 1:1수출 상담회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국제워크숍 관련 예산은 기존에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조달청-WB 열린조달 워크숍’ 비용¹⁾ 4,100만원 중 3,400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예산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²⁾의 예산 잔액 5,300만원과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³⁾ 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초청여비의 예산 9,700만원으로 분리집행하였다.

[국제워크숍 및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행사명	세부사업	세세목	예산액	집행액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국제워크숍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일반수용비(210-01)	14,400	17,364
		임차료(210-07)	3,600	0
		국외여비(220-02)	15,300	12,279
		사업추진비(240-01)	7,300	4,708
	합 계		40,600	34,351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일반수용비(210-01)	0	16,927
		임차료(210-07)	0	27,109
		사업추진비(240-01)	0	8,672
		소 계	0	52,780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일반수용비(210-01)	0	14,700
		국외여비(220-02)	0	82,442
		소 계	0	97,142
	합 계		0	149,922

주: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국제워크숍의 임차료는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와 공동 이용으로 집행되지 않았음

자료: 조달청

1) 조달청은 WB 측이 회원국들 간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워크숍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국제 공공조달 워크숍’으로 대체하여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코드명: 조달특별회계 1233-331

3) 코드명: 조달특별회계 1235-334

나. 분석의견

첫째, 국회의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였다.

조달청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에 없던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관련 예산을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집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부 내의 편성 절차를 거쳐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아 그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사회·경제적 효과 및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제행사개최계획서와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재정당국에 제출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편성 절차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편성 절차 및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국제회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향후 행사 개최 시에 예산 편성 단계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타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예산 조정 없이 두 개의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집행하였다.

조달청은 동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과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으로 분리하여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특성상 바이어와 2~3년간 지속적인 관계 및 상담이 필수적이어서 불가피하게 2개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이 반드시 분리집행되어야 하는 사유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⁴⁾

또한 이·전용 없이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조달청은 해당 사업 내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관련 예산으로 후속 사업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7년 4월에 있었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본행사⁵⁾를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2017년 예산 편성

4) 2018년도에는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예산 1억 7,000만원이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내에 일원화되어 편성되어 있다.

시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에 국제기구 전문가 및 해외조달기관을 추가로 초청하기 위한 명목으로 증액된 바 있다. 그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후속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국외업무여비를 증액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편성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의 조정 등을 거치지 않고 분리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조달청은 매년 상반기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19일~21일 114명의 해외바이어와 200여 기업이 참가하였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유지 환수 위탁 용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¹⁾은 국유재산 이용 및 관리실태를 현지 확인·점검하고, 은닉재산 등 숨겨진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유화조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액 18억 6,100만원 중 1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7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861	1,861	0	0	1,861	1,619	127	115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연말 계약 수정 과정에서 국유지 환수위탁용역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각 회계연도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동 사업 내에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광복 후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나 그 일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이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조달특별회계 1132-331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1979년(3년간), 1993년(2년간), 2006

용하여 불법으로 사유화된 경우³⁾가 확인되면서, 조달청은 2015년부터 이를 국유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여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여 은닉 의심토지(10,479필지)를 선별한 후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⁴⁾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자체 조사 392필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이관받은 42필지와 사인 신고재산 15필지, 총 475필지의 은닉의심재산을 대상으로 국유화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통하여 64필지, 자진반환으로 20필지, 총 84필지를 국유화 조치하였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연도별 국유화 완료 실적]

(단위: 필지, m²)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건수	필지	면적	건수	필지	면적	건수	필지	면적	건수	필지	면적
소송	1	7	1,904	33	40	22,611	16	17	58,057	50	64	82,572
자진 반환	2	8	5,865	1	1	214	11	11	7,039	14	20	13,118
계	3	15	7,769	34	41	22,825	27	28	65,096	64	84 ¹⁾	95,690

주: 1. 소재기 연도기준 통계기준(16년 소재기 후 '17년 승소 및 국유화완료지 '16년도에 계상)

1) 승소(66필지)+자진반환(20필지)=86필지이지만 현재 피고의 항소도과기간, 중앙관서지정, 서류(토지대장 등) 취합 등 최소 행정소요기간 경과 필요에 따라 2필지 국유화 진행 중임

자료: 조달청

년(2년간) 시행되었다.

- 3) 조달청에 따르면, 특조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사례는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 확인이 불가하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이 없는 토지로서 「특조법」 이전(以前)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 부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을 일방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보증하여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移轉)하였으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4) 국유화 이후에 매각되거나, 창씨개명으로 실제로는 한국인 소유였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분배대상 농지로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 등 사유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외의 토지를 은닉의심재산으로 선별하였다.

조달청은 국유화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50건을 기준으로 2억 500만원의 소송계약을 1차로 체결하였으며, 연말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6,560만원(16건)을 증액하여 총액 2억 7,060만원으로 수정하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8년 12월까지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1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7년 정부법무공단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제기한 소송은 항소 7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으로, 조달청은 나머지 27건은 2018년도 내 소송대상 발굴 및 위탁의뢰할 예정이며, 추가 위탁건수가 27건을 못 미칠 경우 재수정계약체결을 하여 잔액을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2017년도 정부법무공단과의 국유화소송위탁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예산		소송		체결 일자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계약건	집행건		
당초	205	143.6	50	39	2017.05.26.	2017.05.~2017.12.
수정	270.6	143.6	66	39	2017.12.15.	2017.05.~2018.12.

자료: 조달청

그러나 조달청의 2018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위탁소송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전체 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 상황이라는 점에서 계약기간 및 규모의 수정이 필요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명시이월비 또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부대경비 등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있다는 점에서, 연말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계약의 범위와 기간을 연장하여 이월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2018년도 은닉신고재산 460필지에 대한 예측 소송 건수 30.4건, 항소 및 상고예측 건수 3.7건으로 2018년도 내에 34.1건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 계약 내 미집행 건수인 27건, 2018년도 본예산 내의 위탁 가능 건수인 12건을 합친 총 39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송 건수 예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송 특성상 장기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법무공단 지정변호사의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업무지속성 및 일관성유지 필요 등에 따라 당해 사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2017년도 내에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에 10건의 소송위탁의뢰를 성사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도 항소 및 상고 4건을 진행하고 있는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송의 특성 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이 어려워 계약이 완료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연말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전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각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⁶⁾에서도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계속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면서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조달청은 향후 당해 연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해당 회계연도의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별 예산이 분리되어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현 황

조달전문교육 운영 사업¹⁾은 조달전문교육을 통해 조달 관련 공무원, 수요기관 직원의 조달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달업체 종사자의 조달전문성을 함양하려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액 11억 200만원 중 10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또한,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사업²⁾은 조달전문교육 중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53조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직접 관련된 경비로 초과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액 2억 6,900만원 중 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조달 교육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달전문교육 운영	1,102	1,102	0	±7	1,102	1,064	0	38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269	269	0	±2	269	268	0	1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수입대체경비 교육과정과 조달전문교육 운영 사업에 따른 교육과정 간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고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조달교육원은 45개 교육과정 중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통해 41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수입대체경비 교육과정과 조달전문교육 운영 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간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고 집행되고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조달특별회계 7134-371

2) 코드명: 조달특별회계 7134-650

[수입대체경비와 사업비 구분 없이 집행된 사례]

(단위: 백만원)

대상	분야	과정명	조달전문 교육운영(A)	수입대체 경비(B)	계 (A+B)
조달청 내부 직원	기본	PPS-MBA 과정 강사료	8.1	0.0	8.1
		신규직원 과정 강사료	3.8	4.7	8.5
		중견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강사료	19.0	0.0	19.0
	정보화 역량	엑셀활용 과정 강사료	0.0	3.7	3.7
		프리젠테이션 활용 과정 강사료	1.9	0.0	1.9
		한글활용 과정 강사료	0.0	5.5	5.5
	특별	감사사례로 배우는 내자계약 과정 강사료	0.0	0.3	0.3
		업무분야별 워크숍 과정 강사료	1.0	0.8	1.8
공공 기관 (조달청 포함)	소양	자금관리 및 인생설계 과정 강사료	0.0	2.4	2.4
		전략개발 및 기획능력 향상 과정 강사료	2.0	0.0	2.0
		힐링캠프 과정 강사료	0.0	3.3	3.3

자료: 조달청

동일한 내부직원 대상 교육임에도 과정별로 조달전문교육운영 사업, 수입대체 경비 사업으로 나뉘어서 집행되었으며, 일부 과정의 경우 과정 내에서도 예산이 분리되어 집행되었다. 신규직원 과정 강사료의 경우, 1기 교육과정은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472만원, 2기 교육과정의 경우 조달전문교육 운영 사업에서 380만원이 집행되었다. 업무분야별 워크숍 과정 강사료의 경우에도 조달전문교육 운영에서 100만원, 수입대체경비에서 80만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전략개발 및 기획능력 향상 과정과 같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입이 발생하여 수입대체경비 사업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전문 교육운영 사업에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강사료 이외에도 교육 진행을 위한 경상경비도 혼재되어 집행되고 있다.³⁾

3) 2기 신규직원 교육 과정 교재 인쇄비, 현장학습 경비 등은 수입대체경비에서 집행되었으며, 맞춤형 교육과정의 강사료는 수입대체경비에서, 여비, 교재인쇄비 등 경상경비는 수입대체경비가 아닌 조달전문교육운영 사업에서 집행되었다.

조달청은 조달전문교육 운영 과정과 수입대체경비 사업 간의 분리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내부직원 교육훈련 과정의 경우에도 교육원 사용료 등을 지급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의 대상에 조달청 내부직원이 포함되는 등 두 사업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의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 제53조4)에 근거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의미하는데, 국가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함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시설의 생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지정하고,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초과지출을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⁵⁾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일반 세부사업과 구분하지 않고 집행할 경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하나의 사업 내에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5)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5.



통계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2억 5,000만원이며, 42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1%인 41억 8,300만원을 수납하고 8,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50	3,250	3,250	4,262	4,183	80	0	98.1

자료: 통계청

2017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928억 5,900만원이며, 이 중 97.8%인 2,862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 6,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5,595	291,916	292,859	286,298	0	6,562	97.8

자료: 통계청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통계청의 자산은 2,117억 3,100만원, 부채는 55억 1,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062억 1,2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8억 2,400만원(0.4%) 감소한 것으로 일반유형자산 1,682억 800만원, 무형자산 348억 9,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무형자산 감가상각에 따른 무형자산 감소,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물품 폐기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5억 9,100만원(31.9%)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26억 8,900만원, 장기차입부채 22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2억 3,900만원 감소, 장기차입금 감소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24억 4,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11,731	212,555	△824	△0.4
Ⅰ. 유동자산	3,919	4,194	△275	△6.6
Ⅱ. 투자자산	190	19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168,208	164,707	3,501	2.1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34,890	39,517	△4,627	△11.7
Ⅵ. 기타비유동자산	4,523	3,947	576	14.6
부 채	5,518	8,109	△2,591	△32.0
Ⅰ. 유동부채	2,689	2,928	△239	△8.2
Ⅱ. 장기차입부채	2,210	4,655	△2,445	△52.5
Ⅲ. 장기충당부채	620	525	95	18.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206,212	204,446	1,766	0.9
Ⅰ. 기본순자산	115,286	115,286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8,692	58,690	2	0.0
Ⅲ. 순자산 조정	32,234	30,470	1,764	5.8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037억 9,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443억 3,300만원, 관리운영비 653억 9,800만원, 비배분비용 3,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9억 6,400만원, 비배분수익 30억 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23억 6,200만원(9.6%) 감소한 3,037억 9,700만원이며, 이는 외주용역비,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의 감소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342억 8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성과중심책임운영기관 운영 프로그램(1,154억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70억 4,800만원과 경비 183억 4,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3,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41,369	276,151	△34,782	△12.6
가. 프로그램 총원가	244,333	278,541	△34,208	△12.3
나. 프로그램 수익	2,964	2,390	574	24.0
II. 관리운영비	65,398	60,654	4,744	7.8
III. 비배분비용	37	1,336	△1,299	△97.2
IV. 비배분수익	3,007	1,983	1,024	51.6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03,797	336,159	△32,362	△9.6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03,797	336,159	△32,362	△9.6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2,044억 4,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062억 1,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7억 6,600만원(0.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국고수입 338억 6,700만원 감소, 국고이전지출 및 무상이전지출 9억 5,100만원 감소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채원의 조달 3,096억 5,6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58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7억 6,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통계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04,446	190,113	14,333	7.5
II. 재정운영결과	303,797	336,159	△32,362	△9.6
III. 채원의 조달 및 이전	303,799	339,913	△36,114	△10.6
IV. 조정항목	1,764	10,579	△8,815	△83.3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06,212	204,446	1,766	0.9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17년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사업, ②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③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 등이 있다.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사업은 회선해제된 스마트패드 25대에 관한 예산을 감액(53억 4,800만원→53억 3,200만원)되었고,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사업은 통계청 비서관학회 및 한국통계학회 산하 연구회 기관회비 전액 한국통계진흥원 회비 일부가 감액(2억 7,900만원→2억 6,500만원)되었다.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은 중복편성된 세미나 참석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이 감액(9억 5,600만원→9억 5,100만원)되었다¹⁾.

1)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통계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선진 통계방식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 개발·공유·개방 확대 요구에 따라 ①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 강화, ②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로 통계생산·활용 지원, ③ 수요변화에 대응한 통계 작성·제공, ④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제고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수입대체경비 중 지역통계생산대행과 관련하여 예산액 대비 약 2배 가량 초과수납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였다.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최근의 수납 실적 고려 및 지역통계 수요 적극 조사 등을 통하여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 등 예산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여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통계청은 당초 편성되지 않은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 관련 예산을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세목조정하여 확보하였으며, 추경 사업으로 편성된 기업등록부 사업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용 없이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에서 집행하였다. 예산의 이·전용 등 없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편성 시정 필요

가. 현 황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¹⁾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입으로 수납한 세입과목이다.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수입을 직접 동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통계교육원, 통계생산대행, 통계개발대행 및 지역통계조사대행을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2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9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5.1%가 수납되었다.

[2017회계연도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2,044	2,044	2,044	2,965	2,965	0	0	145.1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청의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2017년 수입대체경비의 구체적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통계생산대행 수입, 지역통계조사대행 수입은 초과수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지역통계조사대행 수입은 예산액 대비 2.3배 많은 11억 7,000만원이 수납되어 가장 큰 초과수납이 발생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69-691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예산액 (A)	수납액 (B)	초과수납 (B-A)	예산액 (C)	수납액 (D)	초과수납 (D-C)	예산액 (E)	수납액 (F)	초과수납 (F-E)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2,879	3,515	636	1,935	2,390	455	2,044	2,897	943
- 통계교육원	380	481	101	580	494	△86	580	631	28
- 통계생산대행	2,100	2,182	82	1,000	902	△98	900	1,138	238
- 통계개발대행	48	48	0	48	48	0	48	48	0
- 지역통계 생산대행	351	804	453	307	946	639	516	1,170	654

자료: 통계청

이와 같은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의 초과수납 및 초과지출 증인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은 매년 예산액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²⁾

[지역통계생산대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지역통계생산대행	408	509	351	804	307	946	516	1,170
경인청	113	106	20	113	87	331	104	193
동북청	54	157	57	133	64	84	64	229
호남청	70	120	70	367	78	93	87	208
동남청	21	16	54	67	28	238	206	256
충청청	150	110	150	124	50	200	55	220

자료: 통계청

2) 국회는 2015년도 결산에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조사대행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2016년 결산에서도 “최근 수납실적, 관한 지역 지자체의 지역통계 개발·추진 노력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목표를 설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거 수납실적 대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과소계상”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비용의 지출로 이어진다. 2017년에도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경비에 대하여 6억 5,400만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은 5억 1,600만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11억 7,000만원, 집행액은 11억 6,100만원으로 예산의 2.2배 이상이 집행되었다.

[지방 통계청 2017년도 초과지출승인액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초과 지출 승인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초과지출승인액의 비목별 집행액					
							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기타
지역 통계	경인청	104	89	193	191	2	89	20	65	3	2	0
	동북청	64	229	293	292	1	229	45	167	11	3	4
	호남청	87	121	208	207	1	121	11	83	23	3	0
	동남청	206	50	256	254	2	50	32	13	3	2	0
	충청청	55	165	220	217	2	165	37	112	12	4	0
합 계		516	654	1,170	1,161	8	654	145	440	52	14	4

주: 기타는 보상적 경비와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포함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지역통계생산 대행 사업의 경우 연도별, 지방청별 수요 변동이 많은 편으로 예산액의 사전예측이 어려운 편이나, 매년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 예산안 편성 시 수입을 과소 계상할 유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입대체경비를 통한 초과지출은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최근의 수납 실적 고려 및 지역통계 수요 적극 조사 등을 통하여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¹⁾은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 기업생멸통계 등 각종 경제 관련 통계를 조사 및 분석하는 사업이다. 통계청은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116억 5,700만원 중 11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제구조통계작성	11,657	11,657	0	△22	11,635	11,451	0	184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예산의 조정을 통해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절한 집행이며, 향후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2017년 3월 15일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해당 국제회의에 대한 계획이 없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2억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조정하여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제회의 관련 위탁사업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탁사업비 예산	위탁사업계약 내역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계약기간
경제구조통계작성 (3031-301)	0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	200	157	'17.2.~4.

자료: 통계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3031-301

이에 대해 통계청은 국제회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16년 10월 OECD 사무총장과 통계청장이 제6차 세계포럼의 한국 개최²⁾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회의 성격의 국제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OECD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은 경제 관련 통계를 조사 및 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회의 관련 예산을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다. 통계청은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와 관련된 업무 및 절차를 국제통계협력강화(7031-303)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제6차 OECD 세계포럼 준비와 관련된 절차도 동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 간의 연계 및 체계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도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을 통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 시 요구되는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제회의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 등³⁾ 예산 편성 및 심의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사를 우회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특히, 통계청은 2016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도 예산 편성 당시 계획되지 않은 국제회의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을 집행잔액으로 개최하여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타당성 및 사전계획 등에

2)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은 3년 단위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제6차 포럼은 2018년 11월 27일~29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6차 포럼의 슬로건은 미래의 웰빙으로,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기업역할과 웰빙 등을 테마로 회의 및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3)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96.

○ 10억원 미만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 주관 행사는 사회·경제적 효과 및 개최시기·개최 주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요구
- 예산요구시 「국제행사관리지침」상의 타당성 심사기준 등을 준용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와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함께 제출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적정 예산을 편성한 후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시정요구받은 바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자체변경을 통해 집행하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¹⁾은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자리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기 구축된 행정자료 사업자등록 DB를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이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 63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중 6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업등록부 정비	0	6,321	0	±236	6,321	6,194	0	127

자료: 통계청

기업등록부(Business Register, BR)란 통계조사, 통계분석을 위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도록 조사자료²⁾와 행정자료³⁾를 융·복합하여 주민번호와 같이 기업번호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경제통계 모집단 명부자료를 의미한다. 기업등록부에는 명부(식별)정보와 속성(특정값)총괄정보를 수록하며, 자료원별 세부 속성정보는 별도 DB에 수록하여 연동하게 된다. 기업등록부 정비를 통해 기존에는 산업분류⁴⁾상 대분류 수준에서 작성하던 고용 관련 통계를 소분류 이하 수준까지 작성이 가능해졌으며, 산업별, 지역별 통계 등 관련 통계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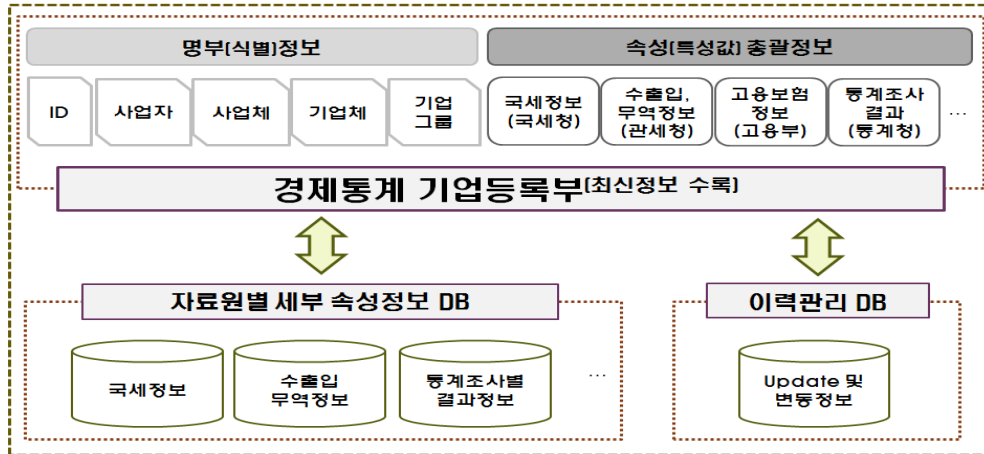
1) 코드명: 일반회계 3038-312

2)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통계청이 실시한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한다.

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과세표준, 법인세자료 등을 의미한다.

4)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 사업장)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의미한다.

[기업등록부 수록 체계]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예측가능한 경상경비를 과소계상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다.

추경 예산 편성 당시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인건비 51억 2,900만원, 일반수용비 5,000만원, 공공요금 3억 3,500만원, 임차료 7억 2,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대비 542.0%인 2억 7,1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당초 예산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일반수용비 집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간 7차례의 세목조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동 사업 내에서 부족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원을 이·전용 등 절차 없이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⁵⁾에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추경 편성 당시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목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 초기에 시급한 소요가 있는 비목에 대해 우선조정하여 집행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5) 코드명: 일반회계 3031-301

[2017년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 세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목-세목 코드	목 명	추경 예산액(A)	세목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B/A)
110-03	일용임금	4,673	0	4,673	4,628	45	99.0
210-01	일반수용비	50	222	272	271	1	542.0
210-02	공공요금및제세	335	△236	99	95	4	28.4
210-07	임차료	722	14	736	735	1	101.8
210-09	유지보수비	50	0	50	50	0	100.0
220-01	국내여비	35	0	35	34	1	97.1
320-09	고용부담금	456	0	456	381	75	83.6
합 계		6,321	0	6,321	6,194	127	98.0

자료: 통계청

그러나 일반수용비 2억 7,100만원의 구체적 집행 내역을 보면, 음료 및 다과, 문구 및 전산소모품 등 비품 구입비용으로 1억 3,810만원, 통신, 전기 설치 공사 비용 9,534만원, 그 외 관리비 등 기타 비용 3,727만원이 집행되었다. 해당 비용은 경상비용으로 사무실 운영 이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

(단위: 만원)

예산		집행	
금액	산출근거	금액	집행내역
2,200	음료수 구입비 1,100명*2천원*1회	13,810	비품(음료 및 다과, 문구,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
2,800	지침서 인쇄비용 24천원*1,200부	9,534	통신, 전기 설치 공사 비용
		3,727	관리비 등 기타 비용

자료: 통계청

따라서 향후 통계청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계획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족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이·전용 절차 없이 타 세부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통계청은 일반수용비로 조정하면서 부족해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에 대해서는 타 세부사업인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에서 1억원의 일반수용비를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부득이하게 동 사업 성격과 가장 유사한 타 사업에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 관련 공공요금및제세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기업등록부 정비(3038-312)	335	△236	99	95	4
경제구조통계작성(3031-301)	0	100	100	100	0
합 계	335	△136	199	195	4

주: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내에서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과 관련된 예산액·집행액만을 기재함
자료: 통계청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는 예산의 정해진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은 각각 경제통계작성(3031) 단위사업, 행정자료통합관리(3038) 단위사업으로 다른 세항에 속해있으므로, 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만을 하고,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동 사업이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과 본예산을 구분하여 집행·관리하고 있어 예산의 전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동 사업 성격과 가장 유사한 타 사업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예산을 통해 기업등록부 정비와 관련된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처럼 두 세부사업으로 분리 집행하면서 해당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금액은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전체의 규모에 대해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결산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2017년도 예산 집행지침」 상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전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추경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용이 필요하였다면 집행 부처와 재정당국과의 협의 하에 예산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계청은 향후 이·전용 없이 두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 규모를 왜곡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업¹⁾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종합 및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로, 사회통계작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 17억 800만원 중 16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통계작성	11,659	11,659	0	△17	11,642	11,363	0	279
가계금융복지조사	1,708	1,708	0	0	1,708	1,692	0	16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비용 집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조사기관의 분담금은 고정되어 통계청의 분담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분담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금융감독원의 가계신용조사, 한국은행의 가구패널조사를 통합하여 1년 주기의 가계금융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청이 조사를 실시하되 공동조사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²⁾. 동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가구주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사항목은 금융부문과 복지부문으로 구성된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3032-304의 내역사업

2) 공동조사기관의 분담금은 세입의 기타잡수입(69-691)으로 수납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20,651가구를 대상으로 금융 관련 178항목, 복지 관련 165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2017년 12월에 발표하였으며, 소득분배지표의 기준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함에 따라 행정자료로 보완된 소득분배지표를 함께 공표하였다.

동 조사의 표본규모는 매년 2만여 가구로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조사원 인건비 인상 등 경상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 집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조사기관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은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이 고정되어 통계청의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8년의 경우에도 사업비 예산은 20억 1,300만원이나 분담금은 3억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집행액 및 비용분담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215	1,440	1,552	1,579	1,646	1,667	1,622	1,708
집행액		1,202	1,415	1,528	1,429	1,550	1,590	1,581	1,692
통계청	부담액	380	715	828	729	850	890	881	992
	비율	31.6	50.5	54.1	51.0	54.8	56.0	55.7	58.6
한국은행	분담액	43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비율	35.8	24.7	22.9	24.5	22.6	22.0	22.1	20.7
금융감독원	분담액	392	350	350	350	350	350	350	350
	비율	32.6	24.7	22.9	24.5	22.6	22.0	22.1	20.7

주: 1. 2010~2011년의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의 분담금을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처리하여, 통계생산 및 제공에 따른 부족경비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으로 집행하였고, 2012년부터 가계금융조사 예산은 통계청으로 일원화하고,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함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10년 가계금융조사 시작 당시 조사비용을 유사한 비율로 분담하기로 결정한 이후 분담금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 이후 조사 예산 상승률을 고려하여 공동작성기관과의 합의 하에 향후 예산에 분담금 상승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경상경비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은 조사비용 증가율을 고려하여 공동조사기관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적정 분담금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윤동한 예산분석관
어예원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지원 | 인정은 행정실무원
김도희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8년 8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주)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75-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